

2006 경북학생인권백서

부제:교사와 학생을 위한 인권자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경북학생인권 백서 발간에 부쳐

제262회 정기국회가 9월 1일자로 개최 되었다. 올해는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회기 내에 통과시키고자 이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인권에 대한 언급이 거의 금기시 되다시피 했다. 오랜 식민지와 분단으로 인한 이데올로기 교육, 군사독재와 같은 반민주적인 상황에서 인권은 그 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화두로 취급되었었으며 학교에서는 모의 총검으로 예비 군사훈련을 받거나 간호병 훈련이 교련이라는 과목으로 정규수업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입시위주의 경쟁적 학습구조는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학교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 역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학생인권이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입법발의로 진행되기까지 참으로 많은 반인권적 사례들이 우리 사회를 두드려왔다. 종교의 자유를 외치는 고등학생은 목숨을 건 단식을 감행해야 했으며 두발자유를 요구한 학생들은 그것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로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을 받아야 했다. 또한 국가는 NEIS를 통해 학생들의 정보를 허락 없이 집적하려 하였고 학생들은 거기에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찜통 같은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외쳤다. 그래도 여전히 학교는 군대 다음으로 인권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학교 내의 체벌과 왕따, 두발제한이 학생들의 일상을 멍들게 하고 있다.

학생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인권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요즘 아이들이란!’ 식으로 치부되어 버리기 일쑤이지만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숨이 막히는’ 절박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기성세대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학교가 학생들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누구보다도 교사들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확산시켜야 하며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과연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규정의 어떤 부분이 학생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학생들은 학교의 어떤 모습에 답답함을 느끼는지? 또는 학생을 학교의 주인으로 바로서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물론 50여개의 질문으로 학생들의 인권실태를 모두 파악할 수는 없으며, 설문에 참여한 640여명의 학생들이 경북학생 전체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은 일반적인 모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학교마다 모두 달랐다. 그러나 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경북학생인권 실태의 중요한 일면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 대안 또한 성글게나마 정리할 수 있었다.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이다. 그 보편성과 일반성에 있어 학생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권위주의적인 학교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고쳐야 하고 경쟁적 입시구조가 문제라면 전면적으로 교육문제를 다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이 한편의 책이 학교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학생 인권’ 그 소중한 이름

“야! 똑바로 안 걸어!”

교복을 바르게 입고, 모자를 반듯하게 쓰고, 모표나 뺏지-그 당시에는 학교나 학년을 드러내는 상징물을 윗옷 양 깃에다 붙이고 다녔는데 그것을 뺏지라고 했습니다.-가 비뚤어져도 안 되며, 선배를 만나면 깍듯이 거수경례를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교복에 붙인 명찰에 손가락이 들어가도 안 된



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만약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교사나 선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엉덩이에 불이 나도록 맞았습니다. 맞고 난 다음 방과 후에는 남겨 학교 주위 지저분한 곳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다니던 중학교 시절 학교 풍경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는커녕 느낄 사이도 없이 폭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동급생끼리도 서로의 인권을 짓밟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어디 호소할 곳도 없었던 시절이라 순종하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하면서 눈치껏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 당시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복이 달라지고, 뺏지가 없어지고 모표가 사라졌으며 거수경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정도 외에는 아침에 학생부 선생님과 선도부원들이 순사처럼 버티고 서서 복장 검사를 하고, 때로는 엉덩이를 맞는 것까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인

권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오히려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인권’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그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있는가, 보호받고 있는가를 걱정해야 합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에서 인권을 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살아 있는 인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오히려 학생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척박한 땅에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전교조경북지부에서는 경북의 학생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교사들이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주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학교와 가정 등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간과하기 쉬운 학생 인권 문제를 되짚어 보고 학생 인권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찾아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번 사업이 학생인권을 신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기를 기대합니다. 민주주의의 꽃, 인권이 학교에서부터 활짝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이 상 훈

■ □ ■ □ ■ □ 목 차 □ ■ □ ■ □ ■

.....

경북학생인권 백서 발간에 부쳐 3

‘학생 인권’ 그 소중한 이름 5

I. 2006 경북 중·고등학교 인권분석 보고서 8

II. 경북지역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62

III. 학생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및 권고문 141

IV. 법에 나타난 학생 인권 관련 내용 184

V. 대안을 위하여1 193

VI. 대안을 위하여2 204

부 록

1. 학생인권 법안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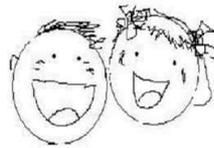
2. 청소년 현장 229

3. 유엔어린이 권리협약 231

4. 세계인권선언 236

5. 국내인권관련단체 240

.....



I. 2006 경북 중·고등학교 인권분석 보고서

-학칙·학생회칙·학생생활(선도)규정을 중심으로-

=== 차 례 ===

1. 들어가며
2. 분석 배경 및 방법
3. 학칙 분석
4.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규정 분석
5. 학생생활(선도) 규정 분석
6. 학생 용의·복장 규정 분석
7. 마치며

1. 들어가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오늘도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특히 고등학생은 7-8시에 등교하여 아침 보충수업, 정규수업, 오후 보충수업, 자율을 가장한 타율학습이 끝나면 저녁 10시다. 학교에게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란 인사를 하고 10시 전후하여 하교를 하는 실정이다. 초·중학생도 ‘더 많은 양의 학습을 위하여’를 외치며 고등학교생활을 연습이라도 하듯 학교로 학원으로 학습의 절대적 시간을 채우기 위해 현재의 삶에 올인 한다. 도·농간 차이나 사회·경제적 배경의 차이에 따른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삶의 현실이다.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갈까? 이러한 삶은 자신이 선택하는가?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경제적 풍요를 보장받는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학벌이다. 아니 이미 이 둘은 같은 말이 되었다. 피라미드형으로 서열화 된 대학교 중에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최고 학벌을 위해 초등학교,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 의해, 사회에 의해 학습노동과 최고 아니면 낙오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강요당하며 학습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물론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이 되는 학생은 고액의 사교육을 통하여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다. 바야흐로 돈이 학력의 주요한 뒷받침이 되는 사회이다.

그런데 아동·청소년¹⁾들의 미래가 중요하다면 현재도 그만큼의 중요성을 갖는다. 미래는 현재를 완전히 내팽개친 채 새롭게 뻗어 나가는 마술의 세계가 아닌 한 많은 학습량의 중요성과 함께 문화적 감수성과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적 의식의 형성을 통하여 그들의 인권과 미래의 삶에 대한 소통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은 현재 삶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은 어떠한가? 학생의 인권이 필요한지, 지켜져야 하는지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제 했던 방법대로 오늘도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다. 유엔 아동인권협약에서 얘기하는 4개의 기본권²⁾은 존재하든 않든, 우리나라가 가입했든 말든, 어른들

1)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칭한다. 본보고서는 중·고등학교 각종 규칙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아래부터는 청소년으로 칭한다.

2) 1. 생존권(Survival Right) :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2. 보호권(Protection Right) :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 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어린이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과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의무로 명시되었든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는 듯 삶의 모두를 미래에 저당 잡혀 놓고 생활하기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즉 학생들의 미래가 과거의 관행을 요구하는 관료적 통제체제와 집행자로서의 어른들에 의해 거의 설계되고 집행 된다는 점이다.

오늘도 여전히 ‘다 학생들을 위한 일이야’가 학교나 가정·사회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키이다.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남자 학생을 교단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고 얼굴에 책을 던지는 일, 학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여학생을 엿드리게 한 다음 몽둥이로 때리는 일, 고교교사가 학생이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200대 체벌을 가한 일은 모두 사랑의 매가 좀 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학교, 가정, 사회 모두에서 자리 잡고 있는 학생에 대한 생각은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통제를 벗어나면 수습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통제 위주의 사고가 지배적이다. 물론 성장기에 있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자율적 의사표현과 활동들을 보장하는 속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지 전일적인 통제 위주로 가서는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성장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받아 본 경험이 없으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형식이 체화가 되지 않아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고민했을 때, 가정과 사회,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은 당위이고 반드시 필요하다.

인권은 청소년의 생활 문제이다. 청소년이 하루의 거의 절반을 넘게 생활하는 학교에서의 인권존중은 학습과 더불어 조직과 운영

3. 발달권(Development Right) :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4. 참여권(Participation Right) :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 자치와 참여,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학교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학습의 문제와 수동적 의사결정과 집행, 폭력성의 문제가 학교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청소년 인권침해의 문제는 사회적 의식과 입시문제 등 사회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이 많다. 즉 담론과 구조의 문제는 교육문제 하나로만 다룰 수 없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이다.

이 보고서는 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청소년 인권침해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경북지역 청소년들의 주요한 생활공간인 학교에서 학생생활과 밀접한 규정의 분석을 통하여 학교에서 청소년인권 실태를 조사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성 되었다.

2. 분석배경 및 방법

1) 분석 배경

1990년 전까지는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주요한 관심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진전과 다양한 영역에서 이론의 도입이 가져다주는 시야의 확대로 생태, 양성평등, 인권 등 다양한 삶의 권리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흐름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도 주요한 관심사로 된다.

1989년 11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고 우리나라도 1991년 이 조약에 가입한다. 조약은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실현시키는 일은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가정, 학교를 망라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국가차원의 인권문제에 대한 심의 단위가 만들어졌다. 2002년 6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규정안]을 발표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뒤 2002년 9월 9일 교육부의 규정안이 인권침해가 있으므로 새로운 규정안 지침을 마련할 것과 체벌허용의 근

거가 되는 초·중등 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에서 규약·규정의 분석 기준이 되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이다.

선행 분석으로는 2001년 10월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인권운동 사랑방의 공동 캠페인으로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라는 캠페인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여기서는 전국 244개 중·고등학교의 교칙을 분석하여 학생회칙, 학생선도규정, 용의·복장 규정이 학교생활에서 어떻게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였다.

2003년 전교조의 NEIS투쟁으로 정보인권을 포함한 학생인권의 문제가 사회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직 내부적으로도 NEIS로 인권 문제를 주요하게 부각시켰는데 이참에 인권의 사각지대로 건재하고 있는 학생인권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만들자는 논의가 있었다.

2004년 10월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마산, 창원지역 고등학교 학생인권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마산 창원지역 34개 고등학교의 학생선도규정, 학생체벌규정, 학생자치활동규정, 학생생활수칙,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분석하였다.

경북 학생인권 보고서는 위 두 개 보고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위 두 보고서도 3년이라는 시차가 나는데 문구상 혹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사회적 권리요구가 확산되었다. 그 여파로 학칙과 교칙 등 학교 내 제 규정과 관행들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직접 고통 받고 있는 학생들에 의해 사회적 의제로 만들어 진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를 비롯한 많은 청소년·학생 단체가 학생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자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단식하고, 강제보충, 강제야간자율학습, 두발단속의 부당함을 문제제기하며 일인시위를 하고 징계에 회부되는 주체의 움직임은 변화의 큰 동력이다.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는 학생끼리의 폭력과 더불어 교사의 체벌 폭력이 일상적으로 외화 되고 있는 흐름에서 부천과 광주에서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활동들이 타 지역의 학생인권사업의 참고 사례가 되고 있다. 또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범국민교육연대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과 학생인권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학생인권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2006년 전교조 전체의 2대 과제 중 하나인 아이들 살리기 운동의 흐름으로 학생인권 법안과 자치법안 제정을 위한 사업은 전국적 차원으로 학생인권이 의제로 되면서 교육과 공론을 통하여 교사들이 학생인권존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지부의 학생인권 사업은 학교 내 인권 실태 조사와 인권존중을 결의하는 장을 만들고 학생인권존중의 방안을 찾아가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경북지역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확대와 인권존중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겠다.

이 보고서는 현재 학교에서 기준이 되는 여러 규칙들을 검토하면서 학생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실천의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로 현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의미를 가진다.

2) 분석 대상

<표1> 학생인권사업을 위한 학칙 및 각종 규정 수집 현황

학교	학칙	학생회회칙 (규칙)	학생생활 (선도)규정	교칙(학칙 시행세칙)	응의 규정	기타
A1	○	○	○		○	학생응의규정
A2	○	○	○		○	복장응의규정세칙
A3	○	○	○			
A4		○	○		○	용모.복장규정 학급회 활동규정
A5		○	○		○	학생근태규정, 두발 및 복장규정
A6	○	○	○	○		선거관리시행규칙

A7			○			
A8		○	○		△	
A9		△	○		△	
A10		△	○		○	
A11	○	△	○		△	학생체벌기준 학교폭력대책위
B1	○		○		○	
B2	○	○		○	△	체벌에 대한 규정
B3	○	○	○/○	○	△	학생근태규정 학교폭력대책위
B4	○	△	○		○	
B5		△	○/○		○	학교폭력대책위
B6	○	○	○/○	○	○	학생생활규범
B7			○		○	
B8	○	△	○		△	
학칙만 있는 학교(17)						
A12/ A13 /A14 A15 /A16 /A17 /A18 /A19 B9/ B10/ B11/ B12/ B13/ B14/ B15/ B16/ B17						

○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 (단, 용의 규정은 학생생활규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규정 정도로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을 포함시킴)
△ 타 규정에 포함

분석 대상은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칙, 학생회 회칙, 체벌규정, 용의 규정이다. 수집한 자료 현황은 위의 <표 1>이다. 자료 수집은 지부 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학칙, 학생생활규정, 선도규정 등을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경상북도에는 중학교 275개와 고등학교 197개가 있다. 수집된 것은 <표1>에서 나타난 것처럼 규정수집에 응한 학교는 중학교 17개, 고등학교 19개이다. 이중 학칙은 28개(중학교 15개, 고등학교 13개)이고, 학칙만 수집된 학교는 17개이다. 학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의 내용을 법률적 차원에서 간단

하게 정리하고 구체적인 학생의 생활관련 내용들은 별도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기술해 놓았다. 학생회회칙이 있는 경우는 타 규정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된 것을 합하여 16개이고 학생생활(선도)규정 또는 교칙이 있는 학교는 19개 학교이다. 그리고 용의규정은 비교적 상세히 기술된 것까지 합하여 16개이다.

3) 분석 방법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학생인권과 관련한 학생생활(선도)규정을 수집한 대상학교는 경상북도의 중·고등학교 전체 472개 중 19개(중학교 8개, 고등학교 11개)였다. 그리고 학생회 규칙과 용의 규정은 16개씩이다. 고민은 타 규정에 포함된 용의규정이나 학생회 회칙이 별도의 규정으로 더 상세히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규정의 분석에서 규제유무에 대한 판단을 바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양적 조사로 통계 분석하는 것이 전체 학교 수 대비 수집 학교 수와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였다. 그리고 수집상의 한계로 별도 규정이 아닌 경우 수집된 자료 외에 타 규정의 유무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 때문에 양적 조사로만 분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규정은 교육부 혹은 경상북도 교육청의 지침을 근거로 몇 가지만 조정하여 거의 모든 학교가 비슷할 거라는 학교사회의 관행적 측면에서는 유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료수집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분석에서 양적 분류는 경향성을 폭넓게 고려하는 차원에서 참고로 하면서 내용 분석에 많은 의미 부여가 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을 하고 분석하였다.

3. 학칙 분석

학칙은 학교 행정에서 다른 여러 규정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그래서 학칙의 기술은 학적사항, 수업, 징수금, 학생포상·징계, 학

생자치활동 등에 대한 원칙적인 기술이 되어 있고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위임해 놓고 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에 해당되어 수업료가 없는데 비해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료가 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수업료를 두 달 이상 체납한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조례안을 가결하면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최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위원회도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서울, 경남, 전북 세 교육청은 출석정지 규정을 폐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아래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고등학교는 수집된 모든 학교에서 이 조항이 있었으며 2개의 학교에서는 체납 시에 ‘출석정지 혹은 퇴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교육행정에서 학생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퇴학 또는 출석정지 규정을 너무 쉽게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의무교육기간에 해당되는 중학교의 경우도 학교운영지원비 체납 시 출석정지 조항이 두 학교나 있었다.

<표2> 학칙에 나타난 출석정지, 퇴학 등의 요소

학교	2개월 체납학생 출석정지	징계시 학생 학부모 진술	퇴학규정	체벌	개정일
A1	○	또는	별도	○사랑의매	2005.10
A2	○		○	○	2003.3
A3	○	또는	별도	○	2005. 4
A6	○	또는	○	기타방법	2004.11
A11	○		○	○	2006.3
B1		또는		○	2006.3
B2				○	2004.4
B3				○	2005.3
B4		또는	권고전학		2001.5
B6					개정날

B8				○	2003.3
A12	○		○	○	2005.3
A13	○		○	○	2004.3
A14	○	교내봉사때 학부모의견	○	신체상 고통 없는 훈육	2005.4
A15	출석정지 혹은 퇴학		○		2005.3
A16	출석정지 혹은 퇴학		○	○	2004.4
A17	○	또는	○	○	2005.3
A18	○		○	○	2004.3
A19	○	또는			2004.3
B9	○학교운영지원비				2004.4
B10	○학교운영지원비				2004.3
B11					2005.3
B12		또는		○	2005.3
B13					2005.3
B14		또는		○	2005.3
B15				○	2005.3
B16				○	2004.3
B17				○	2005.4

교육인적자원부는 8월 16일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두 달 이상 수업료를 내지 않은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했다고 밝혀 경상북도 학칙에 대한 지침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학생생활(선도)규정에서도 나타나겠지만 학칙 상에 징계 시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권과 체벌에 대한 조항이다.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학생의 인권· 자율· 책임을 슬로건으로 학생생활에 대한 지침서인 [2005학년도 학생 생활 지도 기본 계획]에서 ‘초·중등 교육법 제18조에서는 의견진술 기회 제공을 학생 또는 학부모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아 ‘학생 및 학부모’로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학생 징계에 대한 결정

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런데 표<2>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2005년 이전에 개정된 것도, 이후에 개정된 것도 모든 학교에서 ‘또는’ 이라는 규정을 그대로 쓰고 있다. 둘 중 한 명의 진술로도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학교의 징계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체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학칙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18개 학교 중 훈육을 명시한 한 개의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랑의 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으로 체벌을 교육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생활(선도)규정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다음은 퇴학에 관한 규정이다. 퇴학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31조3) 에서 비교적 길게 다루고 있다. 퇴학은 고등학교학칙에 모두 언급되는데 퇴학에 대한 규정이 애매하고 자의적이다. 10개 학교의 경우를 분류해 봤더니 <표3>과 같이 나타났다.

<표3> 퇴학 사유

연번	내 용	학 교(수)
1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A2, A6, A11, A12, A14, A15, A16, A17, A18, A13 (10)

3)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③교육감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2	학력이 극히 열등하여 학업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	A2, A11, A12, A15 (4)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A2, A6, A11, A12, A14, A15, A16, A17, A18, A13 (10)
4	정치에 관여하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	A2, A11, A12, A15, A16 (5)
5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A11, A16 (2)
6	무단결석이 잦은 자	A12 (1)
7	학생선도위원회에서 개선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A12 (1)
8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A2, A6, A14, A16, A17, A18, A13 (7)

학생징계규정에 다시 언급되었지만 용어가 애매하다. 특히 위의 2, 4, 5, 6 번은 학생의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문제가 많다.

‘학력이 극히 열등하여 학업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자’의 경우 학력이 열등하다는 것이 퇴학의 이유가 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학력이 저조한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본적인 학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치에 관여하거나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의 경우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는 ‘나이’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우선 이 조항은 참정권과 시민·정치적 권리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 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칙의 제한은 ‘정당활동 제한’으로 충분하며, 교칙에 그런 제

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해 학생의 정당활동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라는 규정은 극히 학교의 입장만을 대변한 조항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학교-학생간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크다. 또한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라는 규정은 퇴학의 이유가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

특이점은 2001년 개정된 것을 수집해서 자료수집의 한계는 있겠지만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중학교에서 권고 전학이 있었다. 또한 학칙에서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을 뽑아 교육자치 선거에 투표를 하게 한다는 학교도 있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전원 선거인단이 되는데 해당학교는 어떻게 이런 조항이 나왔는지 의문이다.

* 권고전학 : 품행불량, 결석이 잦은 자, 학칙 위반 (00중)

*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거권을 가진다 (00중)

그리고 학칙 상 학생자치활동 장에서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운영, 자유발언대 운영, 학생축제주간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들어간 특이한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학칙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른 상급 관청의 예시안을 거의 받아 적는 수준에서 학교에서 재량을 발휘하는 것은 규제적 측면 즉 학생통제의 수월성에 맞춰진 단위학교 상황반영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학생 자치 활동에 대한 규정 분석

학생회 규정은 타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만 비교적 상세히 기술된 것을 포함하여 16개 학교 규정이 수집되었다. 쉽게 결론적 의견을 내기 어려운 부분은 수집상의 문제인지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지 현재로서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각 항목에 대한 존재확인은 가능한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은 어렵다는 점이다. 여전히 항목이

없는 학교는 판단을 유보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밝힌다.

1) 학생회 위상 및 운영

학생회 활동은 학생들의 자치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구이자 앞으로 사회에서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단체의 조직적 의사결정 과정과 방법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다.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학생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많다. 이런 학생관은 학생회에 대한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우리나라도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2000년 5월 정부가 제출한 ‘2차 정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2003년 1월 심의를 했는데 그 결과를 [정부 2차 보고서에 대한 결론적 의견] 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정부의 아동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에 대한 평가와 개선할 점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다.

<표4> 학생회 규칙 분석

학교	특별활동의 일환, 취미 특기 신장	경비지원, 학생회 예산범위 내 지원	선도부 생활부 지도부	선거관리위원 구성/상세 규정	학교 행정 간섭 불가	동아리 지원	직선/간선	1일전 지도위 안건 승인	의결 내용 학교장 승인	선거일
A1	○	지도 위원회	○	교사	○		직 (고 3 제외)	○	○	수 능 일
A2	○	지도 위원회	○		○		직			
A3	○		○		○		직	○		
A4	○	지도 위원회	○	학생/ ○			직	○3일		학 교 장

A5	○	지도 위원회	○	학생/ △			직	○		3월
A6	○	지도위	○	학생/ ○			직	○		11 월
A8	○	지도 위원회	○			○	직	○		
A9		학교장	○		○	○	학 교 장 별 도 규 정		○	
A10	○	지도 위원회	○	학생/ ○		○	직	○		7월
A11		지도 위원회	○		○	○	별 도		○	
B2	○	학교장	○		○		직	○		
B3			○	학생/ △			직		○	학 년 말
B4		학교장	○		○	○	별 도		○	
B5	○		○				직	○		
B6	○	지도 위원회	○				직	○1주		
B8			○			○	직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결론적 의견]에서 지적한 학생자치와 관련한 주요 사항⁴⁾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

4) 표현과 결사의 자유

36.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10대들이 독립적으로 만든 인터넷 대화방이 자의적인 이유로 당국에 의해 폐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욱 우려한다.

37. 협약 12-17조의 견지에서,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해하는 학생회 규정의 인권침해 요소를 개선하라는 내용이다.

① 우리나라의 학생관은 학생을 교육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다. <표4>에서 나타나듯이 학생회 활동을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치활동 차원에서 특별활동의 측면보다 계속해서 기술되는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아리 활동과 묶어 취미 특기 신장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학생인권과 자치기구(학생회) 법제화를 한 축으로 하고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홍보의 확대를 다른 한 축으로 하여 학생자치에 대한 이해를 학생인권 차원에서 넓혀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자치기구의 특별활동은 학생 자신들의 문제 해결과 학교생활 관련한 규정 개정 및 실천 활동에서 자치가 보장되는 형태로 지원 중심의 특별활동 개념으로 정리되어야 하겠다.

*** (활동) 학생회는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학생들의 취미, 특기 및 적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전개한다.(00교 규정)**

② 16개 학교 중 12개 학교가 경비지원의 결정 단위를 지도위원회 또는 학교장으로 정하고 있다. 경비 지원도 자체 예산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지도위원회 혹은 학교장 등 결정 단위의 자의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회 운영에서 선거일은 6학교에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학교장이 결정하는 경우와 수능일로 못 박은 특이한 경우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학생자치활동 계획의 주체적 예측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통제 혹은 장악하는 형태로 지도하는 모양이 되며 후자의 경우 학생회 회원의 참정권을 학교에서 제한하는 아주 문제 있는 규정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수능일에 선거를 실시하는 학교의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도 자치기구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인가 의문이 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확인되는 6개 학교 중 5개가 학생들로 구성하는데 1개 학교는 교원으로 구성하는 자치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활동의 과도한 차원을 넘어 억압적 간섭을 하는 규정도 발견된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관리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학생부장, 학생부교사로 구성하고 대표요원은 각반 실장으로 구성한다.

* 선거는 수능일에 실시한다.

* 반장, 부반장은 학업성적 50% 이내여야 한다.

(00교 학생회 회칙에서)

③ 선도부/생활부/지도부라는 명칭의 선도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수집된 학교 16개 모두에서이다. 선도부, 생활부, 지도부는 용의나 복장이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용의 복장 감시활동을 도와 학생들의 감시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교사중심, 통제 중심의 부서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선도부의 부장을 선출하여 학생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도부의 활동이 교사들의 감시에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업무를 자치조직에 맞게 조정하며 ‘학생자치부’ 또는 ‘학생복지부’ 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이한 경우는 강의석 군의 단식으로 학교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학생회 조직에 종교부가 있는 학교도 있다. 이 경우 종교부는 해당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중심으로 동아리 조직을 통하여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학생 전체가 동의되지 않는다면 학생회는 사업과정 속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집행의 구체적인 부서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신앙부 : 신앙 활동과 수련회, 추수감사절 등

* 선도부 : 면학풍토 및 교풍을 확립한다.

바른생활과 질서를 유지 한다 (00교)

④ ‘학교행정을 간섭할 수 없다’, ‘안건은 1일 전 지도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회의를 개시 한다’, ‘의결된 내용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 한다’ 등의 내용은 학생회 조직을 통제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 이는 2002년 6월 교육부의 [학생 생활 규정 예

시 안]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9월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한 주요 항목⁵⁾이다. 자치활동이라고 한다면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의견개진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학생자치기구로서 위상을 갖는 학생회로 인정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거나 지원의 형태를 먼 자문 차원의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회장의 선출과 승인

회장의 선출은 4학교를 제외하고 확인된 12개 학교들은 모두 직선이다. 물론 그중 한 학교는 수능일에 선거를 실시하여 유권자 중 1/3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언급을 위에서 하였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회 대의원회와 지도위원회에 학생회 회칙 개정안을 제출하는 권한이 있지만 최종적인 판단을 학교장이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적 등 출마조건이 자치활동의 통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 회칙아래 실시되는 선거에서 학생회 회원 중 절반을 넘는 회원들이 피 선거권을 제약 당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표5>은 학생회장의 출마 조건을 복수로 나타내었다.

품행 단정의 경우 어른들의 기치 기준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상식과 판단으로 선택 할 문제를 아예 출마부터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징계는

5) - 학생회회원 역시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없음’의 규정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 다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는 바,
-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사면 규정이 없는 경상북도 중·고등학교 현실에서 한 번 징계는 영원한 권리제한으로 이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성적우수' 조건은 학생에게 주어져야 할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차별 요소이다. 학생대표는 다수의 학생이 꿈도 못 꿀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성적우수'가 학생대표로서 뛰어난 자질을 발휘할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표5> 학생회장의 출마조건

조 건		학 교 (수)
품행 단정	모범적이고 봉사적이며, 책임감, 지도력	A1, A3, A4, A5, A6, A8, A9, A10, A11, B2, B3, B4, B6, B8 (14)
성적 우수	성적이 계열석차 50% 이내, 혹은 우수 (가2이내, 양가 합50%이하, 사고결5일내)	A1, A3, A4, A5, A8, A10, B2, B3(전과목 양이상), B6 (8)
교사 추천	담임선생님의 추천	A1, A5, A6, B3(지도위원의 심사 결격사유없는자), B6(확인) (5)
유급	유급 받은 사실이 없는 자	A3, A6, B2, B6 (4)
출석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결석 (출석 90% 이상)	A5, A9, A10(5일), A11, B4, B8 (6)
징계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A3, A6, B2, B6 (4)
	교칙위반으로 학교 내 봉사 이상처벌	A1, A5, A8(사회봉사), A9, A11, B4, B8 (7)

표에서 보듯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출마 제한을 복수로 적용하고 있으며 학생회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회 회원도 아닌 교사 추천의 경우 명백한 자치적 대표선출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이며. 확대되면 교사 5명 이상의 추천, 담임교사 및 학년 부장교사의 추천,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이렇게 규정이 교사의 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경우도 볼 수 있다.

***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직원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임명 (00고)**

- * 학생회장 출마 시 담임교사 및 학년부장교사추천서와 교사 5명 이상의 추천 (00고)
- * 회장출마조건 학교장이 인정하는 학생, 입후보자 없으면 대의원회 선출 /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한 후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 한다. (00고)

학생회장 후보요건을 강화하여 출마조건을 제한했는데 이중·삼중의 통제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후보 요건을 충족하고 전체 학생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 되었으면 그것으로 결정이 되어야 한다.

<표5> 선출된 학생대표 승인 절차

학교 당국의 결재 ·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학교(수)	기타(수)
A1, A3, A4, A5, A8, A10, B5, B6 (8)	B3(선관위승인) A6(학교장 제출) (2)

그런데 <표 5>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학교장의 결재, 승인을 규정한 학생회 회칙이 확인되는 학교 중에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학교 현장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조항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학생회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뿌리 깊은 학생에 대한 통제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자를 결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교직원회에 공고하는 조항 정도를 명시하면 좋겠다. 임명장을 당선증으로 고치는 것도 고려할 수 있겠다.

3) 학생회의 권한 주체

학생회 기구에는 대의원회라는 최고 의결기구가 있다. 단, 이것은 학생자치기구 내에서만 최고 의결 기구이다. 지도위원회 혹은 지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성립한다. 이렇게 틀에 가두어져 학생회의 자치기능은 통제 속에 묶여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이 독자성을 가지려

면 회칙, 임원선출, 예결산, 회의소집 등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표6> 대의원회의 기능

권한 내용	학 교 (수)
사업계획심의 및 결과 승인	A1, A2, A3, A4, A5, A6, A8, A9, A10, A11, B2, B3, B4, B5, B6, B8 (16)
예결산 심의	A1, A2, A4, A5, A6, A8, A9, A11, B3, B4, B6, B8 (12)
운여위 부의안건	A1, A2, A3, A4, A5, A6, A8, A9, A10, A11, B2, B4, B6, B8 (14)
지도위원회 제시한 안건	A2 (1)
학생회운영, 학생생활 결의	A3, B3, B5 (3)
학생회규정개정에 대한 의안제출	A9, A11, B3, B4, B8 (5)
부장, 차장 임명동의	A10 (1)

<표7> 학생지도위원회의 기능

권한 내용	학 교(수)
학생회의 지도육성	A2, A3, A4, A5, A6, A8, A10, B2, B6 (9)
회칙의 제정.개정 지도	A2, A3, A5, A6, A8, A10, A11, B2, B6 (9)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지도	A2, A1, A3, A4, A5, A6, A8, A10, B2, B6 (10)
학생회 임원 임면	A2, A3, A4, A5, A6, A8, A10, B2 (8)
집행부서별 예산배정 / 활동지도	A2, A3, A4, A6, A8, B6 (6)
예산결산 감사	A2, A4, A5, A6, A8, A11, B6 (7)
기타	A5(회비책정), A11(조직편성), B2 (3)

<표6> 과 <표7>에서 어느 쪽이 더 권한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포괄적 지도로 규정해도 타 규정 혹은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에 의해 많은 부분 지도가 가능할 것인데 예산 승인 혹은 매 집행

승인, 사업계획 승인, 특히 회칙 제정, 개정의 권한은 학생지도위원회
 회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학생자치 조직이 자치조직으로 활동은 고
 사하고 자치적 체험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회는 학생자치 조직이라는 것에 모두 동의 할 것이다. 그럼
 자치기구 다운 자율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
 어져야 한다. 그게 아니고 재가, 승인을 매 단계마다 설정하여 단계
 별 통제를 위주로 진행된다면 교육적인 지도로 볼 수가 없다. 그래
 서 포괄적으로 자문에 응한다는 규정을 두고도 학사일정 고려, 예
 산의 한계, 특정 공간사용의 승인에 지도를 필요로 할 수 밖에 없
 는 현재 학교 구조에서 충분히 지도·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 지도위원회 (임무) : 본회의 자문기관으로 제반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 (00중)**

4) 회칙의 효력정지, 정치활동 금지

아래 <표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확인 된 많은 학교에서 학생회
 회칙의 효력정지 조항이 회칙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활동을 금
 지하고 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차정부보고서에 대한 결
 론적 의견]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에서 공히 지적되는 사항이다.

<표8> 학생회 회칙의 효력 정지 및 학생의 정치활동

내용	학교
본 회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 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효력이 정지 된다	A2, A3, A4, A5, A6, A8, A10, A11, B2 (9)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장의 행정 사항에 간 여할 수 없다.	A2, A3, A4, A5, A6, A8, A9, A10, A11, B2, B4, B8 (12)

누구도 원치 않겠지만 전쟁 등 국가 비상시 헌법 제37조에 기본권 제한 조항⁶⁾이 들어있다. 학교의 다중 통제 속에서 활동하는 학생회의 권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에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비현실적인 조항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민·정치적 권리⁷⁾는 나이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학생회 규정의 예시문을 시작으로 각 학교의 규정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활동은 개인의 '사회 계급 계층 및 조직의 일원으로 자신의 이해나 목적에 관계하는 모든 사회적 행위'로 규정했을 때 모든 나이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다. 단지 정당 활동의 문제이면 학생은 정당원이 될 수 없는 현재의 조건에서 법으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학생들의 요구를 직접 통제하고자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군부독재 시절의 정치참여 학생들을 염두에 둔 잔재라 할 수 있겠다.

정치는 개인이 사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교는 그런 행동을 참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가) 인권, 평화, 통일, 생태, 양성평등 등 우리사회의 의제의 다양화로 청소년의 관심을 표출시킬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나) 선거연령이 19세로 낮아지면서 특수한 사정으로 1년만 늦어도 고등학생은 투표권을 가질 수도 있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조항이라 하겠다.

교육기본법 제5조⁸⁾는 학교생활에서 자신과 관계된 일들은 학교구

6) 헌법 제37조

-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7)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8) 교육기본법 제5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성원들과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하위 조항에서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⁹⁾에서도 인권침해의 요소를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학교에서도 학생의 정치나 사회 참여에 대한 시각을 긍정적으로 가지며 시민적 역량을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으로 학생회 규정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5. 학생생활(선도) 규정에 대한 분석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도 등)에 법률에 의거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올바르게 학생을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학생 생활(선도)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9) <평가>

- 인간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질서와 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됨. 또한, 학생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것임.
- 정치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하여야 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임. 학생은 발달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 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 그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이 규정에 포함된 내용은 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학생의 학교생활을 위해서 지켜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내용의 대부분이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다. 보호자의 의무는 가정생활에서 학생에 대한 관심(감시)을 선언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학교생활에서 보호자의 의무는 기물파손에 대한 금전적 변상의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교사의 임무는 원칙에 언급된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며 선도 위주의 처리와 선도위원회 구성, 징계 시 지도 등이 나타나 있다. 학생생활규정에는 학생생활(선도)지도위원회란 기구를 두어 학생생활(선도)사항을 처리 하는데 선도 사항이 징계이다.

이 장에서는 학생생활 관련 규정에 나타나 있는 징계 절차상의 주요한 사항을 검토해보고 학생 선도 기준을 분석하고 체벌규정이 있는 경우 조항들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학생생활(선도) 규정 내용과 절차

학생들은 하루 7시간에서 고등학생의 경우 15시간 내외를 학교에서 보낸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머무르는 곳이다. 그런 차원에서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이 지켜야 할 일을 중심으로 기술해 놓고 있다.

<표9> 학생생활규정의 내용절차

학교	여가 활동	학생 학부 모진술	재심요구	교육 프로그램	기록/공고	징계기간 출석인정*
A1		또는	학교장		○/○	
A2		및	학교장		○	
A3		과	학교장		○	○
A4			학교장		○	×(사고결)
A5		및		학부모교육, 비행예방		○
A6		및	학교장		○	○

A7		또는	학교장			
A8					○/○	○
A9	○	또는	학교장			○
A10	○	및				○
A11		또는	학교장	안전, 진로교육	○	×
B1	○	또는	학교장		○	×
B2		희망학생				○
B3		또는	학교장			○
B4	○	또는	학교장	안전, 진로교육		○
B5	○	및	학교장		○	○
B6		또는	학교장		○	○
B7		및	학교장		○	
B8	○	또는	학교장	안전, 진로교육		○

- * 징계기간이라 함은 징계중 사회봉사활동과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말함
- ** 특별교육이수기간 중 이수증이 없으면 결석(00중)처리하거나 학교장이 가정학습을 명하여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는 결석(00고)하는 경우 있음

학생선도의 원칙은 ‘교육적인 면과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존중 풍토조성을 통하여 명랑한 학교문화정착’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① <표9>에서 확인 되듯이 학생생활규정의 목적이 선언적인 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러나 분석한 대부분의 규정에서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을 찾기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안전교육, 진로교육, 학부모교육, 비행예방교육 등 학교에서 학생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및 진로교육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도 학교에서 외부와 연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많이 떨어질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② <표9>에서는 확인할 수 있듯이 징계 기록에 대하여는 11개 학교에서 기록에 대한 문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장의 결재를 통하여 징계종류가 결정되고 징계 해지가 되는 흐름으로 봤을 때 기록은 전 학교에서 이루어지며 보관은 계

속된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런데 사면 규정도 없어 한번 징계자는 기록이 계속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학교에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은 해당 학생 지도를 위함이다. 징계 횟수에 대한 통계나 간단한 내용 정도를 제외하고는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폐기한다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면되면서 재학 중에도 징계기록을 폐기하는 규정이 필요하겠다. 더 큰 문제는 징계된 학생을 통하여 타 학생을 협박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학교도 두 곳이나 있다. 이는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빠른 규정 개정이 필요하겠다.

③ 선도(징계)위원회가 열릴 때 학생 및 학부모의 진술권 보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2005년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진술·소명 규정을 학생 또는 학부모에서 학생 및 학부모로 바꾸라는 지침이 내려갔지만 반 이상이 그대로이다. 이는 징계과정에서 보호자와 학생으로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할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결함이 있는 조항이다. 특히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 하는가 아니면 사전에 진술한 것을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가 보고 하는가 확인해보니 몇 개의 학교만 사전 진술을 기술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에 직접진술을 원칙으로 희망여부를 물어 희망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징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판단은 오직 교장에게만 있는 재심청구권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분석이나 문구상 그렇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 학교풍토가 징계에 회부되면 낙인이 찍혀 재심을 엄두도 낼 수 없거나 전학을 강요받는다고 볼 때 학생인권존중을 위한 학교생활 풍토를 만드는 길은 참 멀게 느껴진다.

④ 학생생활규정 중 여가활동에 대한 규정이 있어 살펴보았다. 6 학교에서 확인 되었는데 문구는 거의 같다. 여가 활동은 공간사용 시 준수사항,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⑤ 학교마다 차이가 있어 문제로 느낀 것은 사회봉사활동과 특별

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결에서는 확인된 많은 학교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데 3개 학교에서는 결석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가정학습의 조치가 아니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징계를 받는다고 할 때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 학생선도(징계) 기준 분석

학생징계기준은 너무 방대하고 문구도 모호하다. 그래서 16개 전체 학교의 기준에서 중복을 피하고 정리한 것은 검토가 어려워 뒤쪽에 참고자료로 첨부하였다. <표10>에서는 징계기준에서 문구가 모호하여 선행 보고서에서도 다룬 몇 가지 기준을 비교해 보았다. 학생생활규정을 수집한 학교 수가 19개인데 이중 16개에서 징계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① 교권모독은 16개 전 학교에서 있었고 징계 종류로는 교내 봉사에서 퇴학까지 있는 항목이다. 모호하게 기술되어서 어느 정도가 교권모독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폭력에 의한 모독이나 교육행위의 진행방해 등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고 그 외의 것은 소통의 확대로 풀어나갈 문제이다.

② ‘학생선동’, ‘불미스러운 행동’은 하나의 학교에서만 발견되지 않고 15개 학교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불미스러운 행동은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옳겠다. 이에 비해 학생선동은 학내에서 규정이나 지도에 문제제기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얼마 전 오병현군의 교문 앞 1인 시위도 학생선동으로 규정하였다. 문제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관리자를 포함한 교원들이 징계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확산시키고 학생들의 자기표현이 보장되는 형태로 되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겠다.

<표10> 학생선도(징계) 기준 분석

학교	교권 모독	학생 선동 불미 스런 행동	교장 허락 없이 모임 대회참가, 학교명예실추	불온문서 불법집회 불량서클	예의, 용의 바르지 못함	학력 열등, 정신 이상	보호자 의무 -외출귀가 -교우 -이상행동
A1	○	○	○	○	○		
A2	○	○	○	○	○	○	
A3	○	○		○	○		
A4	○	○	○	○	○		
A5	○	○	○	○	○		
A6	○	○	○	○	○		
A7	○	○	○	○	○		
A8	○	○		○	○		○
A9							○
A10	○	○	○	○	○		○
A11	○	○	○	○	○		○
B1							
B2	○	○	○				○
B3	○		○		○		
B4	○	○	○	○	○		○
B5	○	○	○	○			○
B6	○	○		○			
B7		○		○			○
B8	○	○	○	○			○

③ 학교장 허락 없이 모임 대회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한 것이다. 외부 단체 활동을 포괄적으로 단속하는 규정이다. (학교에서 허락한 단체외의)외부단체는 부정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선에 대한 기준을 학교만 가지고 있으려는 혹은 학생을 가정
에 있을 때도 통제하는 문제가 있다. 종교나 취미, 관심 있는 사회
활동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적인 태도가 아닌
가? 그리고 외부에서 문제가 된 경우 외부에서 피해를 보는 것으로

상당부분 징계를 당했는데 그것을 고려치 않은 학교의 새로운 징계가 된다면 문제가 있겠다.

④ 불온 문서, 불법집회, 불량서클도 한 학교를 뺀 15개 학교에서 확인된다. 이것은 과거 학생운동을 탄압하던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는 조항으로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들은 모두 부정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집회와 불량 서클의 기준이 더 명확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통제의 기준으로 이미지화 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시민.정치적 자유를 더욱 위축시키는 조항이다.

⑤ 예의 용의가 바르지 못함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오히려 학생들과 교사들이 서로의 가치관과 인권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야 할 내용을 징계 항목으로 잡는 것은 조문의 나열로 징계 기준을 더욱 복잡하게 할 뿐이다. 교육적이라는 수식어의 남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정이 함께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때 과감히 삭제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외 학력 열등, 정신이상이 기준으로 들어간 학교가 하나 있다. 학력열등과 정신이상 학생의 교육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부적응의 경우 다른 대안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학생 때부터 체화 되어야 하겠다. 어릴 때부터 인권 존중을 받아보지 못한 학생이 커서 남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보호자 의무는 모두에서 확인 했듯이 상당부분 가정에서 부모의 귀가, 교우, 이상 행동 등을 감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징계에 대한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너무 복잡하거나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적 방법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하며 상담 및 교육을 외부의 전문강사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3) 체벌 및 폭력 규정

대구에서 일어난 지각 5분에 체벌 200대, 전북에서 일어난 옆드려뺨쳐서 엉덩이 때리기 등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폭력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체벌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교육부에서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1항¹⁰⁾ 및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제31조 7항¹¹⁾에 의해 교육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체벌을 금지하는 법 개정예에 대한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고 대구 체벌 사건 이후 교총의 설문예에 의하면 교사의 87%가 체벌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응답 결과가 나왔다. 다른 여러 조사에서 체벌금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으면 체벌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이 나타난다. 학생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어른들보다 수치가 낮지만 상당한 체벌 찬성이 나타난다.

<표11> 체벌 및 폭력

학교	체벌조항	교장교감허락	본인동의	별도장소	절차	벌점제 운영
A1	○ 사랑의매		○	○		
A2						
A3	○기준			교무실		○기준표
A4	○기준/별 사랑의매	○	○	학생앞금지	○	
A5						

10)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11) 제 31조 (학생의 징계)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A6						○기준표
A7						
A8						
A9	○기준		○			○
A10						○기준표
A11	○기준		○	○		
B1						
B2	○기준	○	○	○		
B3						
B4	○기준		○			○
B5	○					
B6						
B7						
B8	○		○			○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 생활 규정 예시 안]에 대한 권고문과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결론적 의견]¹²⁾

12) 체벌

38. 위원회는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 위원회는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유엔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의 마찬가지로의 견해를 보라, E/C.12/1/Add.79, para 36]. 교육부의 지침이 학교에서의 체벌 사용과 관련된 결정을 개별학교당국에 위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정형태의 체벌이 수용가능한 것임을 보여주며, 따라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를 조성하려는 교육적 조치를 훼손하고 있다.

39.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 a)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b) 체벌에 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 공공교육 캠페인을 수행하라. 그리고 체벌에 대한 대안으로서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징계 형태를 조성하라.

에서 체벌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시정하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표1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체벌에 대한 규정이 나타나 있는 것은 수집된 자료 중 9개 학교에서 이다. 체벌에 대해서 교장·교감 선생님의 허락을 전제로 체벌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확인된 것이 2개 학교이다. 그리고 본인의 동의를 명시한 학교가 7개이고 별도의 장소를 명시한 학교는 3학교, 체벌 절차를 명시한 학교는 한 학교뿐이다.

규정이 있어도 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이라고 할 때 자료수집의 한계는 있겠으나 현재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서 체벌에 대한 절차적 제약은 선언적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체벌 자체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했을 때, 체벌에 대한 경상북도 중고등학교의 상황은 인권교육에서 체벌 없이 훈육하기 위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9개 학교 중 체벌에 대한 기준이 있는 학교가 6개 학교이다. 그 기준을 나열하면 <표12>와 같다.

<표12> 체벌 사유의 예

가) 당번 임무 소홀 / 과제 불이행 / 복장, 두발, 실내화 규정 위반 나) 교내외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문란한 이성교제 등으로 학생으로서 자신의 정신과 육체를 손상시키는 행위 / 타인을 협박, 공갈, 위협하는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 다) 지각, 무단조퇴, 무단결석, 가출, 수업무단이탈 / 오토바이 타지 않기 규정 위반 라) 교내외 폭행 사건 사고 연류되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마)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바) 금품갈취하거나 절도를 하여 교외에서 학생신분을 이탈하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사) 교내외 도박 행위 / 시험 중 부정행위 / 교권을 모독한 행위 / 징계중 개선의 정이 없는 경우 아) 수업태도 불량 / 교사의 정당한 훈계 내용을 이유 없이 반복하여 어길 경우 자)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 정신, 인격 또는 물품 등에 손상, 손해를 끼치는 행위 차) 기타 체벌이 필요하다고 학생선도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인권 기구들의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체벌을 행하는 교사 집단을 비롯한 어른들과 체벌을 당하는 학생들은 찬성하는 정서가 더 강할까?

이는 우리나라의 학교는 입시 성과를 체벌로 올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권보호의 요소보다 미래에 대한 보장인 입시를 우선하는 사고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체벌의 단기적 처방 효과가 학생들과 교사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앞에서 제기한 인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학생들을 체벌에 길들게 하고 정서불안을 일으키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요즘 대안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거론된다. 체벌의 대안은 무엇일까? 체벌은 자체 인간관계에서 범죄적 요소이기에 없애는 것만이 대안이다. 그 다음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생과 교사간의 대화를 통하여 학교생활 규칙을 만들어 가고 서로 신뢰하며 지켜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흐름에서 벌점제나 등교정지 문제는 거론 될 수 있으나 문제 예방을 중심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

물론 전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잡무 경감, 그리고 교감, 교장선생님, 상담 선생님이 학생상담 체계를 갖추고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4) 기 타

학생생활(선도)규정을 검토하다 보니 권위주의 시대 실행되었던 규정들이 많이 남아있었다.

권위주적 통제 요소가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우편물 검열에 대한 규정
- 교무실 출입할 때, 학생은 경례를 하고, 단정 정숙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 학생은 당번 임무의 명을 받으면 특히 시간을 엄수하고 정한 바 책

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학교장 허가 없이 극장, 흥행장, 유원지, 유흥장 등 출입 금지 (단 부모동행 무방)
- 교내에서는 머리를 단정히 하며 머리에 대해 선생님의 지적을 받으면 즉시 고치도록 한다.
- 학급내 봉사활동 담당시 학급비품에 이상이 있을 때 담임에게 즉시 보고한다
- 의무교육기간에 해당하는 중학교에 퇴학규정이 단서조항도 없이 있음 / 징계에 유예 및 면제 처분

모범이 되는 조항들은

-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항목을 명시하여 지원
- 교복 구매는 공동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학생회의 심의를 받고 확정한다.
- 교사가 규정 어기고 자의적으로 체벌했을 경우 학교장 경고를 하거나 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한다
- 집단 따돌림 예방에 대한 조항
- 학생생활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생활지도위원회, 학생회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6. 용의. 복장 규정에 대한 분석

학생생활 규정중 용의·복장 규정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매일 교사들과 부딪혀야 하는 분야이다. 그만큼 학생들이 규정에서 자기 의사의 개진 욕구가 많고 다양한 시도(교사의 입장에서는 규정위반)들을 한다. 별도의 용의·복장규정이 있는 학교와 학생생활규정에 포함되어 있어도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될 정도인 학교가 10개이고 학생생활규정에 간단하게라도 언급된 학교가 6개 학교 이다.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으나 뒤의 6개 학교는 주로 두발과 신발, 가방 등을 한 줄 혹은 몇 줄로

간단하게 언급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규제의 요소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포괄적이거나 두발의 유형이나 신발의 모양 등을 언급하여 분석에 포함 시켰고 나머지는 거의 10개 학교를 분석한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료수집의 한계상 양적 분석은 유의미한 분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항목 분석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다.

1) 두발

교칙상 학생인권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두발과 체벌이다. 두발과 체벌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표현은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몇 년 전부터 전국고등학생연합과 인권단체가 두발자유를 주장하며 촛불집회를 한 것과 지난여름에도 학생인권네트워크라든 모임에서 서울, 경기도, 전북, 전주, 진주 교육청 앞에서 야간자율학습, 두발자유, 체벌금지를 주장하며 고등학생들이 일인 시위를 하였다. 그 영향으로 두발에 대한 자유는 확대되고 있는데 여전히 규제가 심한 학교들도 많다.

<표13> 두발에 대한 규제 유무

규제가 없는 학교	조건부 허용인 학교(수)	규제가 있는 학교(수)
	A11, B2, B3, B8 (4)	A4, A5, A8, A10, B1, B4, B5, B6, B7, A1, A2(11)

<표14>는 두발 규제가 있는 학교와 조건부 허용인 학교로 구분된다. 규제조항이 없는 학교는 없다. 16개 중 한 학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규제유무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 아래 <표15>에서 두발 규제의 예를 보면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90년 이전 학번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삭발을 했는데 지금은 삭발은 안 된다. 그러면서 학생다운 머리를 요구하고 있다. 학생들의 집단적인 문제제기로 교육부는 자율규정을 권고하여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을 정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그래서 여학생의 길이

제한이나 남학생의 길이 제한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아는데 의외로 길이와 모양, 그리고 머리핀과 끈의 색깔까지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부[학생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한 권고안¹³⁾에서도 기준의 모호성과 자신의 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언급하고 있다.

<표14> 머리 모양 규제의 예

- 여학생 :머리는 귀밑 10cm로 하고 반드시 묶어야 함
- 염색, 파마, 무스, 브릿지, 언밸런스 스프레이, 드라이, 젤, 칼라, 코팅 금지
- 옷깃에 닿을 경우 묶고 스프레이, 무스, 젤, 파마와 염색은 안한 순수한 머리
- 스포츠형, 상고머리 가능, 앞가르마, 구레나룻, 삭발을 금함
- 총 머리, 칼머리, 상고머리, 올림머리, 달은머리, 락머리 등 유행성 두발 금함
- 수업을 기르는 행위 금함
- 남: 윗머리는 혐오감이 들지 않는 길이이고 옆과 뒤는 스포츠형 (앞머리 5cm, 옆머리 귀를 덮지 않는다, 뒷머리 1cm)
- 단발형 권장(귀밑 10cm)/ • 단정하고 학생다운 머리가 유지
- 남학생 금지 머리모양 : 까까머리, 바가지형
- 원색(형광색 포함)이 아닌 고무줄이나 천 등으로 한가닥 묶음
- 길이는 제한 없음. 어깨선에 닿지 않을 정도 (어깨선에서 15cm 넘지 않도록 권장)
- 묶은 끈의 끝이 매듭에서 5cm 이상 남지 않도록 함.
- 머리핀은 오란한 장식이 없는 길이 10cm, 폭 2cm를 넘지 않는 것
- 머리띠는 너비 2cm 이내 원색 이외의 것.

13) - ‘학생신분에 맞는’이라는 규정은 표현이 모호하고 그 판단을 학교당국이 독점하게 되는 것임. 또한, 두발상태 불량으로 적시한 무스.젤 등을 사용하여 ‘두발형태의 변형을 가하지 않은 범위 내’라는 규정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자의적 벌점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용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예시하여야 할 것임.

여전히 기존의 학교규정에서 몇 cm 길이를 길게 허용하는 선에서 많이 봉합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머리핀과 묶는 줄은 규정에 맞는 것을 살 수도 없다. 이렇게 지나치게 까다롭게 구성된 규정은 창의성과 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방향과 맞는지 의문이 든다.

학생의 생활양식에 해당되는 두발의 경우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결정 권리를 침해하고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신경전을 확대해 나갈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학생인권침해를 가장 피부로 느끼는 두발 규정은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학생 개인의 자기 신체에 대한 의사를 존중하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

(경북 지역 일부학교 두발 규정 및 단속방법 예)

학교	두발규정	단속방법	비고
청도 'ㅇ'고	남-0.5cm, 앞머리 눈썹 위 여-어깨 밑 20cm이내 파마, 염색, 고착제금지	월 1회 생활 점검	남학생에게 더 엄격함
영천 'ㅇ'중	앞머리-눈썹 옆머리-귀가 덮히지 않게 뒷머리-교복 옷깃까지	학 생 부 장 이 가끔씩 훈화	학생회와 협의 함
울릉 'ㅇ'중	남-스포츠 7cm 여-단발, 커트, 묶음 머리 허용 파마, 염색, 고착제 금지	등교시 교문 앞 지도 담임지도	
상주 'ㅈ' 중· 중고	파마, 염색, 고착제 사용 금지	별다른 단속 없음	
영주'ㅇ'중	염색금지	등교시 교문지 도	엄격하게 지도 하지는 않음
예천 'ㄱ'중고	남: 앞머리-눈썹 위 옆머리- 귀 절반 이하, 뒷머리 - 옷깃 이하 스프레이 젤 무스 이용한 가 르마 금지, 가발 탈염색 파마 금지 여: 뒷머리 옷깃에서 10 이하 지나친 장식 금지, 탈염색 파 마 금지, 고착제 사용금지	사실상 두발 자유	

안동 'ㅇ'중	염색, 장발금지	일부교사 두발 단속-성적에 반영한 사례 있음	
구미 'ㅅ'여중	두발자유,염색 파마 금지	담임지도	
의성 'ㅇ'공고	길이제한	교문앞 지도 수차례 강권	
군위 'ㄱ'중	규정없음	잔소리정도	
김천 'ㄷ'중	7cm	거의 단속 없음	
예천 'ㄷ'고	염색,장발 고착제 사용시 벌점	권유	
상주 'ㄱ'공고	규정 없음	학생부교사 정기적단속	
구미 'ㅇ'중	자율화원칙 남-앞머리-시야가리지 않게, 옆머리-귀, 뒷머리 옷깃 여-앞머리:눈썹위 뒷머리-어깨위 파마,염색,드라이,고착제 사용시 벌점	등교시 학생부에서 점검-벌점부여	
영주 'ㄷ'고	생머리 기본 퍼머,염색금지 옆머리-귀 뒷부분 덮지 않게 뒷머리-옷깃을 덮지 않게	지도만 하고 단속안함	
경주 'ㅅ'공고	스포츠형, 염색, 파마, 고착제 금지, 유행성이 강한 독특한 머리, 삭발금지	1차 적발-담임인계, 2~4차 적발-가정통신문, 5차 적발-징계	월1회 최대 적발반 학교봉사 활동
청도 'ㅊ'여중고	자유, 긴머리 묶기	없음	특이한 머리모양만 훈화

2) 장신구 및 화장

장신구는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악세사리를 말한다. 그리고 화장은 얼굴 화장을 포함한 손.발톱의 메니큐어에 대한 규정이다.

<표15> 장신구 및 화장의 규제 유무

규제가 없는 학교(수)	규제가 있는 학교 (수)	기타
	A4, A5, A8, A10, B1, B4, B5, B6, B7, B8, A1, A2(12)	

<표1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은 모두 금지다. 특별히 종교와 관계된 악세사리 만 허용하는 경우가 한 학교 있고 그 외는 모두 규제이다. 악세사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는 학교 내 학생부와 학생들의 또 다른 대립점이다.

<표16> 장신구, 화장 규제의 예

- 가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마스크트, 팔찌 등 장신구를 착용 및 휴대하지 말 것
- 얼굴에 화장, 손톱, 발톱에 메니큐어를 칠하지 말 것
- 장식용 벨트 사용을 금한다
- 종교적인 악세사리(목걸이, 염주, 반지) 만 허용, 코걸이, 속눈썹, 입술화장 금지
- 손톱, 발톱이 필요이상으로 길게 기르는 것도 금지함
- 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종교적인 것 포함)을 패용하지 않는다.
- 화장을 금하며 화장품을 소지할 수도 없다.
(피부 보호제(스킨로션 등) 예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의 내용(각주 12)은 두발과 장신구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자의적 규제를 언급하고 있다. 위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의 종교에 따른 상징물이나 비슷한 차원의 장식물은 학생들의 생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선택권과 공동체의 규율에 대한 공론화는 사회생활에서 정치적 시민권의 주요한 요소이다.

3) 신발의 규제

신발은 우리 활동에서 가장 필수적인 물건이다. 그런데 신발에 대

한 아래 <표1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자의적이다. 규제가 불필요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는 판단이 든다. 신발에 대한 규정들이 학습이나 생활지도 등 어떤 영역과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희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지키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17>신발 규제의 내용

가격(수)	색상 형태(수)	실용적인 것(수)	기타
A1 (1)	A5, A4, B3, B5 ,B6 , B7, A1, A2 (8)	A8(검소), A9, B1, B4, B8 (5)	

우리나라는 초등학교까지는 상당 부분 자신의 생활 물품은 자신이 결정한다. 그러나 오히려 청소년기에 자기 결정권을 부정당하고 있다. 학생다운 것, 실용적인 것, 검소한 것 등의 애매모호한 규정은 학생들로 하여금 규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명쾌하고 정확한 문구로 규정을 만들었다 해도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규정은 처음부터 규정이탈자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 물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규정이 꼭 필요하다면 학생들과 협의하여 현실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18> 신발 규제의 예

- 굽이 높거나 필요이상으로 큰 것, 발목위로 올라오는 것은 절대 불가
- 원 색상 신발 금지
- 신발은 끈있는 운동화로 흰색, 흑색, 검색계통 원칙
- 바퀴가 부착된 신발은 착용을 금한다.
-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 색상이나 모양이 화려하지 않는 것
- 샌달, 부츠, 칠피구두, 검정색구두, 성인용 구두는 착용을 금한다.
- 흰색, 검정색의 단화나 운동화를 신는다.

- 실용적인 학생용 운동화(형광색 또는 원색 제외)및 학생용 단화 (여학생에 한함)
- 실내화는 슬리퍼나 끈이 없는 운동화로 한다.
- 지퍼나 장식용 금속성이 부착된 신발을 신지 않는다.
- 단화는 발목부분(복숭아뼈 위)까지 허용하며 색깔은 검정색, 밤색 계통으로 한다.
- 구두를 신을 경우 검정색이나 갈색으로 장식이 없는 학생용 구두로 하되, 장화 또는 군화형 신발, 신사용 단화, 굽 높이가 4cm 이상인 신, 샌들 등은 신지 못 한다.
- 발보다 지나치게 큰 실내화나 속칭 조리형태 실내화는 신지 않는다.
- 신발은 활동하기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나 학생용 구두를 착용하며 앞뒤가 개방된 신발이나 샌들 및 부츠는 신지 못한다.
- 학생다운 운동화, 저렴하고 실용적인 운동화
- 목이 긴 운동화나 굽이 높은 신발, 등의 착용은 금한다.
- 장화 또는 군화형 신발, 신사용 단화, 굽높이가 4cm 이상인 신, 샌들은 신지 못함

4) 양말의 규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는다. ‘사복을 입을 경우 학생답지 못하다.’, ‘빈부 격차가 표현되어 위화감이 생긴다.’, ‘옷에 너무 신경 쓴다.’(공부하라)가 규제의 주요한 근거이다. 교복과 둘러싼 논쟁은 일단 접어두고 양말에 관한 규정까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 수 있다.

자신의 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생활지도가 일관성도 논리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오히려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을 내놓거나 애매모호한 규정을 가지고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논란거리만 던지는 셈이다.

통제 위주의 규칙을 합의 위주로 바꾸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지는 자세를 배우고 학교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방법을 배울 것이다.

<표19> 양말규제 내용

가격	색상	형태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것
	A4, B4, B5, B6, B7, A1, A2 (7)	B5, A2(2)	

<표 20> 양말 규제 예

- 현란한 모양이나 색상 피하고 동복 착용 시 여학생은 살색 또는 검은색 스타킹착용
- 남학생은 무늬가 없는 단색양말(회색, 검정색, 회색, 밤색), 여학생은 검정색 스타킹(동복)과 목이 짧은 흰색 양말(춘추 하복)을 착용한다.
- 맨발이나 화려한 무늬의 양말, 성인용 스타킹, 등산용 스타킹은 착용을 금한다.
- 회색, 검정색만 신을 수 있고, 신발의 색과 일치하게 신는다.
(물방울모양, 꽃그림이 들어간 양말 불허)
- 위의 색깔이어도 목이 지나치게 길거나, 망사나 레이스가 있는 양말 지양
- 스타킹의 색상은 검정, 또는 살색으로 한다.
- 여학생 양말은 가급적 그림모양과 원색을 지양한다.
- 여학생 스타킹은 살구색과 검정색(양말 또는 스타킹)으로 하며 무늬가 있는 것은 착용하지 아니한다.
- 동복 착용 시 여학생은 검은 스타킹, 춘·하복은 흰색양말, 발목이 보이지 않아야 함
- 무늬가 크게 드러나 있거나 장식이 달린 양말은 신지 못한다.
- 원색(빨강, 초록, 노랑)이외의 것으로 하고, 가급적 감색, 흑색, 회색 등의 양말을 신는다.

5) 가방과 방한복 및 속옷 규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려면 책과 기타 학습준비물이 필요하다. 가방은 그러한 학습에 필요한 것을 넣어 다니는 용도로 사용되며 학생의 가방사용 용도는 일정하게 이미 한계가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가방을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해도 일정한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므로 무분별하게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핸드백에 책과 준비물을 넣어 다닐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표 22> 가방 규제 예

- 핸드백, 옆으로 매는 가방 불허
- 현란하지 않은 실용적인 학생용 가방(배낭형)을 사용한다.
- 요란한 무늬, 원색의 색상, 고가의 가방, 여행용가방, 한쪽 어깨에 매는 백팩, 스포츠용 가방은 금한다.
- 값싸고 실용적이며 학생다운 것
- 제외사항: 싹, 성인용 핸드백
- 지나치게 크거나 여행용, 운동선수용, 숙녀용 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규정들은 오히려 아이들의 미적 감각이나 창의성을 감퇴시킬 수도 있다. 위의 규정에 언급되어 있는 ‘학생다운 것’의 기준도 어른과 아이들의 생각 차이가 상당히 날 수 있다. 아이들은 당연히 학생다운 것으로 ‘밝고 화려하며 디자인도 다양한 것’을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표 23> 방한복 및 속옷 규제 예

- 남학생 감색 반코트, 여학생은 중간회색코트 또는 반코트이나 현란한 색상이나 디자인이 아닌 잠바 착용도 가능
- 원색의 천으로 되었거나, 문자, 그림이 크게 드러나 있는 것, 남성용 점퍼, 블루진류 등 학생용 외투로 부적합 한 것은 입지 못한다.
- 동절기에는 검은색과 청색 외투를 착용할 수 있으나 등교한 후에는 벗어야 한다.
- 길이가 치마보다 길지 않아야 함
- 교무실을 출입할 때나 수업할 때는 외투를 입을 수 없으나 혹한기 (11월 중순에서 이듬해 3월 초까지)나 야간자습시간에는 예외로 한다.
- 남학생 동절기 흰색, 검정색 외투착용 허용, 여학생 동절기 조끼 외투착용 허용
- 하복 및 춘추복 안에는 반드시 흰색 속옷을 입는다.
- 하복 시 남학생 흰색 계통의 셔츠(내의) 착용, 여학생 메리야스 (내의 착용)

위의 내용들은 마치 군대나 엄격한 기숙학교의 규정을 떠 올리게 한다. 옷을 사기위해 의류매장에 가 보면 너무나 다양한 색깔과 디자인의 옷들이 진열되어 있다. 학생용 옷이라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위의 규정에 맞는 옷을 구하기가 훨씬 어렵다. 뒤편 새롭고 개성 있는 것에 끌리는 요즘아이들에게 가장 어둡고 단순하며 유행에 뒤떨어진 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외투의 경우 추위와 상관없이 교실과 교무실에서는 착용할 수 없다.

군이 일제의 잔재, 군사문화의 영향을 언급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취향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과 가능하면 먼 내용을 규정으로 삼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부재하다는 것이 판단이다.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이라면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용의 복장규정은 학생들이 매일매일 등교하면서 선생님과 마주치며 검열을 받고 있는 규정인데 자신의 입장을 개진할 통로가 거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규제의 내용이 모호하여 규정으로서 상호 인정되기보다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측면이 많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 대입을 핑계로 학생들이 가지는 헌법적 권리와 보호받아야 할 학생인권을 상당부분 침해하는 것이 현재 학교의 현황이다.

생활과 밀접한 용의 복장 규정만큼은 자신의 결정권을 인정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7. 마치며

2000년대 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의 집단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의 결과로 두발 문제가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학교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

다. 올해 들어 학교 폭력의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학생들의 개별적·집단적 의사 표현은 점점 확대되어가고 있다. 학생인권 문제는 학생에 대한 관점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그 동안 학생인권을 위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활동한 중·고등학생들과 인권단체,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의 결과이다.

인권침해는 유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현재 중·고등학생과 관련하여 가장 주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두발 문제와 체벌문제이지만 실상은 학생생활과 관련한 거의 대부분이 두발과 체벌문제 차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다. 중·고등학생들은 미성숙한 존재로서 시민·정치적 권리를 유보시키는 일(유보시키고 일류 대학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 나가도록 하는 일)은 우리 사회 어른들이 전반적으로 동의를 보낸 측면이 있다. 즉 일반인이든 교사든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을 학생들에게 말하고 학생들도 그렇게 시민·정치적 권리를 유보하고 미래를 위해 현재의 생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학생인권과 인간의 기본권이 헌법조문과 유엔 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으로만 존재하고 현재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문제와 이것을 대하는 교사들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사회 학생통제의 만능키인 입시로 돌릴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인권의 문제는 인권을 지키는 사회적 의식을 학생들이 체화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 체벌의 법제화 논쟁에서 ‘학생의 의견도 교육적인 체벌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라거나 ‘체벌의 대안은 무엇이냐’ 라는 반론을 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측면은 인정하면서도 질문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낀다. 왜 학생들이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었는가?

학생들의 현재 상황은 사회의 반영이다. 학생들의 가치가 학교에서 통제 당하는데 익숙해져서 통제를 조직운영의 기본으로 내면화시킨 결과일 수 있다. 대입에 대한 가치부여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참 무서운 일이다.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학생이 인권존중의 생활

방식을 체화할 수 있겠는가 ?

마찬가지 체벌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체벌에 대한 대안은 체벌을 안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것을 가지고 한대는 인정, 두 대는 불인정은 똑 같은 행위를 다르게 표현해 보려는 자족적 의미 부여일 뿐이다.

학생인권의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 현실에서 만만치는 않은 일일 수 있지만 유보할 일은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실천적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 일은

1) 우리의 교육 및 생활 현장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한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한다. 우리 모두가 인권운동을 전문적으로 추진해나가지는 못하겠지만 자신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인권 침해적 요소는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야 하겠다. 학생을 위해 체벌하고 학생을 위해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현재의 학교에서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관심과 학생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자신의 가치기준을 정리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열심히 한다.’ 혹은 ‘나중에 학생들이 고맙다.’고 할 것이라는 말로 현재의 역압을 정당화하는 한 학생인권 유보는 학생들이 당연히 겪어야 할 일이 될 수 밖에 없다.

우선 우리들 자신부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존재와 내용, 의미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학생인권에 대한 권고문을 고려한 속에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교육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실천해나가고 인권존중에 대한 학생교육과 사회적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겠다. 학생들이 인권존중을 토론하고 실천하는 학교생활을 통하여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누리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역단위 학생생활규정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은 교육부나 경상북도 교육청 차원

의 공문이 내려오지 않으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의 논의를 하더라도 공문이나 타 학교의 경우를 수집하여 주위의 학교가 모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생활 규정과 같은 생활의 문제를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학생들과 논의하고 지역의 문제로 공론화를 시킨다면 사회적으로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확산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모든 사회적 문제는 주체의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 데서 공론화가 확대되고 문제해결이 될 수 있듯이 학생인권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학생들의 사회적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이다. 공론화의 장은 교육주체의 의사소통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학생인권 조례 제정사업이 필요하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하였지만 학생인권은 학생생활의 문제이다. 이것은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큰 틀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생활의 주요한 준거가 되는 지역의 문제로 구체화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와 부천의 학생인권 조례제정 사업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학생인권조례제정사업을 할 때 모범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일본 가와사키 시에서 2000년 12월 21일 제정한 [가와사키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이다. 가와사키시의 조례는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2년간 200번이나 넘는 회의를 통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즉 조례제정사업은 조례제정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차원 또는 기초자치 단체 차원의 학생인권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이 되며 학생인권 확산 및 조례집행의 주체가 형성되는 것이다.

4) 학생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 개정운동이 필요하다

이것은 큰 틀에서 법을 바꾸거나 새로이 만드는 일이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또한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다. 현재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준중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법의 통과도 여론의 영향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의식이 뒷받침 되어주지 못한다면 법 개정의 의미는 반감될 수 있다.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학생인권침해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인권 개선 의지와 자발적인 실천

지난 여름 학생인권네트워크라는 모임이 전북과 서울, 경기 등의 교육청에서 일인시위 하는 것이 신문을 통해 보도 되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인 두발, 강제야간자습, 체벌을 없애라는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한 것이다. 아직도 학교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언급이 금기시 되고 있는 현실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자기 의사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인권문제가 그러하겠지만 특히 학생인권의 문제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체벌에 무감한 교사가 문제일수도 있고, 성적을 위해서라면 폭력적인 학교 분위기도 허용할 수 있다는 학부모의 문제일수도 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의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앞의 여러 규정들을 분석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정에 학생이 빠져있으며 또한 인권이 빠져있음을 알 수 있다. 법 보다 더 무서운 것이 관습이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늘 잠겨있는 관습에서 벗어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미래를 일구어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인권의 힘찬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참고 자료] 징계 기준 (16개 학교)

1. 훈계기준

구 분	내 용
	1. 청소, 주변근무 등 학생 의무에 태만한 학생 2. 수업 중 배회하거나 타 학급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학생 3. 수업 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4.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5. 교내봉사에 속하는 것으로 경미한 학생 무단으로 결석, 지각, 조퇴, 외출, 결과를 한 학생 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예의, 용의, 언행 등) 학교시설, 또는 기구를 과실로 파손한 학생 (파손물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변상) 학교단체행사에 불참한 학생 심한 욕설을 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학교 출입 시 담을 넘은 학생

2. 교내봉사 기준

구 분	내 용
수업 및 시험	1. 수업을 거부한 학생 수업태도가 불량하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자 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동조한 학생
준법	1. 파출소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2. 학교 출입문이 아닌 곳으로 출입한 학생 3. 타인을 교사하거나 비행을 방조한 학생 4. 오토바이를 탑승하고 등하교한 학생 5. 2회 이상 훈계를 받고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학생 7.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 조퇴한 학생 8.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학생 출입금지 된 장소에 출입한 자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 했거나 이에 반항한 자 9. 무단 가출을 한 학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도박을 한 학생, 수업료를 유용한자 11.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12. 청소, 주변업무,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 태만한 자 13. 무임승차, 승차권을 훔친 자, 타인의 학생증을 훔치거나 이용한자 14. 사회봉사에 속하는 것으로 경미한 학생 학교계시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고의적으로 싸움을 했거나 타인을 구타한 자.
<p>용의복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발모양이 단정치 않거나, 염색, 무스사용, 원색적인 머린 핀을 사용한 학생 2.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변형된 교복착용, 현대 미착용을 단정치 못한 복장을 한 학생 3. 학교 용의 복장 규정에 어긋나는 신발이나 양말을 착용한 학생 4.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몸차림을 한 학생(귀걸이, 긴 손톱, 반지, 목걸이, 화장, 눈썹 깎기 등) 5. 마크, 명찰을 지정위치에 착용하지 않은 학생 6.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소지품을 갖고 다니는 학생 7. 학생으로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출입한 자 8. 불량서적(음란서적)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금지된 과외를 받거나 지도한 자
<p>예 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행인이나 내교자에게 이유 없이 모욕적인 언행을 한 학생 2. 교실복도에서 고성방가 및 뛰는 학생 (수업 중 핸드폰 사용한 학생) 3.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4. 욕설을 남용하거나 싸움을 한 학생 5. 남녀 풍기 상 불미한 일로 남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만한 행동을 한 학생 6. 교사에게 불손한 행동을 한 학생 7.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언행이 불손한 자
<p>폭 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욕설로 심한 혐오감을 주거나 무례한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준 학생 2. 악발이나 낙서 등을 이용하여 주의주장을 관철하려는 학생과 이에 동조한 학생 3. 상급생이 지도교사의 허락 없이 하급생을 집단 또는 개별적으로 훈계하거나 체벌한 학생

3.사회봉사 기준

구 분	내 용
시 험 및 폭 력	1. 시험을 거부한 학생 2. 시험 중 부정행위가 재학 중 2회이상 적발된 학생 3.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호출 및 이동시 고의로 탈주한 학생 4. 타인을 구타하거나 흥기를 소지한 학생 5. 집단폭행을 모의했거나 선동, 가담한 학생 6. 음주 및 흡연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7. 음주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 8. 부녀자를 희롱하거나 심한 욕석을 한 학생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승차한 자 자해 상해한 자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하였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준 법	1. 무단결석이 7일 이상이 학생 2. 무단 가출을 2회 이상한 학생(동일학년) 3. 무단가출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기각 학생) 5. 선도조건 기소유예, 선고유예 학생 외설물(음란한 내용의 그림, 비디오, 테이프, 서적 등)을 소지, 탐독 및 시청한 자 6. 인장, 가정통신문, 학생증, 기타 각종 증명서를 위조, 변조하여 행사하거나 도용한 학생 7. 하급생으로서 상급생을 구타한 학생 8. 학교장의 허가 없는 대외행사에 참여, 출품, 출연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학생으로서 품위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9.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10. 학교의 공인된 단체 이외의 사회단체나 사설 서클을 조직, 권유, 가입 활동을 한 학생 11. 학교수업 또는 학교행사에 고의로 불참하여 극장, 유흥업소 등에 출입한 학생 12.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학생 13. 정치성 집회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유도, 또는 집회를 주동한 자
금 품 및 공 유 물 관 리	1. 금품을 절취, 사취한 학생 2. 고의적으로 금품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아니한 자 3. 학교 시설물 및 비품을 절취한 학생 4. 타인의 학용품, 기타 물품을 절취 파손한 학생

	5. 학교 시설물(교구, 비품) 게시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6. 교내외에서 수목, 화초, 과실, 가축 등을 고의로 훼손 도취한 학생
--	--

4. 특별교육 이수 기준

구분	내용
폭 력 및 퇴폐 행위	1. 상하급생간의 공갈, 협박, 감금 또는 납치, 유인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한 학생 2. 금품을 강탈한 학생 3. 학교장의 허가없이 교내외에서 상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금품을 징수한 학생 4. 본드, 대마초, 마약류, 환각제 등을 복용한 학생 5. 흥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6. 음주상태에서 행인에게 상해를 가한 학생 7. 불량서클 및 불건전한 남녀 서클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입힌 학생 불온 문서를 고의로 은닉하거나 탐독, 제작, 게시 및 배포한 자 비이성적,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한 자 8. 집단가출을 계획 주동하거나 이에 가담한 학생, 유흥, 퇴폐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집단폭행에 가담 또는 패싸움을 했거나, 이를 선동·모의한 자 9.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학생
시 험	1. 백지동맹을 주도하거나 선동한 학생 2. 시험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준 법	3.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연속 14일 이상이거나, 동일 학기에 21일 이상 결석한 학생 외부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되어 불순 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자 4. 형 집행을 받은 학생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고 반항하여 교원을 모독한 자 인장 및 증명서를 위조한 자 교내 기물 및 공공 시설물을 고의로 파괴한 자 5.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고 복교 후 사회봉사이상의 문제를 야기한 학생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은 자

	6. 징계지도에 불응한 자 학생의 신분을 망각한 풍기문란, 기타 이상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	--

5. 퇴학처분 기준

구 분	내 용
준 법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2.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교권을 모독한 자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불량 씨름을 조직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자 3. 특별교육 이수를 받고도 학교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학생 4. 동맹휴학을 선동, 주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학력이 극히 열등하여 학업 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석이 30일 이상이며 소재가 불분명한 자 동일학년에 특별교육 3회 이상을 받은 자
폭 력 및 퇴폐행위	1. 선도지도에 불응한 학생 및 지도 시에 폭행 등에 가담하여 흉기를 사용하고 상해를 가한 학생 2. 방화를 시도하거나 방화한 자 상습적으로 금품갈취, 지단따돌림, 폭력, A2를 하는 학생 3. 교내외에서 타인의 차량을 고의로 훼손한 학생 4. 청부 위협, 폭행한 학생 5. 본드, 대마초, 마약류, 환각제 등을 사용하여 2회 이상 발각되거나, 상습적으로 복용한 학생 6.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학교명예를 훼손한 학생 (유흥업소, 숙박업소 출입, 혼숙, 추행 등) 7.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동거, 임신, 출산 등에 해당하는 학생



II. 경북지역 학생인권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

=== 차 례 ===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2. 표본대상
3. 조사기간과 방법, 통계처리
4. 문항별 분석
5. 맺음말
6. 조사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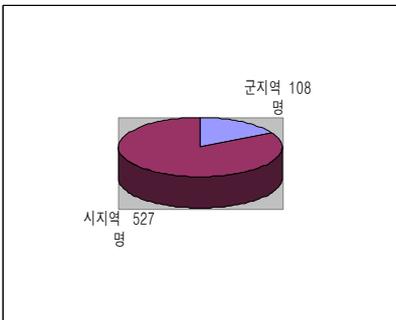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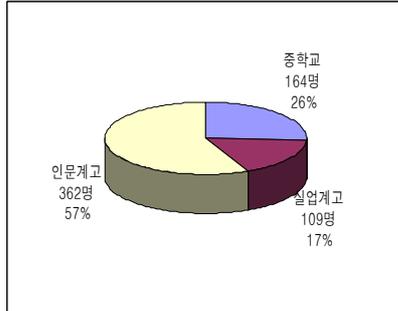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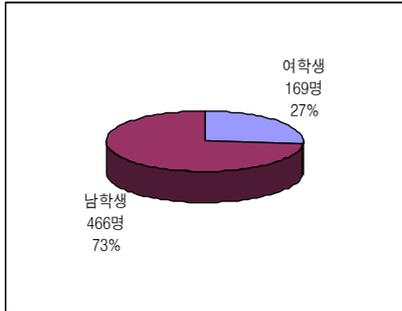
1. 조사의 배경과 목적

이 조사는 경북의 학생인권의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점을 찾고자 ‘일상생활 관련’, ‘학생인권 의식 관련’, ‘학생자치활동 관련’, ‘학생인권 신장 방안관련’ 등 4가지 갈래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내의 여러 상황들에 대해 학생들의 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된 학교 내의 규정들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표본대상

경상북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635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다. 사례수를 성비로 구분하면 여학생이169

명 남학생 466명, 급별 구분은 중학생이 164명이며 고등학생은 실업계 109명, 인문계 362명이다. 지역별 구분에서는 군지역 학생이 108명, 시지역 527명 설립별 구분은 공립 426명, 사립 209명을 표본으로 삼았다.



3. 조사기간과 방법, 통계처리

이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2006년 4월 초안을 잡고 5월부터 전교조경북지부 정책실 회의를 통해 보완되었으며 표집된 학교별로 우편을 통하거나 분회장을 직접 만나 배포하였다. 설문작업은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되었다.

미리 만들어진 질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635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는 설문

지는 제외시켰다.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설문지를 분류하고 부호화 및 데이터 입력, 오류수정 과정을 거쳐 한길리서치에 의뢰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4. 문항별 분석

가. 일상생활 관련

문1)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6.5	30.0	36.4	63.6	37.2	26.3
성 별	여학생	1.8	20.1	21.9	78.1	42.6	35.5
	남학생	8.2	33.5	41.7	58.3	35.3	23.0
학 교 별	중학교	12.2	24.4	36.6	63.4	31.7	31.7
	실업계고	4.6	33.9	38.5	61.5	38.5	22.9
	인문계고	4.4	31.3	35.7	64.3	39.3	24.9
지 역 별	군지역	.9	25.9	26.9	73.1	42.6	30.6
	시지역	7.6	30.8	38.4	61.6	36.1	25.5

성적과 관련하여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36.4%로 그렇지 않은 학생 63.6%보다는 훨씬 적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21.9%이고 남학생이 41.7%로 남학생이 두 배 가까이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중·고 급별과 실업계와 인문계 사이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군지역이 체벌 받은 비율이 26.9%이고 시지역이 38.4%로 군지역보다 시지역에서 더 많은 학생이 체벌을 받은 경험을 보이고 있다. 이는 소규모학교

가 많은 군지역보다 큰 학교가 많은 시지역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경쟁적인 교육환경에 놓여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즉 학년 당 1~2개 반인 군지역에 비해 시지역 학교는 반이 많아 반별 비교가 가능하며, 생활 수준이나교육열이 높은 시지역 학부모의 정서가 학교와 교사들에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아울러 도 단위 학력고사나 모의고사 결과 등을 놓고 학교가 많은 시지역에서 비교가 용이하고, 여기에 집착하는 학교 관리자들의 행태에서 경쟁적 환경이 더 치열하게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문2)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

(남녀공학의 경우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14.2	40.5	54.6	45.4	32.7	12.7
성 별	여학생	9.1	36.4	45.5	54.5	43.8	10.7
	남학생	16.9	42.7	59.6	40.4	26.7	13.8
학 교 별	중학교	11.9	45.2	57.1	42.9	26.2	16.7
	실업계고	15.6	31.2	46.8	53.2	39.4	13.8
	인문계고	13.8	44.6	58.5	41.5	30.3	11.3
지 역 별	군지역	6.5	25.0	31.5	68.5	50.0	18.5
	시지역	17.6	47.5	65.1	34.9	24.8	10.1

남여공학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문제는 전체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율이 54.6%로 차별 받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왔으며, 여학생은 차별을 받는다는 비율이 45.5%고 남학생은 59.6%로 남학생이 차별 받고 있다는 의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도적이거나 구조적 차별(학생회 구성이나 교육

여건 지원 등)에 따른 피해의식이라기보다는 주로 학생들을 대하는 교사들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즉 상대적으로 더 산만하고 활동적인 남학생보다 온순하고 얌전한 여학생들에게 교사들은 말이나 태도가 부드러워지게 되고, 체벌도 여학생에게는 잘 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은 문항1에서 성적으로 맞은 경험이 있는 학생 비율에서도 남학생이 41.7%로 여학생 21.9%보다 거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나는 결과에서도 뒷받침된다. 실제 교실에서 많은 남학생들이 '선생님들이 여학생과 차별한다'고 불평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이다.

학교별로는 중학교와 인문계고가 57.1%와 58.5%로 실업계고 46.8%보다 더 많은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시지역에서 차별 받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65.1%로 군지역 31.5%보다 두 배나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며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현상적으로만 본다면 학생수가 적은 군지역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가 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간적이고 친밀하므로 차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희석되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문3)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자주 하신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12.3	38.1	50.5	49.5	39.7	9.8
성 별	여학생	11.8	34.9	46.7	53.3	40.8	12.4
	남학생	12.5	39.3	51.8	48.2	39.3	8.9
학 교 별	중학교	12.2	39.6	51.8	48.2	36.0	12.2
	실업계고	7.3	36.7	44.0	56.0	49.5	6.4
	인문계고	13.9	37.9	51.8	48.2	38.4	9.7
지 역 별	군지역	1.9	34.3	36.1	63.9	50.0	13.9
	시지역	14.5	38.9	53.4	46.6	37.6	9.0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에 과반수가 모욕감을 느낀다는 응답을 했다. 이는 요즘 아이들의 높은 자존심에 맞추어 지도에 적절한 언어 선택과 화법의 문제가 대두 된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실업계고보다 중학교와 인문계고가 조금 더 많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시지역이 군지역보다 훨씬 많이 모욕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시·군 지역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문항2번의 분석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 즉 좁은 공간에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지역 학교에서 통제와 지시를 위해 교사들의 언행이 거칠어 지거나 학생들의 자존심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문4) 학교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4.6	16.3	20.9	79.1	51.3	27.7
성 별	여학생	5.9	18.3	24.3	75.7	47.9	27.8
	남학생	4.1	15.6	19.7	80.3	52.6	27.7
학 교 별	중학교	3.7	11.7	15.3	84.7	47.9	36.8
	실업계고	1.9	15.0	16.8	83.2	50.5	32.7
	인문계고	5.8	18.8	24.7	75.3	53.2	22.2
지 역 별	군지역	2.8	13.0	15.7	84.3	50.0	34.3
	시지역	5.0	17.0	22.0	78.0	51.6	26.4

학교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느끼는 비율이 20.9%로 적지 않은 학생들이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으며 남학생 19.7%보다는 여학생이 24.3%로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별로는 대학 입시 준비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과중한 학습부담과 경쟁적 분위기가 만연한 인문계고 학생들이 중학교나 실업계보다 훨씬 더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군지역보다는 시지역에서 더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도시지역과 인문계고 학생 그리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에 대해 학교와 교사들의 배려가 더 필요함을 보여준다.

문5)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1.6	30.7	32.3	67.7	47.2	20.5
성 별	여학생	1.2	39.5	40.7	59.3	48.5	10.8
	남학생	1.7	27.5	29.2	70.8	46.8	24.0
학 교 별	중학교	2.5	35.0	37.4	62.6	36.8	25.8
	실업계고	.9	41.5	42.5	57.5	45.3	12.3
	인문계고	1.4	25.6	26.9	73.1	52.5	20.6
지 역 별	군지역	1.9	51.4	53.3	46.7	37.1	9.5
	시지역	1.5	26.5	28.1	71.9	49.2	22.7

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부정적인 답변이 월등히 높았다. 보장하고 있다는 응답이 32.3%이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7.7%로 학교 교칙이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교칙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의 교칙들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되었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학생들의 의식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교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해진 규칙을 내면화 과정 없이 따라야 하므로 교칙과 권리보장의 상관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주로 학생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보다는 학생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있는 것도 위의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이 된다.

문6) 교칙이나 학생관련 규정을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1.9	29.6	31.5	68.5	37.1	31.4
성 별	여학생	2.4	30.5	32.9	67.1	43.7	23.4
	남학생	1.7	29.3	31.0	69.0	34.7	34.3
학 교 별	중학교	2.5	28.0	30.4	69.6	34.2	35.4
	실업계고	.9	45.4	46.3	53.7	31.5	22.2
	인문계고	1.9	25.6	27.6	72.4	40.1	32.3
지 역 별	군지역	2.8	41.5	44.3	55.7	34.9	20.8
	시지역	1.7	27.2	28.9	71.1	37.5	33.5

학칙, 교칙, 각종 교내 규정들을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도 교칙이 학생들의 권익을 보장하느냐에 대한 설문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답변이 68.5%로 월등히 높았다. 이는 학교 내에서 각종 규정 제정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이 배제되고 있으며, 학교 민주화에도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와 시지역 학생들이 더 많이 배제되고 있는 것(72.4%, 71.1%)을 볼 때 입시만능주의,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자율적 학생자치 문화의 정착이 요원할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의 공간으로서 학교교육의 실천적 의미를 모두 놓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7)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6.2	38.4	44.6	55.4	31.7	23.7
성 별	여학생	3.6	32.0	35.5	64.5	37.3	27.2
	남학생	7.2	40.8	47.9	52.1	29.7	22.3
학 교 별	중학교	6.8	16.8	23.6	76.4	37.3	39.1
	실업계고	4.6	44.0	48.6	51.4	33.9	17.4
	인문계고	6.4	46.4	52.8	47.2	28.6	18.6
지 역 별	군지역	2.8	37.0	39.8	60.2	38.9	21.3
	시지역	6.9	38.7	45.6	54.4	30.3	24.1

학교에서의 소지품 검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없어져야할 위험한 관행 중에 대표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44.6%나 나와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받고 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교나 실업계고보다는 인문계고 학생들이, 군지역보다는 시지역 학생들이 소지품 검사를 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지역의 인문계고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소지품 검사를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교에 장시간 있으며 심한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문 8) 학교에서 두발불량을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있다	없다	미응답
전체		51.7	48.1	.2
성별	여학생	16.2	83.2	.6
	남학생	64.5	35.5	.0
학교별	중학교	39.0	61.0	.0
	실업계고	48.6	51.4	.0
	인문계고	58.5	41.2	.3
지역별	군지역	29.6	70.4	.0
	시지역	56.3	43.5	.2

두발 문제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것이며 요즘 들어 두발 자유에 대한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 학생과 학교 사이에 심각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두발 불량으로 체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이 51.7%로 과반수를 넘고 있어 하나의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체벌 받은 경험이 남학생은 64.5%, 여학생은 16.2%로 여학생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나름대로 머리를 어느 정도 기를 수 있어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고 체벌 또한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데 반해 남학생들은 여전히 두발 길이에 통제를 많이 받고 있고 이를 어겼을 때 체벌 또한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인문계고 학생들이 두발 불량으로 체벌 받은 경험이 58.5%로 많이 높게 나타나고 군지역보다 시지역에서는 두 배 정도 더 많은 학생들이 두발 불량으로 체벌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2005. 6. 14. 두발관련 자료 및 의견)에 의하면 2005. 5. 11. 현재 전체학교의 92.56%와 91.10%에 해당하는 2,761개의 중학교와 1,924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발생하였다.

아직도 학교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두발제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6월 27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지로 학생두발제한 관련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인간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 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문 9) 학교에서 두발불량을 이유로 머리카락을 잘린 적이 있다.

		있다	없다
전체		23.2	76.8
성별	여학생	5.9	94.1
	남학생	29.5	70.5
학교별	중학교	17.1	82.9
	실업계고	10.1	89.9
	인문계고	29.9	70.1
지역별	군지역	12.0	88.0
	시지역	25.5	74.5

두발이 불량하다고 교사가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것은 일제의 잔재가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한 ‘학교 내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에도 학생들이 느끼는 인권침해 내용으로 두발규제와 복장 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응답되었다. 전체 학생의 23.2%가 두발이 잘린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남학생이 여학생의 5배 정도가 머리카락을 잘린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인문계고 학생들과 시지역 학생들이 머리카락을 잘린 적이 상대적으로 많아 문 8에서의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두발 및 복장문제는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교원들의 지도방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은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문10) 학교에서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13.2	33.4	46.6	53.4	33.1	20.3
성 별	여학생	4.2	25.0	29.2	70.8	38.1	32.7
	남학생	16.4	36.5	52.9	47.1	31.3	15.8
학 교 별	중학교	10.4	23.2	33.5	66.5	29.3	37.2
	실업계고	7.3	33.0	40.4	59.6	40.4	19.3
	인문계고	16.2	38.3	54.5	45.5	32.7	12.8
지 역 별	군지역	2.8	18.5	21.3	78.7	50.0	28.7
	시지역	15.3	36.5	51.8	48.2	29.6	18.5

복장 불량으로 체벌 받은 경험은 46.6%로 그렇지 않은 경우 53.4%보다 다소 적은 편이다. 복장 불량으로 남학생이 체벌 받은 경험이 52.9%로 여학생 29.2%보다 훨씬 많고, 인문계고 학생들이 54.5%로 중학교 23.2%, 실업계고 40.4%보다 훨씬 많으며, 시지역이 51.8%로 군지역 21.3%를 훨씬 앞선다. 이러한 양상은 문5에서 문9까지의 설문 결과와 거의 같아 도시지역의 인문계 고등학생들이 두발 문제나 복장 문제에 대한 욕구가 높고 그만큼 학교로부터 체벌과 같은 제재도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나 시지역의 학생들에게서 두발·복장과 관련한 인권침해가 많은 것은 성적지상주의 속에 다른 가치가 부정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11) 정규수업시간 외에 보충학습 등 입시공부를 위해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게 하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31.9	24.2	56.1	43.9	22.9	21.0
성 별	여학생	21.3	25.4	46.7	53.3	23.1	30.2
	남학생	35.8	23.7	59.5	40.5	22.8	17.7
학 교 별	중학교	13.5	14.1	27.6	72.4	27.6	44.8
	실업계고	9.2	25.7	34.9	65.1	40.4	24.8
	인문계고	47.1	28.3	75.3	24.7	15.5	9.1
지 역 별	군지역	13.9	32.4	46.3	53.7	34.3	19.4
	시지역	35.6	22.5	58.1	41.9	20.6	21.3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 등으로 정규수업시간 외에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게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56.1%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43.9%보다 많이 나왔다. 그리고 인문계고 학생들이 75.3%로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서 공부한다고 응답했으며, 중학교와 실업계고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많이 낮았다. 이는 인문계고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위해 보충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까지 반강제적으로 강요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중학교와 실업계고에서도 보충 수업 등이 늦게까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12)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2.9	32.2	35.0	65.0	40.3	24.7
성 별	여학생	3.6	33.7	37.3	62.7	45.2	17.5
	남학생	2.6	31.6	34.2	65.8	38.5	27.3
학 교 별	중학교	4.3	37.3	41.6	58.4	34.8	23.6
	실업계고	4.6	39.8	44.4	55.6	35.2	20.4
	인문계고	1.7	27.6	29.2	70.8	44.3	26.5
지 역 별	군지역	3.7	45.8	49.5	50.5	36.4	14.0
	시지역	2.7	29.4	32.1	67.9	41.1	26.9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존중 된다고 응답한 학생이 35%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 축제, 체험학습, 수학여행, 야영 등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학교와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추진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학생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고양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의견이 더 많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인문계 고등학교와 시지역 학교 학생들이 큰 차이를 보이며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외모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인정하고 실현하도록 돕는 것은 학생자치와 학생인권의 기본 요소라 할 수 있다. 결정하게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결정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라 본다.

문13) 학교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종교활동(예배, 예불, 찬송, 미사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6.0	5.7	11.7	88.3	29.9	58.5
성 별	여학생	1.2	7.7	8.9	91.1	30.8	60.4
	남학생	7.8	5.0	12.7	87.3	29.5	57.8
학 교 별	중학교	18.9	6.7	25.6	74.4	24.4	50.0
	실업계고	2.8	6.4	9.2	90.8	41.3	49.5
	인문계고	1.1	5.0	6.1	93.9	28.9	65.0
지 역 별	군지역	.9	5.6	6.5	93.5	41.7	51.9
	시지역	7.0	5.7	12.8	87.2	27.4	59.8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나, 종교재단 소속의 사립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11.7%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평균치의 두 배가 넘는 25.6%가 자신의 종교와 다른 종교 활동을 강요받고 있다.

전체응답자중 33%인 209명이 사립학교 학생으로 표집되어 있다. 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11.7%(74명)의 학생들은 모두 사립학교 학생들이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설문에 응한 사립학교 학생 209명중 35%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교 활동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헌법과 세계적인 각종 권고안들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는 곳이 학교라고 볼 때 또 다른 의미의 인권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나이 어린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특정 종교 활동 강요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하는 학교와 학부모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문14) 학교에서 벌이나 징계를 받을 때 선도협의회에서 자신을 변호할 기회 등 적절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있다	모른다
전체		7.3	92.7
성별	여학생	7.1	92.9
	남학생	7.3	92.7
학교별	중학교	9.8	90.2
	실업계고	12.0	88.0
	인문계고	4.7	95.3
지역별	군지역	10.2	89.8
	시지역	6.7	93.3

초중등교육법 제18조 2항에는 학생을 징계할 때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선도협의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겨우 7.1%에 불과하다. 학생들이 미성년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참석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자기 방어를 위한 변론권을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나 이러한 사실이 학생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학생들의 중요한 권리를 빼앗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교육하여 학생들이 변호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선도협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가 내려졌을 때 이를 문제 삼으면 선도협회의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문15) 학교에 장애학생을 배려한 시설이 잘 되어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5.5	20.1	25.6	74.4	36.8	37.6
성 별	여학생	7.1	24.9	32.0	68.0	30.2	37.9
	남학생	5.0	18.3	23.3	76.7	39.2	37.5
학 교 별	중학교	1.8	12.8	14.6	85.4	39.0	46.3
	실업계고	.0	9.2	9.2	90.8	38.5	52.3
	인문계고	8.9	26.7	35.6	64.4	35.3	29.2
지 역 별	군지역	.0	9.3	9.3	90.7	47.7	43.0
	시지역	6.7	22.2	28.9	71.1	34.6	36.5

학교에 장애학생들을 배려한 시설이 잘 되어있다는 응답이 25.6%,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이 74.4%에 이른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배려 수준과 거의 마찬가지이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장애학생들을 배려한 시설이 잘 되어있다는 응답이 9.2%에 지나지 않고, 군지역에서도 9.3%에 지나지 않아 장애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더욱 더 필요한 곳에 오히려 부족한 현실이다. 장애 학생의 인권은 좀 더 다각도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장애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는 것과 제도적인 지원, 그리고 실제로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시설지원 등이 그것이다.

문16)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2.5	31.4	34.0	66.0	46.0	20.0
성 별	여학생	1.8	33.9	35.7	64.3	47.0	17.3
	남학생	2.8	30.5	33.3	66.7	45.7	21.0
학 교 별	중학교	3.1	32.7	35.8	64.2	37.7	26.5
	실업계고	2.8	31.2	33.9	66.1	47.7	18.3
	인문계고	2.2	30.9	33.1	66.9	49.3	17.5
지 역 별	군지역	4.6	34.3	38.9	61.1	45.4	15.7
	시지역	2.1	30.8	33.0	67.0	46.2	20.9

학교는 아이들에게 어떤 곳인가? 거의 매일 눈만 뜨면 가야하는 곳이고 하루 중 대부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보면 학교에 대해 아이들이 가지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편안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설문에 66%가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고 34%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다. 그리고 성별, 급별, 지역별 응답에는 큰 편차가 없었다. 학생들의 3분의1만이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3분의 2가 학교에 대해 근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교사, 학교 시설, 학교 생활과 학교 문화, 교육 활동 전반에 대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학교라는 공간이 공부도 해야 하는 곳이지만 또래들과의 관계형성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같은 취미나 능력을 가진 동아리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17) 입학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1회	2-3회	그이상
전체		71.7	10.7	11.6	6.0
성별	여학생	87.0	5.9	4.7	2.4
	남학생	66.1	12.4	14.1	7.4
학교별	중학교	73.1	12.5	10.6	3.8
	실업계고	48.6	11.9	22.0	17.4
	인문계고	78.1	9.4	8.9	3.6
지역별	군지역	62.0	7.4	16.7	13.9
	시지역	73.7	11.3	10.6	4.4

학생 인권에 관해 71.7%가 단 한 번의 교육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우리 학교와 교육과정이 학생의 인권에는 무관심하며 인권의식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존중되고 한 인격체로서 생활해나가고 대접 받기보다 오직 공부만 해야 하고 사고를 치지 말아야 하는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학생관이 바뀌어야 하며 학력에만 관심을 두는 교육주체들의 인식에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 할 때 엄밀히 말하면 그 수요자는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학부모의 관점과 학생의 관점은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본다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우리도 학생이 학교에서 부당한 처우나 제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르치고, 제도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문17-1) (위 질문 2, 3, 4에 답한 경우)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난 후 유익했습니까?

		매우 유익했다	조금 유익했다	유익하지 못했다
전체		8.1	52.3	39.5
성별	여학생	15.0	45.0	40.0
	남학생	7.2	53.3	39.5
학교별	중학교	15.0	50.0	35.0
	실업계고	8.9	57.1	33.9
	인문계고	3.9	50.0	46.1
지역별	군지역	10.0	55.0	35.0
	시지역	7.6	51.5	40.9

인권교육이 유익했다는 응답이 60.4%로 유익하지 못했다는 응답 39.5%보다 월등히 많이 나왔다. 성별로는 여학생 60% 남학생 60.5%로 대등하게 나왔으며, 학교별로는 중학교 65% 실업계고 66% 인문계고 53.9%로 인문계고 학생들이 유익했다는 응답이 다소 떨어지며, 지역별로는 군지역이 65% 시지역이 59.3%로 군지역이 유익했다는 응답이 다소 높게 나왔다.



문18) 입학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1회	2-3회	그이상
전체		34.9	31.7	26.1	7.4
성별	여학생	43.9	37.8	12.2	6.1
	남학생	31.7	29.6	31.0	7.8
학교별	중학교	34.0	36.1	25.2	4.8
	실업계고	27.1	20.6	39.3	13.1
	인문계고	37.9	33.4	22.1	6.6
지역별	군지역	19.8	32.7	31.7	15.8
	시지역	38.1	31.5	24.9	5.5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별률에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특히 제12조와 13조에 의하면 전문 상담교사와 책임교사 배치, 폭력 예방교육을 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4.9%나 된다. 교육이 주로 담임교사의 훈화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인문계고 학생들은 37.9%나 폭력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지역별로는 시지역 학생들이 38.1% 폭력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내·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 모든 학교에 대해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18-1) (위 질문 2, 3, 4에 답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받고 난 후 유익했습니까?

		매우 유익했다	조금 유익했다	유익하지 못했다
전체		7.3	56.6	36.1
성별	여학생	5.1	61.5	33.3
	남학생	7.9	55.2	36.9
학교별	중학교	12.9	61.3	25.8
	실업계고	11.5	61.5	26.9
	인문계고	2.7	52.2	45.2
지역별	군지역	14.5	63.2	22.4
	시지역	5.3	54.8	39.9

폭력예방 교육을 받고 난 후 63.9%의 학생들이 유익했다는 응답을 했으나, 36.1%의 학생들이 유익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폭력예방 교육이 해당 분야 전문가에 의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인문계고 학생들은 45.2%나 유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나왔으며 시지역 학생들은 39.9%나 유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나와 이러한 교육이 실적 남기기를 위한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스스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인권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 인간이 성장하였을 때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어렵다. 학교와 사회에 비일비재한 폭력은 결국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지 못한 결과가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교육받은 사람이 훌륭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문19)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전체		8.0	92.0
성별	여학생	14.7	85.3
	남학생	5.6	94.4
학교별	중학교	8.1	91.9
	실업계고	6.5	93.5
	인문계고	8.5	91.5
지역별	군지역	2.9	97.1
	시지역	9.1	90.9

성장기에 또래 아이들로부터 당한 왕따는 정신적인 면에서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자기 존중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다른 왕따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양갓음하고자 하는 심리도 생기게 된다. 공부에 흥미를 잃는 것은 물론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잃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며 심하게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는 것이다.

왕따를 당했다고 대답한 학생이 전체적으로 8%가 되며 아직도 적지 않은 학생들이 왕따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성별로는 남학생 5.6%보다 여학생이 14.7%로 월등히 높게 나왔으며, 지역별로는 시지역이 9.1%로 군지역 2.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문 19) 왕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두 표시해주세요.

		혼자 고민 하고 괴로 워함	주변의 친한사람 과 의논	다른 친구들 과 의논	부모님 과 상의	경찰에 신고	선생님 과 상담	인터넷사 이트에 고민호소	상담전 화이용
전체		69.6	30.4	21.7	13.0	10.9	8.7	4.3	2.2
성 별	여학생	65.2	34.8	30.4	21.7	4.3	13.0	4.3	4.3
	남학생	73.9	26.1	13.0	4.3	17.4	4.3	4.3	.0
학 교 별	중학교	61.5	46.2	30.8	23.1	7.7	15.4	.0	.0
	실업계고	50.0	.0	16.7	16.7	16.7	.0	.0	.0
	인문계고	77.8	29.6	18.5	7.4	11.1	7.4	7.4	3.7
지 역 별	군지역	50.0	.0	.0	50.0	.0	.0	.0	.0
	시지역	70.5	31.8	22.7	11.4	11.4	9.1	4.5	2.3

왕따를 당했을 때 혼자 고민하며 괴로워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69.6%에 달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79.5%로 여학생 65.2%보다 더 많았고, 학교별로는 인문계고 학생들이 77.8%로 가장 많으며 군지역 50.0%보다는 시지역이 70.5%로 월등히 많았다.

혼자 고민한 학생들의 비율을 볼 때 왕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어 자칫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어 왕따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다른 대처 방법으로는 표와 같이 주변의 친한 사람과 친한 친구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와 선생님에게 상담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학교와 교사들의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왕따 문제를 가지고 교사와 상담했다는 응답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은 교사가 학생들과의 관계개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문20) 나는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합계		있다	없다
전체		100.0	624	36.9	63.1
성별	여학생	100.0	165	41.2	58.8
	남학생	100.0	459	35.3	64.7
학교별	중학교	100.0	162	36.4	63.6
	실업계고	100.0	108	25.9	74.1
	인문계고	100.0	354	40.4	59.6
지역별	군지역	100.0	106	31.1	68.9
	시지역	100.0	518	38.0	62.0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6.9%로 상당수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 방법으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 사망원인 중 교통사고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지난 5년간 20세 미만 청소년 자살은 전체 자살자(2005년 자살자 수는 1만4011명) 중에서 13.2%나 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청소년 자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학교 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연구되고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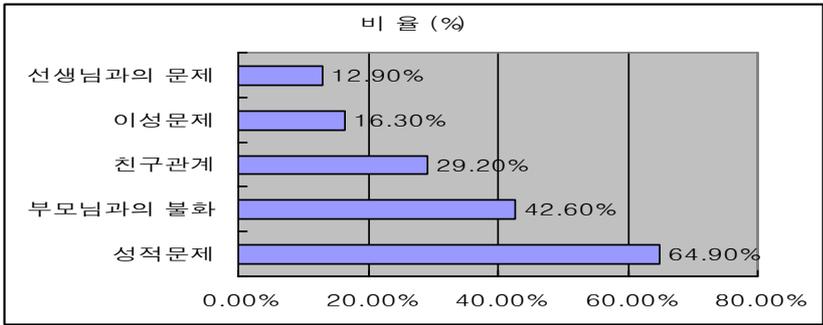
자살 충동을 느낀 비율은 여학생이 41.2%로 남학생 35.3%보다 높고, 인문계고 학생들이 40.4%로 중학교 36.4% 실업계고 25.9%보다도 월등히 높으며 지역별로는 시지역이 38.0%로 군지역 31.1%보다 높다. 이 또한 과도한 성적압박감이 원인이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문21) 어떤 경우에 자살충동을 느꼈는지 모두 표시해 주세요.

		성적문제	이성문제	친구관계	선생님과의 문제	부모님과의 불화
전체		64.9	16.3	29.2	12.9	42.6
성별	여학생	57.6	13.6	50.0	12.1	45.5
	남학생	68.4	17.6	19.1	13.2	41.2
학교별	중학교	72.7	12.7	29.1	16.4	40.0
	실업계고	21.7	17.4	39.1	8.7	52.2
	인문계고	69.4	17.7	27.4	12.1	41.9
지역별	군지역	53.6	28.6	46.4	17.9	53.6
	시지역	66.7	14.4	26.4	12.1	40.8

자살 충동 원인으로는 예상대로 성적문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이 입시와 성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수능이 끝나고 잇따르는 청소년의 자살이 방송에 끊임없이 보도되어도 누구 하나 살인적 입시경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고 말하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살하는 청소년이 나약한 것인지, 이를 외면하는 사회가 문제인지 성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중한 입시 부담을 덜고 자기 존중감과 긍정적 자기 정체성을 열어가는 전인 교육의 공간으로 학교가 거듭나기 위해 총체적인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부모님과의 불화다. 그리고 이성문제 보다 친구관계가 두 배나 많은 비율로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교사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성적문제와 이성문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응답하고 있고, 친구관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월등히 많게 자살 충동을 느낀 것으로 나타난다.



나. 학생인권 의식 관련

문21) 나는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6	4.7	5.4	94.6	32.9	61.8
성별	여학생	.6	5.9	6.5	93.5	46.7	46.7
	남학생	.6	4.3	5.0	95.0	27.8	67.2
학교별	중학교	.6	7.4	8.0	92.0	30.7	61.3
	실업계고	1.8	3.7	5.5	94.5	38.5	56.0
	인문계고	.3	3.9	4.2	95.8	32.1	63.7
지역별	군지역	.9	4.6	5.6	94.4	44.4	50.0
	시지역	.6	4.8	5.3	94.7	30.5	64.2

세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 인권보장의 기본이 되는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5.4%로 낮게 응답을 보이고 있어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

문22)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43.3	42.5	85.8	14.2	9.2	4.9
성 별	여학생	35.3	53.9	89.2	10.8	7.2	3.6
	남학생	46.2	38.4	84.6	15.4	10.0	5.4
학 교 별	중학교	38.5	43.5	82.0	18.0	13.7	4.3
	실업계고	30.3	51.4	81.7	18.3	10.1	8.3
	인문계고	49.4	39.4	88.8	11.2	7.0	4.2
지 역 별	군지역	30.8	51.4	82.2	17.8	10.3	7.5
	시지역	45.9	40.7	86.6	13.4	9.0	4.4

전체 학생들의 85.8%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답하고 있어 높은 자기 결정권과 참여 정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 의식에 걸맞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학교는 물론이고 사회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인권이든 인권의 주체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인권 상황이 개선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현재 학칙의 제정, 학생징계, 학생의견의 표명, 학생자치활동 등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교단위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없다면 학생인권의 실현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문23)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7.0	33.5	40.5	59.5	35.1	24.4
성 별	여학생	9.5	41.1	50.6	49.4	28.6	20.8
	남학생	6.0	30.8	36.9	63.1	37.5	25.6
학 교 별	중학교	11.0	34.4	45.4	54.6	24.5	30.1
	실업계고	8.3	38.9	47.2	52.8	40.7	12.0
	인문계고	4.7	31.6	36.3	63.7	38.2	25.5
지 역 별	군지역	5.6	48.1	53.7	46.3	33.3	13.0
	시지역	7.3	30.5	37.8	62.2	35.5	26.7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40.5%로 나타나 스스로 미숙한 인격체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과반수를 넘는 학생들은 자신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지는 것에 가장 반대하는 집단은 남학생과 인문계고 학생들이고, 군지역 학생들은 53.7%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문24)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7.8	58.2	65.9	34.1	24.1	10.0
성 별	여학생	6.5	60.4	66.9	33.1	27.2	5.9
	남학생	8.2	57.4	65.6	34.4	22.9	11.5
학 교 별	중학교	8.6	53.1	61.7	38.3	25.3	13.0
	실업계고	9.2	60.6	69.7	30.3	24.8	5.5
	인문계고	6.9	59.7	66.7	33.3	23.3	10.0
지 역 별	군지역	9.3	58.3	67.6	32.4	23.1	9.3
	시지역	7.5	58.1	65.6	34.4	24.3	10.1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의 필요성에 대해 65.9%나 스스로가 잘못했을 때는 교육적으로 체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체벌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마 오랫동안 가정과 학교에서 체벌에 노출되어 이미 매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체벌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이러한 인식은 인권과 평화의 감수성을 함양해야 할 청소년 시기에 교육적 장애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는 25번 문항에서 교육적 차원의 두발,복장 규제보다 체벌에 대한 태도가 더 수용적인 것은 얼핏 모순인 것으로 보인다. 즉 매는 맞아도 좋으나 머리는 간섭받지 않고 기르고 싶다는 심리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억압과 통제 속에 그만큼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충실하지 못함을 방증하고 있다.

문25) 학교에서 소지품, 두발, 복장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2.8	21.3	24.2	75.8	39.3	36.5
성 별	여학생	4.1	31.4	35.5	64.5	45.6	18.9
	남학생	2.4	17.7	20.0	80.0	37.1	42.9
학 교 별	중학교	4.3	19.5	23.8	76.2	36.6	39.6
	실업계고	3.7	21.3	25.0	75.0	44.4	30.6
	인문계고	1.9	22.2	24.1	75.9	39.1	36.8
지 역 별	군지역	3.7	25.2	29.0	71.0	39.3	31.8
	시지역	2.7	20.5	23.2	76.8	39.4	37.5

학교에서 소지품, 두발, 복장검사를 하는 것에 대해 75.8%가 부정적인 응답을 보여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표현의 자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지품, 두발, 복장검사에 대해 수용적인 학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으며 시지역보다 군지역이 다소 많게 나타난다.

기성세대라면 누구나 학창시절에 가방속의 물건을 모두 꺼내 책상위에 올려놓고 검사를 받거나 교문 앞에서 머리길이를, 복장 상태를 점검받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것이 학생으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규제라고 생각 할 수도 있었겠으나, 지금의 아이들은 자기 동의 없는 일방적인 학교의 각종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반발감을 갖고 있다. 머리 모양이나 복장이 학생의 인격발전이나 학습에 어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해로 주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최소의 개성표현도 보장받지 못하는 속에서 강요되는 단정함이 과연 긍정적인 교육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문26)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8.1	21.9	30.0	70.0	40.8	29.2
성 별	여학생	8.3	23.7	32.0	68.0	42.6	25.4
	남학생	8.0	21.3	29.3	70.7	40.1	30.6
학 교 별	중학교	6.2	22.8	29.0	71.0	40.7	30.2
	실업계고	8.3	20.2	28.4	71.6	35.8	35.8
	인문계고	8.9	22.0	30.9	69.1	42.3	26.7
지 역 별	군지역	2.8	12.0	14.8	85.2	48.1	37.0
	시지역	9.2	23.9	33.1	66.9	39.3	27.6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란 설문에는 부정적인 대답이 70.0%로 월등히 많다. 그러나 왕따 당해 마땅하다는 의견도 전체적으로 30%나 나왔다. 왕따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은 남·녀 또는 중·고, 계열간 별 차이가 없으나 시,군지역은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지역 학생들보다는 군지역 학생들이 왕따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이 강한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초, 중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형성된 친밀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밀집된 시지역에서 아이들이 서로 간에 느끼는 경쟁의식이나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부족이나 개별화된 성향이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문27)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고칠 것을 요구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23.6	46.7	70.3	29.7	24.2	5.5
성 별	여학생	23.2	51.2	74.4	25.6	20.2	5.4
	남학생	23.7	45.0	68.8	31.3	25.6	5.6
학 교 별	중학교	36.6	42.7	79.3	20.7	15.2	5.5
	실업계고	17.8	50.5	68.2	31.8	24.3	7.5
	인문계고	19.4	47.4	66.8	33.2	28.3	5.0
지 역 별	군지역	8.3	51.9	60.2	39.8	26.9	13.0
	시지역	26.7	45.6	72.3	27.7	23.7	4.0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때 70.3%의 학생들이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응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이념의 지배로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받아들이는데 비교적 익숙하다. 특히 학교에 그러한 문화가 많이 남아 있으나 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많이 달라졌으며 일방적으로 자기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을 아주 싫어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문28)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12.0	50.2	62.2	37.8	30.1	7.8
성 별	여학생	9.5	54.4	63.9	36.1	29.0	7.1
	남학생	13.0	48.6	61.6	38.4	30.5	8.0
학 교 별	중학교	7.9	47.6	55.5	44.5	34.1	10.4
	실업계고	12.8	45.9	58.7	41.3	34.9	6.4
	인문계고	13.6	52.6	66.3	33.7	26.7	7.0
지 역 별	군지역	7.4	46.3	53.7	46.3	37.0	9.3
	시지역	13.0	51.0	63.9	36.1	28.6	7.4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해 62.2%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인문계고 학생들이 66.3%로 그러한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실업계 학생들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이 그리고 군지역 보다 시지역에서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특이한 결과이다. 이 결과 또한 학교에서는 공부 이외에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을 하기 어려운 입시구조가 학생들의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킨 결과라고 판단된다.

문 29)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그렇다	③+④ 전혀 그렇지않다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8.1	34.3	42.3	57.7	39.8	17.9
성 별	여학생	7.7	39.1	46.7	53.3	43.2	10.1
	남학생	8.2	32.5	40.7	59.3	38.6	20.7
학 교 별	중학교	4.9	35.6	40.5	59.5	36.8	22.7
	실업계고	9.2	29.4	38.5	61.5	46.8	14.7
	인문계고	9.1	35.2	44.3	55.7	39.1	16.6
지 역 별	군지역	5.6	28.7	34.3	65.7	46.3	19.4
	시지역	8.6	35.4	44.0	56.0	38.5	17.5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란 질문에 42.3%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해 다소 자기 불신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이러한 경향은 위의 질문 자기 권리 인식에 대한 결과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적중심의 학교생활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못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문항27,28,29,31,32 등의 조사 결과를 볼 때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민교육’을 공교육 과정에서 강화하여 정의, 인권, 평화, 참여 등 실천적 덕목에 대한 올바른 태도 함양을 위해 노력이 필요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문30) 대중매체(TV, 라디오 등)는 청소년에 대해 좋지 않은 면을 많이 보도한다고 생각한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13.7	38.5	52.2	47.8	37.5	10.3
성 별	여학생	11.2	43.8	55.0	45.0	38.5	6.5
	남학생	14.6	36.6	51.2	48.8	37.2	11.6
학 교 별	중학교	12.8	30.5	43.3	56.7	40.2	16.5
	실업계고	12.8	41.3	54.1	45.9	36.7	9.2
	인문계고	14.4	41.3	55.7	44.3	36.6	7.8
지 역 별	군지역	4.6	37.0	41.7	58.3	49.1	9.3
	시지역	15.6	38.8	54.4	45.6	35.2	10.5

대중매체가 청소년에 대해 좋지 않은 면을 많이 보도한다는 데 대해 52.2%가 “그렇다”고 대답해 학생들이 언론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매체가 다루는 청소년 관련 내용들이 주로 탈선한 아이들의 실상이라든지 학교폭력 등 부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한데서 오는 결과이다. 청소년관련 뉴스를 사회적 여파의 고민 없이 너무 선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보도한 사례가 수차례 있어 왔다. 청소년 의회활동, 자발적인 인권운동 등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대중매체에도 있다고 보여진다.

문31)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알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1.9	12.8	14.7	85.3	45.7	39.6
성 별	여학생	.0	13.6	13.6	86.4	52.7	33.7
	남학생	2.6	12.5	15.1	84.9	43.2	41.7
학 교 별	중학교	3.7	11.7	15.3	84.7	42.9	41.7
	실업계고	.9	13.9	14.8	85.2	49.1	36.1
	인문계고	1.4	13.0	14.4	85.6	46.0	39.6
지 역 별	군지역	.9	17.6	18.5	81.5	51.9	29.6
	시지역	2.1	11.8	13.9	86.1	44.5	41.6

청소년 인권운동(두발 자유, 종교 자유 등)이 일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짐에도 85.3%나 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과 여학생,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언론 등에서 이를 거의 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학생들이 중심이 된 인권운동이 미약하게나마 의미 있게 펼쳐지고 있으며 시민운동 성격의 인권활동도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인터넷 동아리나 카페를 시작으로 이야기되던 것이 이제 공개적인 실천활동과 범개정 운동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들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거의 사라질거나 엄청난 개인의 의지가 없으서는 자기의 뜻을 표현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인권운동은 학교 밖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펼쳐지고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문32)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 위원회’나 ‘청소년 의회’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그렇지않다	④ 전혀 그렇지않다
전체		1.1	7.4	8.5	91.5	48.4	43.0
성 별	여학생	.6	6.5	7.1	92.9	50.9	42.0
	남학생	1.3	7.8	9.1	90.9	47.5	43.4
학 교 별	중학교	3.1	6.1	9.2	90.8	41.1	49.7
	실업계고	.9	3.7	4.6	95.4	58.7	36.7
	인문계고	.3	9.2	9.4	90.6	48.6	41.9
지 역 별	군지역	.9	5.6	6.5	93.5	59.3	34.3
	시지역	1.1	7.8	9.0	91.0	46.2	44.8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기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 의회’활동에 대해 91.5%가 전혀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어 청소년 인권운동과 마찬가지로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활동들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참여 의식과 주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발적인 활동들이 언론이나 학교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많은 학생들이 동참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학생자치활동 관련

문33) 새 학년(학기) 학급이 구성되었을 때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의 여러 가지 규칙을 마련하는가?

(예: 학급 내 생활 / 개인별 청소구역 / 급훈 / 소풍 장소 등)

		학생들에게 학급회의 주제를 미리 알리고 교사도 참여해서 함께 마련한다	담임교사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따라오게 한다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여 결정한다	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담임의 판단으로 학급을 운영한다
전체		25.2	21.6	36.3	16.9
성 별	여학생	32.9	18.6	34.8	13.7
	남학생	22.3	22.7	36.9	18.1
학 교 별	중학교	30.7	26.1	28.8	14.4
	실업계고	24.2	18.9	33.7	23.2
	인문계고	23.0	20.3	40.4	16.3
지 역 별	군지역	37.0	17.4	28.3	17.4
	시지역	23.0	22.4	37.8	16.8

학급운영에 있어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하는 비율이 25.2%인 반면 담임교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는 74.8%로 여전히 학급운영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학급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거의 모두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고 보면 이러한 결정 과정이 철저히 학생들의 토론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조차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관련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34) 주 1회 주어진 학급활동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잘 지켜지고 있다	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실시한다	시간은 주어져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전체		20.0	34.6	45.4
성별	여학생	24.4	33.3	42.3
	남학생	18.4	35.1	46.5
학교별	중학교	34.4	29.4	36.3
	실업계고	31.5	33.3	35.2
	인문계고	10.1	37.4	52.5
지역별	군지역	27.4	33.0	39.6
	시지역	18.5	34.9	46.5

학급활동(자치, 적응, 행사활동)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0.0%에 불과해 학급활동 시간 지키기에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5.4%로 많은 학급에서는 자치 활동과 학생 상담, 친교 활동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학생들과, 인문계고, 시지역이 지켜지지 않는 비율이 높다. 이 현상 역시 입시 교육 제도가 주는 대표적인 교육과정 파행 사례이다.

직접적으로 성적, 교과진도와 관련이 없는 시간은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든지 생략하기 일쑤이다. 이러한 관행들은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학생 스스로 갖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행이 굳어져 민주적인 의사수렴 과정이 무시되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반복된다.

문 34-1) (위 질문 2, 3에 답한 경우) 학급활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급활동 시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두 가지만 표시 해 주세요.

		자습시간 으로 활용	보충수업 시간으로 활용	특기적성 교육시간 으로 활용	대청소 시간으로 활용	전체회의 시간으로 활용	생활검열 시간으로 활용	기타
전체		71.8	12.0	17.3	20.7	35.5	5.8	.4
성 별	여학생	68.4	12.0	19.7	26.5	36.8	2.6	.9
	남학생	72.9	12.0	16.5	18.8	35.0	6.8	.3
학 교 별	중학교	61.5	8.3	34.4	27.1	34.4	6.3	1.0
	실업계고	44.8	3.0	31.3	22.4	49.3	6.0	.0
	인문계고	81.0	15.1	8.9	18.4	32.8	5.6	.3
지 역 별	군지역	78.3	14.5	11.6	17.4	31.9	1.4	.0
	시지역	70.7	11.5	18.3	21.3	36.1	6.5	.5

학교생활에서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중요한 경로인 학급활동이 수업을 대체하거나 학교의 필요에 의한 전체 조회시간 또는 대청소 시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을 학교운영의 주체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며 기본적인 학생들의 권리마저도 과열된 입시제도 안에서 무색해지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주일에 1시간 배려된 학생자치를 위한 최소의 시간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자습이나 청소와 같은 활동으로 변형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의 권리의식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건전하게 자기 권리를 표현하고 학습해야 할 교육시간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례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자습시간-전체회의시간-대청소시간-특기적성 교육시간-보충수업시간-생활검열시간-기타 순이다.

문35) 학급회의 때 회의 안건은 대부분 어떤 것인가? 2-3가지만 써 주십시오.

회의 안건의 예

학교의 규정을 지도하는 예

복장 단정 / 두발 단정 / 금연 / 교칙 준수 / 명찰달기 / 오토바이 승차 금지

학급운영을 위한 회의

학급임원 선출 / 스승의 날 행사 / 청소구역과 당번 / 짝 정하기 / 실습 조짜기 / 환경미화 / 학급비 사용처 / 학급에서 지켜야 할 규칙

학교 운영관련 안내

각종 학교행사 알림 / 소풍장소 선정 / 정수기 배치 / 체벌문제 / 잔반 남기지 않기 / 성금 모으기 / 방과 후 활동

학급회의 때 제안되는 안건을 적어 달라는 설문에는 무응답이 가장 많았다. 별다른 학급회의를 하지 않는 이유도 있으며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라 반응도가 떨어진 이유도 있다.

직접 서술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것들을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은 데 학교에 정해진 규칙을 지도해서 지키도록 하는 내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학급에서 결정해야할 크고 작은 문제를 위한 협의이다. 대부분 미리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잘 수행할 수 있을까를 의논하는 정도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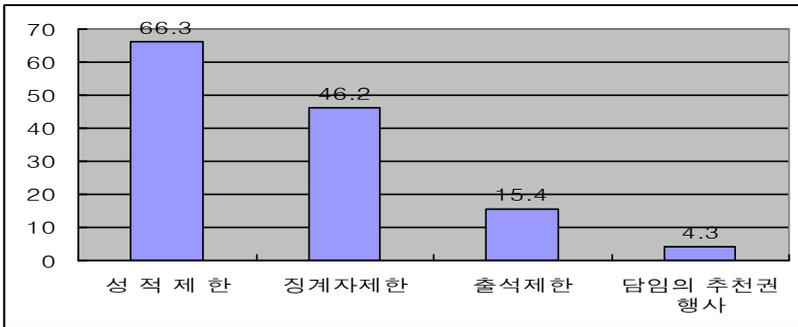
문36) 전교학생회장·부회장 선거에서 출마자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는가? (학년 제한, 징계 중인 자 제외)

		두고있다	두지 않는다	잘모름
전체		38.1	27.0	34.9
성별	여학생	30.9	26.1	43.0
	남학생	40.7	27.3	32.0
학교별	중학교	14.1	39.9	46.0
	실업계고	44.0	15.6	40.4
	인문계고	47.3	24.5	28.2
지역별	군지역	36.2	21.9	41.9
	시지역	38.5	28.0	33.5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 후보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8.1%로 나타나 학생들의 피선거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입후보 자격제한 내용으로 성적 제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특히 인문계 고등학교의 성적제한은 실업계보다 2배 이상 높음)불필요하고도 과도한 제한으로 학교가 학생을 진정한 교육주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자격 제한에 34.0%가 '잘모름' 이라고 답한 것 역시 학생회가 명목만 유지되며 실제 학생들의 관심 밖의 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37) 출마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표시해 주십시오.

		출석제한	성적제한	징계자제한	담임추천권
전체		15.4	66.3	46.2	4.3
성별	여학생	9.3	65.1	44.2	9.3
	남학생	17.0	66.7	46.7	3.0
학교별	중학교	.0	50.0	66.7	.0
	실업계고	26.1	32.6	67.4	4.3
	인문계고	12.8	76.9	39.1	4.5
지역별	군지역	37.1	40.0	60.0	11.4
	시지역	11.0	71.7	43.4	2.9



이 문항과 관련된 학칙 분석의 결과를 보면 적용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품행 단정’을 대부분의 학교에서 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설문결과에서도 볼 수 있는 성적제한 규정이다. 여기에 출석, 징계, 담임추천이 이중으로 학생회 임원 출마 자격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다.

학생들의 자치조직인 학생회를 활성화하려면 학생회 구성에 있어서 법령의 근거가 없는 성적, 품행 등의 사유로 학생회 임원의 입후보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학생회 구성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38)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치루어지고 있는가?

		공정하게 잘 치루어진다	그런대로 공정하게 치루어진다	별로 공정 하지 않게 치루어진다	전혀 공정하지 않게 치루어진다
전체		28.0	60.6	7.4	4.0
성 별	여학생	22.3	66.3	8.4	3.0
	남학생	30.1	58.6	7.0	4.4
학 교 별	중학교	23.9	65.6	7.4	3.1
	실업계고	27.6	58.1	9.5	4.8
	인문계고	30.0	59.1	6.7	4.2
지 역 별	군지역	32.4	54.3	9.5	3.8
	시지역	27.1	61.9	6.9	4.0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진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88.6%고, 공정하게 치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비율이 11.4%로 선거의 공정성 면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도 10% 이상의 학생들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의 대표를 뽑는 학생회 선거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 선거의 전형을 배워나가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루 학생회 선거는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민주시민으로서 선거권을 바르게 행사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공부인 것이다.

문39) 학교 내에 활동 중인(지도교사가 있고 학교에서 인정한) 동아리가 몇 개나 있습니까?

		없다	1-2개	3-4개	5-10개	10개 이상
전체		16.1	30.8	16.4	15.1	21.6
성별	여학생	11.4	24.1	29.5	16.9	18.1
	남학생	17.8	33.2	11.6	14.5	22.9
학교별	중학교	24.1	29.6	23.5	13.0	9.9
	실업계고	31.4	27.6	19.0	15.2	6.7
	인문계고	7.9	32.2	12.4	16.1	31.4
지역별	군지역	33.7	45.2	7.7	8.7	4.8
	시지역	12.6	27.9	18.2	16.4	25.0

학교내 동아리 수에 대한 응답에서 하나도 없거나 한두 개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46.9%, 3개에서 10개까지가 31.5%, 10개 이상이 21.6%로 나타났다. 과반수에 가까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아주 미미하고 3분의 1 정도 되는 학교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조금 활성화 되어있고 겨우 20% 조금 넘는 학교에서만 동아리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어 다양한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쪽은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며 특히 인문계고 학생들이다.

문40) 현재 우리 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	동아리는 있으나 별 활동이 없다	동아리 관련 활동이 전혀 없다
전체		9.3	43.5	26.5	20.7
성별	여학생	6.1	48.5	28.5	17.0
	남학생	10.5	41.6	25.8	22.0
학교별	중학교	6.3	48.4	23.9	21.4
	실업계고	5.0	49.5	15.8	29.7
	인문계고	11.9	39.5	30.8	17.8
지역별	군지역	6.9	49.5	8.9	34.7
	시지역	9.7	42.3	30.0	17.9

학교 내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에는 52.8%가 잘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47.2%가 활동이 잘 되지 못한다고 답해 동아리 활동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20% 이상의 학교에 동아리 활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아이들의 개성과 취향을 살린 다양한 활동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문40-1) 이러한 동아리 활동이 잘 안된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를 두 가지만 표시해 주세요.

		입시교육의 강화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들다	입시교육에 편승한 학교분위기 조성	부모님의 반대	학원이나 과외를 받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	시간과 돈이 낭비되기 때문	활동에 지나친 규제로 인해	구성원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기타
전체		48.1	33.5	5.9	6.7	18.0	30.1	13.8	1.7
성 별	여학생	43.1	33.8	1.5	10.8	20.0	33.8	13.8	6.2
	남학생	50.0	33.3	7.5	5.2	17.2	28.7	13.8	.0
학 교 별	중학교	30.4	23.2	16.1	25.0	30.4	19.6	10.7	.0
	실업계고	25.8	12.9	6.5	3.2	38.7	25.8	38.7	.0
	인문계고	59.2	41.4	2.0	.7	9.2	34.9	9.9	2.6
지 역 별	군지역	42.9	17.9	10.7	3.6	28.6	17.9	21.4	.0
	시지역	48.8	35.5	5.2	7.1	16.6	31.8	12.8	1.9

동아리 활동이 미진한 이유로는 ‘입시교육의 강화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들다’가 4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입시교육에 편승한 학교(면학)분위기 조성”이 33.5%로 나타나 입시위주의 교육이 동아리 활동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활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도 동아리 활동을 위축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문41) (1, 2학년만 답하세요)

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잘 지켜지고 있다	어느 정도 지켜지고있다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전체		24.4	40.6	35.0
성별	여학생	23.2	43.0	33.8
	남학생	25.1	39.1	35.7
학교별	중학교	31.7	53.8	14.4
	실업계고	44.6	41.9	13.5
	인문계고	13.1	33.2	53.8
지역별	군지역	42.4	42.4	15.3
	시지역	21.1	40.3	38.7

문41-1) (위 질문 3, 4 에 답한 경우)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

		학교행사로 활용 한다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등을 한다
전체		67.0	33.0
성별	여학생	66.7	33.3
	남학생	67.2	32.8
학교별	중학교	70.0	30.0
	실업계고	87.5	12.5
	인문계고	64.5	35.5
지역별	군지역	100.0	0
	시지역	64.4	35.6

특별활동 시간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65%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5%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학교행사로 활용한다’가 73%,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등을 한다’가 27%로 나타났으며 특히 군지역 학교에서는 91%가 학교행사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앞의 두 가지 항목 이외 기타 항목을 넣어 직접 기입하도록 했으나 기타에만 단독으로 기입한 반응자는 없었다.

문42) (3학년만 답하세요)

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잘 지켜지고 있다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전체		12.7	32.1	55.3
성별	여학생	10.7	39.3	50.0
	남학생	12.9	31.1	56.0
학교별	중학교	23.3	58.3	18.3
	실업계고	31.3	59.4	9.4
	인문계고	4.1	15.2	80.7
지역별	군지역	6.5	34.8	58.7
	시지역	14.1	31.4	54.5

문42-1) (위 질문 3, 4 에 답한 경우)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

		학교행사로 활용 한다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등을 한다
전체		21.7	78.3
성별	여학생	.0	100.0
	남학생	23.7	76.3
학교별	중학교	40.0	60.0
	실업계고	.0	100.0
	인문계고	20.0	80.0
지역별	군지역	9.1	90.9
	시지역	23.6	76.4

3학년 특별활동 시간 설문에서는 44.7%가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고, 55.3%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1,2학년이 65%가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21% 정도나 떨어지는 것으로 입시에 직면한 3학년에서 특별활동이 더욱 과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활동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로는 ‘학교행사로 활용한다’가 21.7%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등을 한다’가 78.3%로 나타나 3학년에서는 1,2학년보다 특별활동 시간에 수업으로 활용하는 빈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급활동시간과 특별활동시간은 학생들이 힘겨운 학습노동에서 벗어나 그나마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다. 그러나 위 34, 35번 문항에서에서도 확인했듯이 학교는 오직 공부만을 위한 곳이고 그 이외의 학급활동이나 특별활동, 동아리 활동은 서서히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학교교육의 현주소이며 세계 최장 학습노동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서 있는 정확한 위치이다.



문43)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①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4.3	20.9	25.2	74.8	40.0	34.8
성 별	여학생	2.5	24.1	26.6	73.4	43.0	30.4
	남학생	5.0	19.8	24.8	75.3	38.9	36.4
학 교 별	중학교	6.3	24.4	30.7	69.4	32.5	36.9
	실업계고	3.9	20.6	24.5	75.5	44.1	31.4
	인문계고	3.6	19.3	22.9	77.1	42.3	34.8
지 역 별	군지역	5.0	20.8	25.8	74.3	41.6	32.7
	시지역	4.2	20.9	25.1	74.8	39.6	35.2

학교급식과 관련 학생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5.2%고 그렇지 못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74.8%다. 학교 현장에서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음을 입증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먹거리에 상당히 예민하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를 안전하게 제공해야 하며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또한 급식 수혜자인 학생들의 반응과 요구조사를 수시로 하여 반영하는 등 학교 급식이 단지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을 인식해야 한다.

문44) 학교홈페이지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가?

		거의 매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활용한다	일주일에 3-4회 정도 방문하여 활용한다	한달에 3-4회 정도 방문하여 활용한다	1년에 3-4회 정도 방문하여 활용한다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전체		1.3	9.6	29.2	28.9	30.9
성 별	여학생	1.3	13.4	29.3	22.3	33.8
	남학생	1.4	8.2	29.2	31.3	29.9
학 교 별	중학교	.0	5.0	21.4	24.5	49.1
	실업계고	5.0	16.8	17.8	17.8	42.6
	인문계고	.9	9.6	36.4	34.3	18.8
지 역 별	군지역	2.0	8.1	14.1	28.3	47.5
	시지역	1.2	9.9	32.3	29.0	27.6

학교홈페이지 관련 활용도 조사에서 거의 매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겨우 1.3%고 일주일에 3-4회 정도 방문하여 활용하는 경우는 9.6%에 불과해 학교 홈페이지가 학습을 위한 도구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1년에 3-4회 정도나, 전혀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59.8%나 되어 의사소통의 장소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학교 홈페이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아래 참고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칙을 비롯한 각종 규정들이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학생들의 활동과 관련된 동아리 소개나 동아리 회원들끼리의 의사소통 기능이 거의 없으며 이는 학생들의 홈페이지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참고자료 :

경북 일부학교 홈페이지 접근성 및 각종 규정 탑재 여부 조사, 2006년 9월

학교	홈피로그인	학칙탑재 여부	생활규정 탑재 여부	학생회 회칙탑재	동아리 소개	동아리 커뮤니케이션 가능여부
청도 'ㅇ'고	일부내용 로그인	아니오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영천 'ㅇ'중	일부내용 로그인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울릉 'ㅇ'중	허용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상주 'ㅈ' 중·종고	허용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영주 'ㅇ'중	허용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천 'ㄱ'중고	허용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안동 'ㅇ'중	허용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구미 'ㅅ'여중	허용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의성 'ㅇ'공고	허용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군위 'ㄱ'중	허용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김천 'ㄷ'중	허용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예천 'ㄷ'고	허용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상주 'ㄱ'공고	허용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구미 'ㅇ'중	로그인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영주 'ㄷ'고	로그인	예	예	예	예	예
경주 'ㅅ'공고	일부로그인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청도 'ㅈ'여중고	일부로그인	예	예	예	예	예

라. 학생인권 신장 방안 관련

문45)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① 아주 잘 보장되고 있다	② 그런대로 잘 보장되고 있다	①+② 긍정적	③+④ 부정적	③ 미흡한 편이다	④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전체		2.2	18.6	20.8	79.2	51.7	27.5
성 별	여학생	2.4	26.8	29.2	70.8	51.2	19.6
	남학생	2.2	15.6	17.8	82.2	51.9	30.3
학 교 별	중학교	3.0	30.5	33.5	66.4	38.4	28.0
	실업계고	4.7	17.8	22.5	77.5	55.1	22.4
	인문계고	1.1	13.4	14.5	85.5	56.8	28.7
지 역 별	군지역	5.7	27.6	33.3	66.7	42.9	23.8
	시지역	1.5	16.8	18.3	81.7	53.5	28.2

우리나라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에 대한 응답은 20.8%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79.2%가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청소년을 통계의 대상으로 보며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시각과, 사회와 학교가 청소년의 권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답변은 성별로는 여학생이 29.2%로 남학생 17.8%보다 월등히 높게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학교별로는 중학생들이 33.5%로 가장 높게 긍정적인 답을 했다.

문45-1) (위 질문 3, 4 에 답한 경우)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낮은 편이라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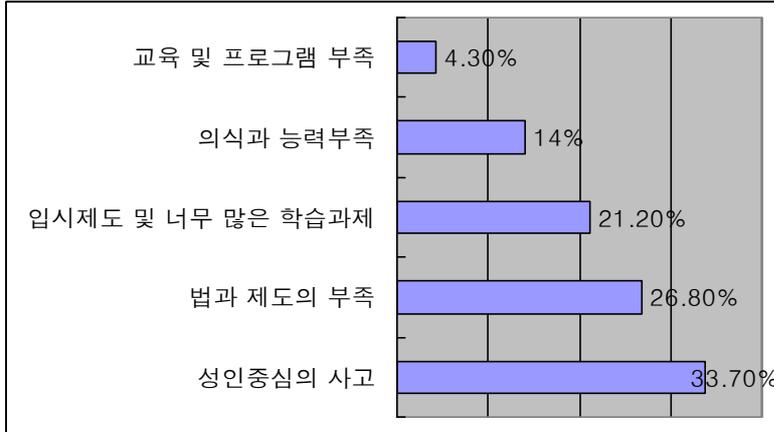
		청소년들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부족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부족	입시제도 및 너무 많은 학습과제	청소년을 부족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의 사고	청소년의 권리행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
전체		14.0	26.8	21.2	33.7	4.3
성 별	여학생	11.6	28.6	24.1	30.4	5.4
	남학생	14.8	26.2	20.2	34.8	4.0
학 교 별	중학교	24.2	30.3	22.2	20.2	3.0
	실업계고	15.6	33.8	6.5	35.1	9.1
	인문계고	10.1	23.7	24.7	38.0	3.5
지 역 별	군지역	15.9	33.3	11.1	38.1	1.6
	시지역	13.8	25.8	22.8	33.0	4.8

청소년의 권리 수준이 낮은 이유로 청소년을 아직 부족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의 사고가 33.7%로 가장 높게 나왔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부족, 입시제도와 과도한 학습과제를 중요 이유들로 보고 있다.

이제 사회는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인식과 규범체계에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가치와 인식의 변화는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성인들이 학생을 보는 사고방식과 경쟁적 입시제도,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학교제도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표현하지 못하고 과거

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

앞으로 발전하는 미래를 이어나갈 학생들이 과거의 인식에 얽매어 있다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문46)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행동 중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번호를 써 주세요.

		선생님들의 거친 말	남학생과 여학생의 역할 구분	핸드폰 사용 금지	잡은 심부름	체벌	외모로 무시하는 것	성적으로 무시하는 것	학생의 고민 진지하게 안 들어 주는 것	이름 부르지 않고 야! 네! 라고 부르는 것	mp3 사용 제한	기타
전체		44.0	11.1	19.9	4.0	31.9	4.2	37.0	14.3	13.1	9.6	.2
성 별	여학생	50.0	2.5	27.8	3.2	25.9	3.2	44.3	15.8	13.3	7.0	.6
	남학생	41.9	14.2	17.1	4.3	34.0	4.5	34.5	13.7	13.1	10.6	.0
학 교 별	중학교	45.6	8.1	26.3	2.5	35.0	5.6	37.5	11.3	11.3	5.0	.0
	실업계고	43.7	17.5	26.2	4.9	38.8	1.0	29.1	16.5	8.7	5.8	.0
	인문계고	43.4	10.6	15.0	4.4	28.3	4.4	39.2	15.0	15.3	13.0	.3
지 역 별	군지역	42.9	17.3	30.6	6.1	23.5	4.1	31.6	11.2	9.2	9.2	.0
	시지역	44.2	9.9	17.9	3.6	33.5	4.2	38.1	14.9	13.9	9.7	.2

*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행동 중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세가지!!

순	바뀌어야 할 선생님의 행동	비 율(%)
1	선생님들의 거친 말	44.0
2	성적으로 무시하는 것	37.0
3	체벌	31.9

경북지역의 학생들은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거친 말에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체벌보다도 비율이 더 높다. 체벌의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부각된 적이 많아 학교에서도 금지시켜 나가고 있는 분위기이나 욕설, 또는 모욕감을 주는 말들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것들이며 체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자주 접하게 된다.

요즘 아이들은 언어폭력에 대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며 특히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거나 모욕당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이러한 아이들의 반응을 반항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체벌의 이유로 삼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것으로는 핸드폰 사용 금지, 학생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는 것, 이름 부르지 않고 야! 너! 라고 부르는 것 등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문47) 좀 더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번호를 적어주세요.

		두발 자유 (염색 포함)	교복 자유	이성 교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교시 교문 앞 선도 폐지	흡연 자유	보충, 자율 학습 폐지	기타
전체		85.7	40.1	28.9	8.2	50.1	6.7	55.8	.7
성 별	여학생	77.4	42.6	38.7	5.8	55.5	2.6	52.3	.6
	남학생	88.5	39.2	25.6	9.0	48.2	8.1	57.0	.7
학 교 별	중학교	90.1	50.9	23.6	16.8	43.5	1.9	46.6	.0
	실업계고	87.9	41.1	24.3	4.7	58.9	17.8	38.3	.9
	인문계고	83.0	34.6	32.8	5.3	50.4	5.6	65.7	.9
지 역 별	군지역	85.7	45.9	35.7	6.1	40.8	10.2	46.9	1.0
	시지역	85.7	38.9	27.6	8.6	51.9	6.1	57.5	.6

* 좀 더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것 세 가지!

순	바뀌어야 될 것	비 율(%)
1	두발자유(염색 포함)	85.7
2	보충, 자율 학습 폐지	55.8
3	등교시 교문 앞 선도 폐지	50.1

두발자유에 대한 아이들의 요구는 상당히 폭발적이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두발자유가 뭐 그리 중요하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요즘 아이들은 몸에 대한 자기 판단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히려 공부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것이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자괴감은 상상외로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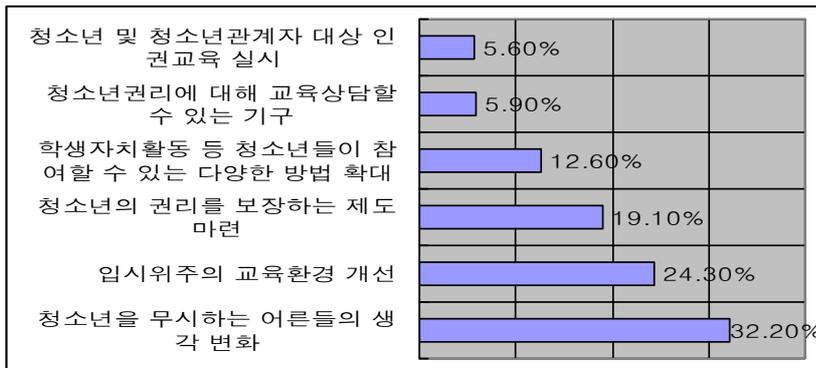
거의 반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보충 및 자율학습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 학습효과도 의문시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또 등교시 교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발이나 복장 불량을 이유로 벌을 서거나 매를 맞는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할 군사문화의 하나인 것이다.

그 밖에 바뀌어야 할 것으로는 교복 자유와 이성교재의 자유 등이 있다. 특히 이성교재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의 요구보다 훨씬 높으며 두발의 경우는 남학생의 요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여학생에게는 머리모양에 자율성을 더 허용하는 반면 남학생에게 두발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자기 신체 결정권에 관련한 남녀학생 가리지 않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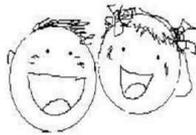
문48) 청소년의 권리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개선	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생각 변화	청소년 권리에 대해 교육상 담할 수 있는 기구	청소년 및 청소년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학생자치 활동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확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	기타
전체		24.3	32.2	5.9	5.6	12.6	19.1	.3
성별	여학생	24.2	33.5	10.6	3.7	10.6	16.8	.6
	남학생	24.3	31.7	4.2	6.3	13.4	19.9	.2
학교별	중학교	12.7	40.0	4.0	4.7	10.7	27.3	.7
	실업계고	6.9	44.6	5.0	8.9	11.9	22.8	.0
	인문계고	34.5	25.1	7.0	5.0	13.7	14.3	.3
지역별	군지역	18.8	33.7	12.9	7.9	13.9	12.9	.0
	시지역	25.4	31.9	4.5	5.1	12.4	20.3	.4



45-1번 문항에서 보았듯이 ‘청소년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성인 중심의 사고’가 청소년의 권리 수준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판단한 것처럼, 청소년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가장 바뀌어야 할 것 역시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생각 변화’라고 응답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청소년을 동등하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성세대의 의식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 외에도 ‘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제도개선’을 중요한 선결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교육환경과 제도 역시 성인들의 요구와 가치가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일방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세를 교육시켜야 할 책무가 성인들에게 있다고는 하나 그것이 어느 한쪽의 요구와 가치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5. 맺음말

학교는 미래가 담겨있는 곳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보다 더 나은 내일을 보장해 주고 그 내일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건강하고 당당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라면 우리의 미래도 그러할 것이며 상처받고 주눅 들어 있는 학생들이 있는 학교라면 우리의 미래 역시 어둡고 찌들린 것이 될 것이다. 학생이 주체로 바로 선 학교라면 그 학생들은 자라서 이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될 것이며, 규제와 억압으로 스스로의 결정권이 없는 학생이라면 그들은 변화하는 사회에 주역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어떤 곳인가? 학생 하나하나를 자세히 관찰하고 배려하기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정숙’, ‘질서’, ‘좌측통행’과 같은 일방적인 규범이 늘 따라다니고, 강제로 애국심을 일깨워야하는 애국조희가 있다. 아이들이라는 이유로 체벌이 묵인되는 곳이며 자신의 옷과 머리모양 조차도 통제당하는 곳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거나 애국가 가사쓰기를 매년 행사로 하는가 하면 등굣길에 복장과 두발검사를 하여 엉덩이를 맞거나 손을 들고 서있기도 해야 하는 곳이다. 학생회와 학급회의는 이미 학생의 것이 아니며, 피선거권조차 제한당하고, 행복하고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곳이 되어있다.

무엇보다 학교는 공부이외에는 할 게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 성적만 중요하고, 성적을 잘 올리기 위한 것만 연구되며,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곳이 된 것이다. 누렇게 뜬 얼굴로 새벽에 나갔다가 새벽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며 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시도하고, 실제로 꽃다운 생명을 놓아버리기도 한다. 학교는 인권의 사각지대로까지 불렸으며, 아이들은 학교에서 느끼는 답답한 심정을 인터넷이나 동아리 모임을 통해 소통하고자 했다.

제소자의 인권, 군대에서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등 그 동안 여러 영역에서의 인권문제가 한 번씩 크고 작게 사회의 문제로 대두 되었으나 학생인권 문제는 이제야 그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다. 상대

적으로 학생들의 인권은 그 주체가 주로 미성년자이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여건과 방법에 많은 제한이 있다. 그리고 아직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에 ‘스스로 판단하는 주체’라기 보다는 ‘알아서 챙겨주어야 할 미숙아’로 미리 규정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 또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를 학교와 사회에 요구하고 나섰을 때 그 요구자체가 아주 불량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금기시되었다. ‘체벌도 아이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단정한 복장과 두발은 학생의 신분을 부각시켜 보호받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도 나중에 질 높은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어른들이 만든 가치와 규범의 정당성을 확인하려 들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며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결정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설문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느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고쳐나가겠다는 의지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특히 인문계)이 더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지품, 두발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도 같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적극적이다. 체벌도 고등학생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문통계를 보면서 참으로 암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제도교육 속에 오래 몸담고 있을수록 아이들의 권리의식은 더 약해지고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느끼며 스스로 체념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과 개성을 키워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은 오히려 호기심 많고 개성 있는 아이들을 무기력하고 획일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이미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설문지 분석만으로 현실을 모두 파악할 수 없고, 모든 문제의 해답도 얻을 수 없지만 아이들이 느끼는 고민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

6. 조사 설문지

학생인권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

학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학생인권사업부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북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인권과 관련된 구체적 실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대안 제시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각 문항에 솔직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5월

<설문지 쓰임 및 작성방법>

1.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및 통계 결과 발표에만 쓸 것입니다.
2. 설문지를 받은 분은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설문지 문항에 V표를 하거나 직접 서술하시면 됩니다.

※ 이 설문 조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경북지부 054) 462-7367

◆ 이 설문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학생인권사업부

※ 다음 설문 문항을 읽고 각 문항에 V표시를 하거나 서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학생	남학생

중학교	실업계고	인문계고

군지역	시지역

하나. 일상생활 관련

1. 학교에서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2. 학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을 차별하고 있다.(남여공학의 경우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3.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말을 자주 하신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4. 학교에서 무시당하거나 소외감을 자주 느낀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5. 우리 학교의 교칙은 학생들의 권리를 잘 보장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6. 교칙이나 학생관련 규정을 만드는데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7. 학교에서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17. 입학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①없다. ②1회 ③2-3회 ④그 이상

(위 질문 ② ③ ④에 답한 경우)

17-1.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난 후 유의했습니까?

- ①매우 유의했다 ②조금 유의했다 ③유익하지 못했다

18. 입학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내·외부의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 ①없다. ②1회 ③2-3회 ④그 이상

(위 질문 ② ③ ④에 답한 경우)

18-1.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받고 난 후 유의했습니까?

- ①많이 유의했다. ②조금 유의했다 ③유익하지 못했다

19.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위 질문 ①에 답한 경우)

19-1. 왕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두 표시해주세요.

- ①혼자 고민하며 괴로워했다
②부모님과 상의했다
③선생님과 상담했다
④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과 고민을 나누었다
⑤자신을 왕따시키지 않은 친구(다른 학반, 다른 학교)에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 했다
⑥청소년 상담전화나 인터넷 상담사이트에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⑦주변의 친한 사람과 의논하였다.
⑧경찰에 신고했다

⑨기타:

20. 나는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 ①있다 ②없다

(위 질문 ①에 답한 경우)

20-1. 어떤 경우에 자살충동을 느꼈는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① 성적문제 ② 이성문제 ③ 친구관계
④ 선생님과의 문제 ⑤ 부모님과의 불화 ⑥ 기타:

들. 학생인권 의식 관련

21. 나는 '유엔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2.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3. 청소년들은 아직 완전한 자립능력과 권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자유권에 제한이 가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4. 학생이 잘못했을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5. 학교에서 소지품, 두발, 복장검사를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전혀 그렇지 않다

26. 어떤 아이들은 왕따 당해 마땅하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27. 나는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분명하게 고칠 것을 요구한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28.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기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29. 청소년들에게 의사결정권과 참여권을 주어도 청소년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30. 대중매체(TV, 라디오 등)는 청소년에 대해 좋지 않은 면을 많이 보도한다고 생각한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31. 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인권운동을 알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32. 나는 청소년의 정책참여를 위한 청소년자치기구인 '청소년위원회'나 '청소년 의회'활동에 대해 알고 있다.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셋. 학생자치활동 관련

33. 새 학년(학기) 학급이 구성되었을 때 학급회의를 통해 학급

의 여러 가지 규칙을 마련하는가? (예: 학급 내 생활 / 개인별 청소구역 / 급훈 / 소풍 장소 등)

- ①학생들에게 학급회의 주제를 미리 알리고 교사도 참여해서 함께 마련한다.
- ②학년(학기)초기에 담임교사가 여러 가지 규칙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따라오게 한다.
- ③특별한 규칙을 의논하지는 않고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참고(수렴)하여 결정한다.
- ④특별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마다 담임의 판단으로 학급을 운영한다.
- ⑥기타 :

34. 주 1회 주어진 학급활동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 ①잘 지켜지고 있다.
- ②특별한 안건이 있을 때만 실시한다.
- ③시간은 주어지나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위 질문 ② ③에 답한 경우)

34-1. 학급활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학급활동 시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사례를 두 가지만 표시 해 주세요.

- ①자습시간으로 활용 ②보충수업 시간으로 활용 ③특기적성 교육시간으로 활용
- ④대청소시간으로 활용 ⑤전체 조회시간으로 활용 ⑥생활검열 시간으로 활용
- ⑦기타:

35. 학급회의 때 회의 안건은 대부분 어떤 것인가? 2-3 가지만 써 주십시오.

- ①
- ②
- ③

(위 질문 ③ ④에 답한 경우)

40-1. 이러한 동아리 활동이 잘 안된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를 두가지만 표시해 주세요.

- ①입시교육(보충수업, 야간자습, 강화 등)의 강화로 인해 시간을 내기 힘들다.
- ②입시교육에 편승한 학교분위기(동아리 활동을 하면 학업, 진학에 지장) 조성
- ③부모님의 반대
- ④학원이나 과외를 받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
- ⑤시간과 돈이 낭비되기 때문
- ⑥활동에 지나친 규제(모든 활동에 반드시 신고, 지도교사 의무화)로 인해
- ⑦구성원들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 ⑧기타 :

***1, 2학년만 답하세요-**

41. 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 ①잘 지켜지고 있다. ②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③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1, 2학년만 답하세요-**

(위 질문 ③ ④에 답한 경우)

41-1.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

- ①학교 행사(대청소·생활검열·적성, 심리검사·신체검사 등)로 활용한다.
- ②보충수업·특기적성교육 등을 한다.
- ③기타 :

***3학년만 답하세요-**

42. 주 1회 주어진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고 있는가?

- ①잘 지켜지고 있다. ②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③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3학년만 답하세요-**

(위 질문 ③ ④에 답한 경우)

42-1. 특별활동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로 어떻게 활용되는가?

- ①학교 행사(대청소·생활검열·적성, 심리검사·신체검사 등)로 활용한다.
②보충수업 혹은 특기적성교육을 한다.
③기타 :

43.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가?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44. 학교홈페이지의 활용도는 어느 정도인가?

- ①거의 매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활용한다.
②일주일에 3-4회 정도 방문하여 활용한다.
③한달에 3-4회 정도 방문하여 활용한다.
④1년에 3-4회 정도 방문하여 활용한다.
⑤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넷. 학생인권 신장 방안 관련

45.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권리가 보장되는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①청소년의 권리가 아주 잘 보장되고 있다 ②그런대로 잘 보장되고 있다
③미흡한 편이다 ④아주 낮은 수준이다.

(위 질문 ③ ④에 답한 경우)

45-1. 청소년의 권리수준이 낮은 편이라면 하다면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청소년들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의식과 능력부족
- ② 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법과 제도의 부족
- ③ 입시제도 및 너무 많은 학습과제
- ④ 청소년을 부족하고 통제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인중심의 사고
- ⑤ 청소년의 권리행사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및 프로그램 부족
- ⑥ 기타:

46.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행동 중 가장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번호를 써 주세요.(기타를 선택할 경우 내용을 직접 써 주세요)

순서	1	2	3
번호			

- ① 선생님들의 거친 말
- ② 남학생과 여학생의 역할구분
- ③ 핸드폰 사용금지
- ④ 잦은 심부름
- ⑤ 체벌
- ⑥ 외모로 무시하는 것
- ⑦ 성적으로 무시하는 것
- ⑧ 학생의 고민 진지하게 안 들어 주는 것
- ⑨ 이름 부르지 않고 야! 너! 라고 부르는 것
- ⑩ mp3 사용제한
- ⑪ 기타:

47. 좀 더 자유로운 학교생활을 위해 가장 먼저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번호를 적어주세요.(기타를 선택할 경우 내용을 직접 써 주세요)

순서	1	2	3
번호			

- ① 두발자유(염색포함)
- ② 교복자유
- ③ 이성교재의 자유
- ④ 종교의 자유
- ⑤ 등교시 교문앞 선도 폐지
- ⑥ 흡연자유
- ⑦ 보충, 자율학습 폐지
- ⑧ 기타:

48. 청소년의 권리향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입시위주의 교육환경 개선
- ②어리다고 청소년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생각 변화
- ③청소년권리에 대해 교육상담할 수 있는 기구
- ④청소년 및 청소년관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⑤학생자치활동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확대
- ⑥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
- ⑦기타:

감사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Ⅲ. 학생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및 권고문

=== 차 례 ===

-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NEIS관련)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

제목: 교육부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1. 학교생활규정(안) 전반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은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학생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함.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

는 학교규율이 청소년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동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징계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4) 학생이 학교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를 개정하여야 할 것임.

- 교육기본법(제5조)은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서는 학교운영위에서 교육주체의 한 축인 학생 참여를 배제하고 있어 비민주적이며, 이는 교육기본법 제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생회에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의

정신과 일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검토하여야 함.

(5) 학교생활규정은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규정하여야 함.

(6) 예시안의 '목적'에서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한다고 한 것과 달리 전반적 내용은 학생만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그 내용에 교사 및 학부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야 함.

(7) 학교생활규정을 '...를 할 수 있다', '...을 보장 받는다'는 등의 권리중심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존중되어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사실을 교육공동체(학생,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가 분명히 알게 하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학생들은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 교사와의 수직적 관계, 권위주의적 학습 분위기, 그들과 관계된 일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율성 부재 등 열악한 학습 환경에 처해 있음.

- 교육기본법 제12조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예시안에서처럼 학생을 단지 효과적으로 교육시켜야 할 피교육자로, 나아가 규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하기보다 권리의 주체로 대하며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8)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와 교사의 의무, 통합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9) 각급 학교 및 도·농간 학교에 따라 생활규정을 달리 하여야 함에도 예시안의 규정이 거의 비슷함. 특히, 초등학교생활규정과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은 각 학교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임.

2. 학교생활규정(안) 구체적 조항에 대하여

(1) 학교생활규정의 목적

<예시안>

·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 학생들이 21세기 주역으로서 학교·지역사회·국가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함(§2)

<평가>

- 유엔아동권리협약(제29조)에서는 교육의 목적을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과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하게 하는데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제2조)은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함을 교육이념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예시안은 어린이·청소년의 이익과 생존·발달을 보장하기보다 사회질서유지에 목적이 있는 듯한 인상을 줌. 위의 법이념에 맞고 오늘의 학생인권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2) 생활지도협의회

<예시안>

· 생활지도협의회는 본교 전직원으로 구성(§4②)
· 생활지도협의회는 직원조회 시 병행(§7)
· 구성은 교감, 생활지도부장, 해당 학년부장
(학부모대표 : 학교선택사항)으로 함(§8)

<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하게 한 점과 동 예시안 제2조(목적) 규정에서 그 적용범위를 학생·학부모·교직원으로 하고 있는 점 및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가정·사회에서 종합

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하여, 생활선도협의회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의 참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

(3) 폭력예방 수립계획

<예시안>

- 생활지도협의회는 학교폭력 예방계획을 수립, 별도의 '학교폭력추방위원회' 심의 후 실행(§9)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치료·가해학생의 치료기관 지정

<평가>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나 부모의 의무로써 아동에 대한 폭행·폭언을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 알게 하고 자신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문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것임.

- 따라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교사·학부모·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폭력예방 교육과정을 규정하여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기 바람.

(4) 여가활동

<예시안>

-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함(§18의1)
-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며, 이용규칙 준수(§18의 2)
- 특별실 담당학생 두어 관리 및 청소(§18의3)
- 생활지도위원 등은 교내 비행발생 지역 수시순찰(§18의4)
- 타인의 휴식 방해하는 소란 활동 자제(§18의5)

<평가>

- 아동권리협약 제31조는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을 규정하고 있음. 어린이는 놀이를 통해 심신과 정서를 성장·발달시키며, 사회성을 몸에 익히게 되는 것임.

- 법적 근거로는 헌법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등에서 찾을 수 있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등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

- 아동의 발달 및 행복추구를 위하여 휴식, 여가, 놀 권리 및 문화권과 관련된 조항을 학교생활규정에 담아 학교생활이 즐겁고 보람 있는 삶의 현상이 되길 바랍.

- 여가활동과 관련, 학교 측의 의무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의사표현의 자유를 구가하여 능력 배양의 기회가 되는 교지와 학교신문 발행 등에 대한 학교 및 교사의 지원을 명시하는 조항이 추가되어야 함.

(5) 교내생활규정 중 용의사항

<예시안>

- 가방은 자유로운 것으로 하되 학생신분에 맞는 것으로(§19①5)
- 무스 등은 두발의 형태 변형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19①8)

<평가>

- ‘학생신분에 맞는’이라는 규정은 표현이 모호하고 그 판단을 학교당국이 독점하게 되는 것임. 또한, 두발상태 불량으로 적시한 무스·젤 등을 사용하여 ‘두발형태의 변형을 가하지 않은 범위 내’라는 규정은 자의적인 판단의 여지를 넓힘으로써 자의적 별점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은 자신의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 학교 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용의사항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예시하여야 할 것임.

(6) 교외생활규정 중 보호자의 의무

<예시안>.

- 학생의 올바른 교외생활 지도, 심각한 이상발생 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중·고등예시안§31)
- 학부모·유관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비행 방지를 선도(초등예시안§45)

<평가>

- 학생을 잠재적 문제아 또는 비행아로 인식하는 경향이 보임. 따라서 '비행방지를 선도'라는 규정보다는 '건강한 교외생활을 하도록 유도'라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초등학교예시안의 보호자 책임

<예시안>

- 학생의 교·내외생활로 타인이나 학교에 손해발생 시 보호자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 및 도의적 사죄(§49)

<평가>

- 동 규정은 민법 제755조에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임.

- 특히 법과 각종 규정은 윤리·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최소한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항목을 추가하기 보다 학생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할 것을 규정함이 바람직함.

(8) 정보통신

<예시안>

-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 사용, 타인의 인권 존중, 건전정보 제공, 음란·폭력물 접속 금지, 타인 정보보호, 지적 재산권 존중, 정해진 이용시간 준수 등(§31)
- 교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제한, 교내 첨단기자재 관리 철저(§32)

<평가>

- 사이버공간에서의 예절중시 및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필요한 규정이지만, 학생에게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어떻게 실현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규정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임.

(9) 학생회

<예시안>

-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음(§35)
- 학생회의 의결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 발생(§38)

<평가>

- 학생회회원 역시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시할 수 없음’의 규정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다운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자율성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하는 바,

- ‘(학생회의 의결사항은)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10) 금지활동

<예시안>

- | |
|---|
| ·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 가입금지, 정치에 관한 활동 금지(§35) |
|---|

<평가>

- 인간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가안보, 공공질서와 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제한되어서는 안됨. 또한, 학생인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할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안되는 것임.

- 정치란 효과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학생의 정치활동 제한은 기본권의 부당한 제한임과 동시에 학교가 하여야할 중요한 교육을 방기하는 것임. 학생은 발달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민주적 방식을 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에게 인권·평화·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 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야 함.

- 현행법에서 참정권은 만 20세 이상인 성인에게 있는 권리이고, 정당법은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일단 정당원이 될 수 없음. 따라서 학교생활규정에 그런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선거연령을 낮추려는 사회적 분위기도 고려하여 동규정은 삭제하여야 할 것임.

(11) 효력정지

<예시안>

· 학생회 회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효력이 정지(§37)

<평가>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996년 한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최초보고서를 심사하면서 “한국 정부가 명분으로 삼아 온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은 기본적 자유의 향유를 가로막아 왔다”고 지적한 바 있음.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12) 학생체벌

<예시안>

- 교사의 감정에 치우친 체벌 금지, 체벌기준에 따라야 함
- 교사는 체벌 시 학생에게 사유 인지시켜야 함
- 체벌은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를 동반하여 실시
- 체벌 전 교사의 학생 건강상태 점검의무, 이상 있을 때 연기가능
- 체벌 도구는 지름 1.5cm내외, 길이 60cm이하 나무, 직선형
- 체벌부위는 둔부. 여학생은 대퇴부로 제한
-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 해당 학생에 상해 금지
- 해당 학생은 대체벌 요구 가능, 해당 교사는 학교장 허가 얻어 보호자 내교토록 하여 학생지도문제 협의(§54)

<평가>

-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징계) 제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 7항은 “학교의 장은 ...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교육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음. 법률상 체벌권한은 학교교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에게 있는 것임.

- 대법원은 체벌을 형법상의 정당행위라는 관점에서,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체벌의 목적·정도·방법·부위를 제시함. 정당한 목적은 훈육·수업진행·교육상 필요·훈계 등을 예를 들었고, 정당한 체벌 정도와 방법은 사회통념상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객관성을 지닌 정도와 방법이라고 했으며, 정당한 체벌 부위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하지 않을 안전한 신체부위를 말한다고 정의함.

- 그러나,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한 치열한 찬반양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는 체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차별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학교에서의 징계는 타 학생에 대한 제재효과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주어져야 함.

-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하여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거의 대개가 체벌 때문에 생긴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함.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므로 금지되어야 하며, 교육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따라서,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을 개정하여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람.

- 또한, 교육벌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인 것으로 충분하며, 교육벌에 관한 내용은 학교실정을 고려하되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참여하여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여야 함. 따라서 동 예시안에서 규정한 체벌조항은 삭제하여야 함.

(13) 현장실습 준수사항

<예시안>

· 현장실습 중 기업체에 입힌 물적 손실에 대해서 보호자가 배상책임을 져야하고,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규정.
(실업고 예시안 §30)

<평가>

- 위 규정은 기업체와의 계약서 등에 규정해야 할 내용이며, 학교생활규정으로 적절한 것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할 것임. 학생에게 현장실습 중 물적 손해에 대한 책임규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교사 및 학교당국에게 현장실습대상에 대한 철저한 정보수집·분석을 할 것과 실습 중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실업고등학교생활규정(안)이 중·고등학교생활규정(안)과 내용이 같고, 다만 위 조항만 달리 규정한 것은 실업교육이 주변부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방증임. 실업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알맞게 규정하여야 할 것임.

- 실업고 학생들은 고학력사회 노동경시의 풍조 속에 소외되는 경향이 많으며, 학교를 통해 생존·발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직업교육은 개인의 삶에 있어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실업고등학교에서도 학생은 그에게 주어진 권리를 향유하면서 성장·발달해야 함.

- 특히 실업고에서는 교사와 학생과의 진지한 상담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여야 함.

- 또한, 정보화 사회에 발맞추어 실업고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교육동기를 일깨우고, 희망을 갖고 학습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함.

(14) 징계의 방법

<예시안>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함. (§82)

<평가>

- 징계의 방법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사회봉사하도록 명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원봉사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징계의 방식은 징계대상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타인에 대한 배려, 공공생활에서의 소양 교육 등으로 전환해야 할 것임.

(15) 개정방법

<예시안>

- 학생회 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 사항(§48)
 - 회칙제정 및 개정, 조직 및 편성, 예산·결산·감사,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생회 회칙 개정은 대의원 또는 집행위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 심의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49)
-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교원 발의, 생활지도협의회에서 일정 수 교원 찬성으로 개정,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회의 심의를 얻어야 함(§92)

<평가>

- 학교생활규정 개정시 학생회의 심의를 얻도록 하였으나, 학생회 관련 규정에는 이 사항이 누락되는 등 비체계적임.

- 생활지도협의회는 지도기관이 되어 일상적인 지도·지원을 해야 하고, 학생회활동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대표가 참여해야 할 것임.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특히 학생이 자신들에게 미칠 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견존중의 원칙을 충족시키고, 교사 및

학부모의 의견도 존중하여, 교육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각 구성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각 학교현실에 적합하고 실현가능한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3. 교육부 예시안의 평가기준

(1) 유엔아동권리협약

가. 내용

①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 아동권리협약은 전문, 제3부,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됨. 전문은 유엔헌장, 세계인권 선언, 아동권리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의 국제문서에서 표명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 등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재확인하면서, 아동은 그들 국가와 부모 혹은 국제사회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

② 제1부(제1조 내지 제42조)는 아동의 권리와 체약국의 아동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2부(제42조 내지 45조)는 협약의 국제적 실시조치로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부(제46조 내지 제54조)는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2) 평가원칙

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① 아동최선의이익, ② 생존·발달, ③ 차별금지, ④ 아동의견존중 원칙 및 각 권리보장 여부

① 아동권리협약 제3조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그 활동이 어떤 기관에 의해 행해지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 이는 주로 아동의 이익과 부모들의 사생활의 이익 또는 국가당국의 편의 등과 충돌할 때 적용될 수 있음. 최선의 이익이 불확정개념이기는 하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

② 동 협약 제6조는 모든 아동은 생명권을 가지며, 당사국

은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할 것을 규정. 이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성격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는 것임.

③ 동 협약 제2조에서 국가는 어떤 종류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하며,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 차별금지원칙을 선언함.

④ 동 협약 제12조에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 이는 아동의견존중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 아동의 자기결정권과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결정을 함에 있어 아동자신의 참여를 의미하는 것임.

○ 헌법의 어린이·청소년 권리관련 조항 및 기타 어린이·청소년관련법

2002. 9. 9

제 목 : 학생두발 제한 관련 제도개선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1. 두발 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각급 학교에서의 두발제한과 단속이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

1.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수 있도록 할 것

1. 두발 관련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1.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조치를 강구할 것을각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배경

1. 강제이발 실시를 비롯해 일부 중. 고등학교에서 학생 두발에 대한제한과 단속이 강화되면서 학생 두발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관련 진정이 접수되었다.

2. 학생 두발제한 및 단속으로 인한 문제는 중.고등학교 일반의 관행과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두발의 강제단속을 지양하고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두발제한 규정을 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두발과 관련한 학생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정책검토를 진행하였다.

II. 판단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이 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따라서 두발제한으로 인한 학생의 인권침해 소지 여부를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제2항 기본권 제한의 원칙, 교육기본법 제12조 교육과정에서의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등의 국내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보장, 제16조 사생활 보호, 제27조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제28조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는 학교규율 등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다.

III. 판단

1. 현황

가. 대부분의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두발길이와 모양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그 제한기준도 일정하지 않다.

나.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2005. 6. 14. 두발관련 자료 및 의견)에 의하면 2005. 5. 11. 현재 전체학교의 92.56%와 91.10%에 해당하는 2,761개의 중학교와 1,924개의 고등학교가 학생의 두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32개의 중학교와 44개의 고등학교에서 기계나 가위로 학생의 두발을 자른 사례가 발생하였다.

지난 6월 위원회가 두 개의 피진정 고등학교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조사대상 65명 중 24명과 63명 중 42명이 두발을 강제로 잘렸거나 다른 학생이 잘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다. 이러한 결과는 두발 자율화 및 합리적 규제 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별다른 개선 없이 두발제한이 획일적이고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학생의 두발자유가 기본권인지 여부

가. 인간이 두발을 어떤 상태로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개성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자 타인에게 위해를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섭받음이 없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것으로 학생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의 향유자이자 권리의 주체이므로, 두발자유를 기본적 권리의 내용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사생활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할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제27조는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있다.

나. 한편,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이익으로 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관계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해당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다. 우리 위원회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와 관련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에 대하여 2002년 9월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은 자신이 생활양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학교당국이 학교 수업의 선행요건으로서 단정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학생들 스스로 개성을 표현하면서도 학생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3. 학생두발 제한의 한계

가. 두발자유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만 함을 인정하더라도, 학교라는 자치공동체 안에서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를 일정 정도 제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만, 두발의 자유가 기본적 권리이고 그 제한이 예외적인 이상 두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본질적 내용 또한 침해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당사자 간에 합의된 규정과 절차에 근거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태나 행위만을 규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두발제한이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당사자인 학생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된 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목적이 통제의 편의성이 아닌 청소년의 보호와 인격형성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규제 시 강제 이발과 같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규제의 정도 또한 최소한의 선에서 이루어지

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4. 제도개선 방안

가. 학생두발 관련 제도와 관행을 학생인권 보호에 합치되는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여부와 정도에 관해서 학생들에게 일차적인 결정권을 부여하고 학생이 교사, 학부모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최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와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나. 이와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는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런 점에 비추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자유화 여부 및 규제의 범위와 지도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라. 그러나 각급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도나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선학교에서는 이러한 지도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협의절차가 요식화, 형식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실시한 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학교생활규정이 개정 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한 경우와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이 학생회 대표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각각 전체 답변 학생 중 40% 이상이었고,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두발관련 학칙이나 학교생활 규정의 제·개정 시 학생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이다.

마. 한편, 일반적으로 학생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내용의 합리성 및 기본권 보호원칙에의 부합성 등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 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워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바.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8조는 당사국이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사. 특별히 강제이발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므로 더이상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해당 학교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와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1. 학생의 두발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하며,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두발제한 규정을 근거로 학생들의 두발을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자르는 것은 신체의 자유 및 인격권에 대한 침해이다.

2. 학생의 두발에 대한 제한은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의 실현을 방해하는 상태나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과 절차는 학생들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합리적 과정과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이러한 점에 비추어 현행의 학생 두발제한 관련 제도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인적 자원부나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감독 또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제 목 :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주 문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정보인권의 충분한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제23조의3은 학생의 정보보호 원칙을 선언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학생정보를 정보주체와보호자 등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해야 할 것이다.

1.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3 제1항의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중 ‘운영’의 내용과 방법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교육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한 정보내용에 대하여는 그 책임주체인 학교장이 아닌 자의 접근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25조 제2항 및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 제2항은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 관리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과 보건 관련 자료의 관리와 운영의 책임주체가 학교의 장이고, 그 데이터가 학교 밖으로 유출될 수 없다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위원회의 NEIS관련 권고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1.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25조 제2항 및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 제2항은 학교생활기록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료가 작성,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급 학교에서 정보주체 및 그 보호자 등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보완되어야 하며, 이 때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6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료가 정보주체 및 그 보호자 등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25조 제3항의 학생선발에 이용하도록 상급 학교에 제공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 제4항의 상급학교에 제공된 신체검사 기록은 정보제공의 목적이 달성된 후 적정기간 내에 폐기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계속 보유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할 경우에 한해 그 구체적인 기간과 목적 등이 명시되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1.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4 ‘보안대책’의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1.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6 및 제60조의7의 금지규정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도록 한다.

1.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8과 관련하여 전산자료를 제공, 이용 또는 보유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정기적으로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 유

I. 검토배경

1.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 9. 7. 교육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학생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교보건법의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조회하였다.

2. 한편, 위원회는 2003. 3. NEIS관련 정책개선 권고를 한 바 있고, 교육 기본법중개정법률안 등은 이를 반영하고 있어 학생의 정보인권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검토를 진행하였다.

II. 검토기준

1.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설립목적으로 하며, 이 때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따라서 각 개정법률안의 정보인권 침해 가능성 여부를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원칙,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의 국내법과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제1항의 사생활 보호 조항, UN의 전자화된 개인정보와 관련된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OECD의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국제인권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하였다.

III. 판단

1. 학생정보 보호의 원칙선언

교육기본법개정법률안 제23조의3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범형식상학생정보의 보호가 원칙이고 그에 대한 제한이 예외적임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본 조항은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학생정보의 보호원칙을 선언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외적인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되는 학교생활기록 및 신체검사 기록의 책임주체 명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3 제1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25조 제2항과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 제2항은 각각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과 신체검사 기록을 위의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들은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책임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시도교육감에게, 이에 따른 정보의 작성·관리의 책임을 학교장의 책임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은 그 의미가 포괄적이어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된 정보의 임의적인 열람과 이용 등의 접근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될 우려도 있으므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학교생활기록은 인적사항, 학적사항과 출결상황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신체검사기록은 인적사항, 체격검사와 체력검사 등 건강지도 및 건강상담의 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정보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미 NEIS관련 권고를 통하여 이와 같은 정보가 학교의 밖으로 집적, 유출, 이용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입진학과 관련한 교무/학사, 입진학 및 보건 3개 영역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반대하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3 제1항의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을 교육정보가 아닌 교육정보시스템만의 운영이라는 점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그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육정보의 책임주체가 아닌 자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25조 제2항과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 제2항은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해 작성된 정보내용에 대한 ‘관리’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접근권이 학교장에게만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 정보의 집적과 이용에 대한 위원회의 NEIS관련 권고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3. 학생개인정보의 집적·이용에 대한 고지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25조 제2항과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 제2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 및 보건기록을 작성·관리하는 바, 헌법 제17조에 근거하는 자기정보관리통제

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교육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작성·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각급 학교에서 정보주체 및 그 보호자 등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6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료가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정보주체와 그 부모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지되어야 할 것이다.

4. 학교생활기록 및 신체검사 기록의 폐기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25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도록 제공할 것을,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 제4항은 학교의 장이 학생 신체검사기록을 고등학교까지의 상급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들은 상급학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규정하고 있으나 제공된 정보의 폐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학교생활기록과 신체검사기록 등은 개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교과학습 발달상황이나 신체적 발달상황까지 포함된 것으로 그 제공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난 후 해당기관이 그 정보를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가 우려

된다.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보호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타인의 침해나 사생활 공개로부터의 보호는 물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정보는 계속적, 포괄적, 무제한적으로 집적될 수 없다.

학생의 선발과 학생에 대한 건강지도와 상담이라는 정보제공의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를 보유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상급 학교는 제공받은 정보를 일정기간 내에 폐기해야 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25조 제3항과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 제7조의2 제4항에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폐기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며, 정보를 계속 보유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할 경우에 한해 구체적인 기간과 목적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5. 정보시스템의 보안대책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4는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처리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보안대책을 강구할 것을 교육인적자 원부장관과 시.도교육감, 학교의 장 등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보안대책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선언적 조항에 그칠 우려가 있다.

본 법률안에 의해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 관리되는 정보의 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보안대책은 필요불가결한 것이며 면밀하고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OECD가이드라인 제11항은 분실 및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변경 또는

공개와 같은 위협에 대비한 적절한 보안유지 장치 강구를, UN가이드라인 제7항은 정보에의 무단 접근, 정보의 사기적 오용 등으로부터의 예방조치 마련을 규정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7도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에게 멸실, 분실, 도난, 유출 또는 훼손으로부터의 안전조치 마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 등에 비추어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상에 있어 강구되어야 할 보안대책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6. 처벌조항의 미비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6 제1항은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구축한 학교생활기록부 및 신체검사에 관한 자료를 정보주체와 그 부모 및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은 법률규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60조의7 제2항은 전산자료의 관리자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유목적 외의 목적을 위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제3항은 전산자료의 처리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등 직무상 학생전산자료를 알게 된 자의 내용누설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주체 등의 사전동의 없는 정보제공과 본래 목적 이외의 정보이용, 정보내용의 누설 등의 금지는 헌법 제17조에서 비롯되는 개인의 자기정보 통제권이나 OECD가이드라인의 수집된 개인데이터의 이용과 제공에 관한 원칙 등에 비추어 강제규정으로 마련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 벌칙 규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선언적 조항으로 그칠 우려가 크다. 이런 이유로 UN 가이드라인은 제8항에서 각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감독 및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이행하는 국내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개인구제조치와 함께 형사상 또는 기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조항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처벌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7. 전산자료 제공·이용이나 보유 등에 대한 정기적 지도 감독의 필요성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제60조의8은 전산자료를 제공·이용 또는 보유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의 구축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과 지침은 물론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대해서는 법집행자의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적용대상자가 교육시기와 횟수 등에 대한 그 구체적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기본권의 보호를 위하여 준수되어야 할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윤리의식의 확립, 관계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화일별 처리절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례 및 그 결과 등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전산자료를 제공·이용 또는 보유하는 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각종 보안시스템과 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조항은 전산자료 제공·이용이나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VI.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 및 학교보건법중개정법률안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0. 11.

제목;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05.7.18.발의, 의안번호 2263)은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및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에 반할 수 있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5조 및 제31조에도 부합하지 못하므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I. 의견표명 배경

2005. 8. 26. 국회 정무위원회는 한나라당 김재경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열린우리당 이근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02, 2403)은 가정의 책임 강화와 청소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인권보장이나 제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의안번호226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부분 국가의 규제로 인한 권리제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II. 판단기준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규제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여부에 대해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Child, 이하 ‘아동권리협약’) 제31조를 주요 판단기준으로 검토하였다.

III. 판단

1. 청소년의 게임물 이용 제한을 위한 규제 필요성 제기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 중 특히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여러 조사

에서는 청소년들이 학교나학원 수업 이외에도 이러한 게임에 치중함으로써 수면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 손실과 학교 및 가족관계에서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과도한 게임 이용으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 사회성 상실, 폭력성 유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더 나아가 2004년 경찰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과 관련한 사이버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게임산업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고려 없이 양적으로만 확대되었고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에 대해 학교나 부모에 의한 자율적인 규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그 해결방안으로서 우선 청소년들의 학습과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야간시간대에 청소년층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 이용을 차단하고자 국가가 게임 제공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인터넷 관련 규제의 한계와 청소년 보호에서의 국가 역할

정보사회의 대표적 매체인 인터넷은 초국가적인 쌍방향성과 익명성으로 인해 기존 매체들과 달리 그 내용의 규제와 제한 방식 등에 한계가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층은 다른 어느 공간에서보다 능동적 존재로서 새로운 문화공간을 형성하며 이를 일상생활의 일부로까지 인식한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행동방식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일방적인 통제 위주의 제약은 자칫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 보다는 권리 제한의 성격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의 성장과 사회적응을 위해 신체적.정신적인 면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나, 여기에는 청소년의 성숙도 등에 따른 개별적인 고려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가정의 자율성과 교육이 우선 존중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인터넷의 특성과 청소년층의 인터넷 활용방식(혹은 문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청소년 보호 역할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자율적인 주체로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가족의 올바른 교육과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적이며 기술적인 노력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개정안의 게임물 제공 제한의 내용

규제 대상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이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임’) 제2조 제3호의 게임물이며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하여 PC를 매개로 인터넷이나 통신망을 통해 복수의 이용자가 서버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온라인게임’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되는 게임물 내용은 포괄적으로 “게임물”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음비게임 제20조 및 제21조는 등급분류를 통해 그 내용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것은 이미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은 제2조, 제17조 등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대상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시간대에 게임 이용자가 청소년일 경우 그 연령에 따라 게임 제공자가 접속을 차단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나 제한대상 연령층과 시간대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또한 처벌 대상은 온라인게임의 제작·배급·유통업자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비게임 제32조에서 이미 PC방과 같은 유통업자는 심야에 청소년 출입을 금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정 등에서 개인 P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4. 개정안의 문제점

가. 청소년 보호수단으로서 과잉금지 원칙 등 위반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명백한 유해환경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 및 이용 등을 넓게 제한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음비게임 등을 통해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지나친 온라인게임 사용은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할지라도 대

상 게임물의 내용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고 음비게임에 의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게임물인 점에서 그 위험성을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유해환경과 동일한 맥락에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온라인게임 이용에 대해 덜 제한적인 규제방법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이미 관련 법령을 통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물을 규제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지 못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개정안은 그 수단의 적정성이나 피해의 최소성 면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의 진정한 휴식을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 환경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를 게임이용의 제한이라는 통제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보장의 취지에도 부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의 위반

행정부에 입법을 위임할 경우 우리 헌법 제75조는 그 위임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범죄의 구성요건은 법률에서 처벌대상인 행위가 예측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 또한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헌재 1991. 7. 8. 91헌가4, 1997. 9. 25. 96헌가16 등)의 일관된 입장이다. 개정안은 게임 제공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형벌의 필수적인 구성요건인 게임물 제공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시간대와 연령층을 법률에 특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임이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온라인게임 제공 사업자에 대한 차별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게임물 중 아케이드게임물의 경우 음비게임법에 의해 야간시간대에 게임장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제공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이는 일정 시간대에 게임 이용 장소를 유해환경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 개정안은 가정 등에서 청소년이 개인 PC를 통해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여러 게임물 중 유독 온라인게임의 제공만을 규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합리적

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게임 이용에서 온라인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온라인게임의 속성상 지나친 게임 이용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게임 제공업자(또는 게임사업자)를 통한 제한이 다른 게임물에 비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점 등에서 규제의 근거를 찾을 수는 있겠으나,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목적에서 볼 때 이용 환경이나 지나친 이용 가능성 등에서 다른 게임물인 PC게임이나 콘솔게임 등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특정 게임물 제공자에 대한 차별로서 헌법 제11조 평등권 보장에 반할 수 있다.

라.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따른 개정안의 문제

청소년보호법 제19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 방송시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중과 방송의 침투적 특성과 규제 대상이 청소년유해 매체물이란 점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정안과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성이 없는 내용에 대하여 더욱이 방송과 달리 정보이용자가 일정한 노력을 들여야 접근이 가능한 매체인 인터넷에서 국가가 일률적으로 접근을 규제한다면 결국 청소년의 알권리 등 헌법 제21조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더구나 인터넷의 특성상 개정안은 규제 방법에서도 한계를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게임 제공자가 청소년만을 선별하여 접속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연령 또는 신원 확인방식이 요구되나 현재 비실명으로 접속이 많은 인터넷상의 현실에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성인 명의를 도용하는 등

탈법이 확대될 우려까지 있다. 또한 개정안의 의도와 달리 야간시간대에 온라인게임을 사용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수면이 아닌 인터넷상의 또 다른 몰입대상을 찾는다면 결국 규제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IV. 결론

청소년의 지나친 온라인게임 이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개정안은 게임 제공자를 규제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고자 하나, 그 내용에 있어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제75조와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 반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있다. 나아가 인터넷 특성과 청소년의 교육환경 및 인터넷 문화 등을 고려해 볼 때도 국가의 일률적인 규제를 입법화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온라인게임 이용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반드시 요구된다면 게임 산업계 스스로의 기술적 대안 및 합리적 규제의 마련, 가정과 학교의 감시,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및 입법적 지원 등 적절한 상호보완적 조치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도 개정안과 같은 의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5. 10. 24.

제목: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4. 8. 3. 의견을 요청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아 래

1. 개정안 제20조의2의 세부정보등록제도와 관련하여,

가. 세부정보등록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관과 결정 시기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제1항의 세부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제1항의 세부정보등록제도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세부정보등록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에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세부정보등록 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등록여부를 심사.의결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그 의결 내용에 구속되는 중립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권한에 관한 규정

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제3항의 최초 세부정보등록은 세부정보등록 대상자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제3항, 제5항의 세부정보등록기간은 세부정보등록 대상자가 최초 세부정보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 세부정보등록 대상자가 등록한 세부정보는 세부정보등록 기간이 종료된 때에 말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제7항의 지방경찰청 및 인터넷을 통한 제공제도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세부정보등록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에게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정안 제20조의2의 세부정보제공제도는 그 도입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청소년과 그 가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가해자의 세부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3. 개정안 제20조의3의 벌칙과 관련하여,

가. 제1항 중 세부정보등록대상자가 세부정보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벌칙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세부정보등록과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자가 직무

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통상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위반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정안 제21조는 범죄의 경중에 대한 차이, 제한되는 직업과 범죄와의 관련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략)

2005. 02. 28.

제목 :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내용관련
직권 수정 권고

주 문

.초.중.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아 래

가. 교육부가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개정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내용이 과거 어떤 교육과정의 교과서보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려고 한점, 그리고 교육부 자체적으로 교과서 질관리를 위하여 민주시민 교육, 인성교육, 인권존중교육, 보건교육, 성교육 등을 포함한 국가. 사회적 요구사항을 자체 개발한 분석기준에 근거하여 매년 분석하고 있음은 높이 평가할만함.

나. 그러나,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학생들의 인권존중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교과서 내용을 수정협의할 것을 권고함.

(1)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나 집단의 이익과 공공질서를 강조하여, 권리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그 해결방안을 질서존중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는 바, 이는 학생들 스스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임. 이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및 6학년 도덕과,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도덕과의 내용에 일부 드러나 있는바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2)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이하 B 규약)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장애, 성, 인종, 출생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 2학년 기술.가정, 고등학교

1학년 사회, 도덕, 체육, 미술 등의 교과서의 일부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3) B 규약 제6조 내지 제8조에 의거, 고등학교 영어교과서에 학생들로 하여금 생명권과 잔혹한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및 노예상태에 있지 않을 권리 등에 위배되는 의식을 가지게 할 내용이 있어 이를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함.

다. 삽화나 예화에 있어 사회적 편견 등을 고착시키는 등 인권에 반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지적되었는바, 이도 수정.보완하여야 함.

(1) 여성 및 특정직업 비하의 예화와 삽화를 제시한 고등학교 사회과의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하면 국내 총생산은 줄어든다'는 예문은 적절한 내용으로 대체되어야 함.

(2)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의 '선생님의 은혜' 예화는 적절한 것으로 대체되어야 함.

(3) 본문의 내용과 관련 없이 삽화를 게재함으로써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특정집단에 대해 집단이기주의로 오해하도록 한 중학교 2학년 도덕과의 삽화는 적절한 것으로 대체되어야 함.

(4) 중학교 과학 교과서에 다수의 사진자료에 특정 상품명이나 소비자 권리 중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삭제되어야 함.

(중략)

IV. 교과서 내용 분석 기준

1. 국제인권규약 및 헌법의 기본권 조항

가. 내용

(1) 우리나라가 1990년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B규약)은 전문, 6부, 총 53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이와 동시에 비준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A규약)은 전문, 5부, 총 31조로 구성됨. A, B규약의 전문은 국제연합 헌장, 세계인권선언에 제시된 인간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며, 국가는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의무를 개인은 동 규약에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음.

(2) 헌법 기본권 조항 제10조 내지 제37조의 구체적인 기본권 내용은 상기 두개의 국제인권규약의 내용과 상당부분 합치함.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국가의 보장의무를 천명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국민의 모든 권리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음.

나. 평가원칙

(1) B규약에서 규정한 ①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②생명권, ③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④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⑤사생활의 자유, ⑥거주 이전의 자유, ⑦학문과 예술의 자유, ⑧표현의 자유, ⑨정치적 권리, ⑩청구권적 권리, ⑪경제적 자유, ⑫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A규약에서 규정한 ①노동권, ②사회보장 수급권, ③인간다운 생활권, ④교육권, ⑤문화적 권리, ⑥환경권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3) 헌법의 기본권 조항 제10조 내지 37조,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헌법 제124조의 정신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4) 교과서의 인권에 반하는 내용분석은 인권분석기준에 비추어 교

과서 내용 기술이 상기 열거한 인권내용을 명백히 위배하는 반인권적인 것과, 서술 자체에서는 반인권적인 오류가 드러나지 않지만,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한 쪽의 사실이나 가치가 두드러져 그 대척점에 있는 다른 사실이나 가치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인권과 관련하여 왜곡된 가치체계를 갖게 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으로 분류 분석하였는바, 본 의결문에서는 반인권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수정 협의를 권고함.

2002. 10. 28.

IV. 법에 나타난 학생 인권 관련 내용

1. 헌법 [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불가침의 개인의 기본적 인권	제10조	
2	평등권 성 종교 신분 차별 금지, 특권 금지	제11조	
3	신체의 자유 - 체포, 구속, 압수, 수색, 심문, 처벌, 보안처분 금지, - 고문, 불리한 진술 강요 받지 않음 - 변호인의 조력 받을 권리 - 구속적부심 청구 권리	제12조	
4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 금지, 연좌제 금지	제13조	
5	거주 이전의 자유	제14조	
6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제15조 제16조	
7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제17조	
8	통신의 비밀	제18조	
9	양심의 자유	제19조	
10	종교의 자유	제20조	
11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제21조	
12	학문 예술의 자유	제22조	
13	재산권	제23조	
14	선거권, 공무담임권	제24조 제25조	
15	청원권, 재판청구권	제26조 제27조	
16	보상청구권, 배상청구권, 범죄피해 청구권	제28조 제29조 제30조	
17	교육받을 권리 의무 무상교육 권리	제31조	
18	근로의 권리 여자와 연소자 특별 보호	제32조 제33조	
19	인간다운 생활 권리 청소년 복지 향상	제34조	
20	환경권	제35조	
21	혼인과 가족, 보건	제36조	
22	헌법에 열거 안된 권리(無名權), 권리 제한의 한계	제37조	

2.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05.11.8 법률 7685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제3조	
2	교육의 기회 균등	제4조	
3	학생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제5조	법령에 의 거
4	정치적 파당적 교육 금지, 종교 교육 제한	제6조	
5	의무교육	제8조	
6	학교 교육의 공공성, 창의성 인성 전인적 교육	제9조	
7	학생의 인권 존중, 교육 내용 방법에서 인격 존중	제12조	
8	부모 등 보호자의 의무	제13조	
9	교원의 의무	제14조	
10	남녀 평등 교육	제17조	
11	특수교육, 영재교육, 직업교육	제18조 제19조 제20조	
12	학생 정보의 보호 원칙	제23조 의 3	
13	학생의 건강 및 복지	제27조	
14	학비 보조 및 장학	제28조	

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701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학교의 종류	제2조	학생의 범위 관련
2	학교 규칙(학칙) 제정 및 인가	제8조	
3	의무 교육, 취학 의무	제12조 ~ 제15조	
4	의무교육 교육비 보조	제16조	
5	학생 자치 활동의 권장 및 보호	제17조	
6	학생 징계시 유의점 퇴학의 제한, 학생 등 의견 진술	제18조	

7	전문 상담 교사 배치	제 19조 의 2	상담 받을 권리
8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습 부진아 교육	제 27조 제 28조	능력에 따른 교육
9	학교의 다양한 형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산업체 특별학급,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 통합교육,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제 41조 ~ 제 60조 의 3	학생의 범위 관련

4. 청소년 기본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9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 고
1	청소년의 지위 및 육성의 이념 -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함 - 보나 나은 삶을 누림 -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 국가 사회에 필요한 건전한 민주 시민	제 2조 의 ①	
2	청소년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 - 청소년의 참여보장 -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제 2조 의 ②	
3	청소년 관련 용어의 정의 청소년, 청소년 육성,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청소년 시설,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단체	제 3조	
4	청소년 육성의 우선성	제 4조	
5	청소년의 권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자기 발전 추구, 정신적 신체적 건강,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청소년의 책임 자기 능력 개발, 건전한 가치관, 가정 사회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제 5조	

6	가정의 책임 유해 매체물로부터 보호, 무관심, 방치, 억압, 폭력으로 인한 가출 비행의 방지	제6조	
7	사회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7조	
8	청소년 시설,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육성 기구 등	제19조 ~ 제27조	
9	청소년 단체 및 지원 기구	제28조 ~ 제47조	
10	청소년활동 및 복지 등 청소년활동의 지원,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청소년복지의 향상, 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 예방, 청소년유익환경의 조성, 청소년유해환경의 규제	제47조 ~ 제52조	
11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우선 배려	제49조의②	
12	청소년육성 기금의 사용처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청소년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등	제55조의①	기금을 지원 받을 권리

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3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청소년 보호의 의미	제1조	
2	청소년 보호 관련 용어의 정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청소년 유해 약물, 청소년 유해 물건, 청소년 유해 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청소년 폭력	제2조	
3	청소년 보호 위한 가정의 역할과 책임	제3조	

4	청소년 보호 위한 사회, 국가 등의 책임	제4조 제5조	
5	유해 매체물의 기준	제10조	
6	방송 및 광고의 제한	제19조 제20조	
7	<p>청소년 유해 행위의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接客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주로 다류(다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행위 	제26조 의 2,3	유해 행위로 부터 보호 받을 권리
8	청소년 보호센터의 기능	제33조 의 2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9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 고
1	특별지원청소년의 의미 조화로운 성장과 정산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여건이	제2조	

	미비하여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2	청소년의 인권 보장 - 인종,종교,성,연령,학력,신체조건 등에 의해 차별 받지 않을 권리 -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제3조	
3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4조	
4	청소년의 우대권 국가 등이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 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이용료의 면제 및 할인	제6조	
5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	제8조 제9조 제11조	
6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2조	
7	청소년 쉼터 설치 운영, 교육적 선도의 실시	제14조 제15조 제16조	

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9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청소년 성보호의 의미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 성적 착취·학대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	제1조	
2	청소년 성보호의 의무자 국가, 사회 등	제4조 1,2,3	
3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 행위,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제5 ~ 10조	
4	범죄 대상 청소년 및 가해 청소년의 선도 보호	제13조 ~ 제19조	

5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제20조 ~ 제22조	
---	----------------	-------------------	--

8.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의 의미 - 피해 학생의 보호 - 가해 학생의 선도 교육 -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간의 분쟁 조정 - 학생 인권 보호, 건전한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	제1조	
2	국가 및 자치 단체의 의무	제4조 ~ 제8조	
3	교육감의 의무	제9조	
4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제10조 제11조	
5	전문 상담교사 및 책임교사 배치, 폭력 예방교육	제12조 제13조	
6	피해 학생의 보호	제14조	
7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제15조	
8	분쟁 조정 및 학교장의 의무, 신고의무	제16조 ~ 제18조	
9	비밀 누설의 금지	제19조	

9. 청소년 활동 진흥법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41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청소년 활동 관련 용어의 정의	제2조	

2	청소년 활동의 보장 및 지원	제5조 ~ 제9조	
3	청소년 활동 시설	제10조 제11조	
4	청소년 수련 활동의 지원	제34조 ~ 제36조	
5	청소년 교류 활동의 지원	제53조 ~ 제57조	
6	청소년 문화 활동의 지원 전통문화 계승, 청소년 축제, 동아리 활동, 자원 봉사 활동	제60조 ~ 제65조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4.28 법률 제7952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가정 폭력 등의 의미	제2조	
2	국가등의 의무	제4조	
3	가정 폭력 예방 교육, 아동의 취학 지원	제4조 의3,4	
4	보호시설의 업무	제8조	
5	피해자 의사의 존중	제9조	

11.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별법
[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법의 목적 :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	제1조	

2	폭력 사건에 관한 비밀 엄수 의무	제18조	
3	보호 처분의 종류	제40조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91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 고
1	법의 목적 건강한 출생,행복과 안전위한 복지 증진	제1조	
2	용어의 정의 아동, 아동학대, 가정 위탁 등	제2조	아동: 18세 미만
3	차별의 금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 안정된 가정환경, 행복한 성장	제3조	
4	아동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	제4조 ~ 제13조	
5	아동 복지시설의 종류 및 활동 내용	제16조	
6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	제29조	

1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55호]

번호	권리 관련 내용	조 항	비고
1	인권의 중요성 모든 개인의 불가침의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현	제1조	
2	용어의 의미 인권, 평등권 침해, 성희롱, 장애	제2조	
3	인권위원회의 지위 및 업무	제3조 제19조 ~ 27조	

V. 대안을 위하여 1

입시와 청소년 건강권

우옥영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교육연구회장/수락중 교사)

1. 들어가며

청소년들의 입시경쟁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의 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되어온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초·중·고생 전반에 사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의 대부분이 거의 온 하루를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야 하고, 널리 그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문제와 학교폭력·흡연·자살 등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는 핵가족화와 이혼 증가, 사이버매체의 발달과 초고속 정보화, 경제적 양극화와 소비문화 확대 등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와 맞물리며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이에 대해, 슬하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수능이나 본고사나 하는 입시 방식에 대한 논란을 반복하기 보다는, 아이들의 삶의 주기와 욕구를 존중하는 가운데, 건강하게 재능의 탐색과 발전을 도모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2. 입시와 청소년의 삶

(1) 입시공부와 일그러진 기본 생활주기

▶ ‘새벽 등교’ 및 ‘한밤중 귀가’¹⁴⁾

- 새벽 6시 30분~7시30분부터 '0교시 수업' 실시, 11시 이후까지 야간 자율학습 실시
- 하루 평균 학교에 머무는 시간(학원 제외)이 10시간 56분, 고3 : 12시간 34분, 고2 : 10시간 14분, 고1 : 9시간 59분
- 이에 더하여 학원 수강을 받고 있는 학생 40.4%

▶ 수면 부족¹⁵⁾

- 고교생 평균 수면시간 6시간, 고3 학생은 평균 5시간 27분
- 아침에 부모님이 2~3회 깨워야 일어남 42.7%, 꼬집고 때리고 해야 겨우 일어남 7.8%

(※ 참고)

- 수면학자들의 권장사항 : 적당한 수면 시간으로 초등학생 8~9시간, 중고생 8시간
- 수면 부족은 위궤양(수면 중 인체조직 손상치유 물질 분비 340배), 정서장애, 기억력감퇴, 면역력 저하, 비만과 성인병 등 유발(수면 비용 증가)

▶ 불규칙한 식사¹⁶⁾

- 아침식사를 전혀 안하는 고등학생 25.1%, 4명 중 1명 정도가 식사를 하지 않음
- 식사 소요시간은 10~20분 정도, 학원에 가는 경우 저녁식사 시간은 강의와 강의사이 쉬는 시간 10분
- 식사 장소는 주로 편의점이나 분식집, 기타 패스트 푸드점

(※ 참고)

- 장시간 긴장 상태, 운동 없이 앉아 있기, 섬유소 부족 등 영양 균형이 부족한 식사, 불규칙한 식습관 등은 위장의 균형을 깨고 정상

14) 2001. 3. 14. 전교조 보건위, 0교시 실태조사 자료, 2001년 실태조사, 수도권·대도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56여 개 중 44개 학교(78.5%)가 26개 학교(46.4%)가 밤10시-11시 이후까지 자율학습 및 수업 실시

15) 2001. 9. 전교조보건위, 학생건강 실태조사

16) 위와 동일

적인 '장 운동'에 지장을 초래함.

(2) 억눌리는 욕구와 발달

▶ 가장 큰 고민- 성적

- 초·중·고 할 것 없이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성적

※ 3,311명 초등학교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¹⁷⁾, 가장 큰 고민거리 : '공부 및 성적' 71%, '이성문제'(12%), '친구문제'(11%), '부모님과 의 갈등'(7%) 등.

※ 중·고생의 가장 큰 고민 : 성적 74.8%, 진로(8.8%), 돈(5.0%), 이성(3.8%), 외모(2.1%), 가족(1.7%), 친구(1.6%) 등

▶ 시험(공부) 공부와 스트레스

- 시험기간에 나타나는 증상 : 불안·짜증 61.2%, 소화불량 37.8%, 두통 35.4%, 복통(설사) 16.3%, 불면증 10.6%, 변비 8.3%, 입병 8.3%, 열 8.2%, 생리 불순 4.3%

- 스트레스 해소 방식 : 잠 32.8%, 친구들과 어울림(27.4%), 영화·TV·비디오·음악듣기(23.1%), 게임(19.5%), 그냥 참기(18.2%),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내기(14.4%), 음식 많이 먹기(13.0%), 술 담배(9.8%), 운동(8.3%), 기타(5.4%)

(※ 참고)

- 요통 : 82.9%(늘 : 28.8%, 몇 개월째 : 15.2%, 오래 공부하는 날만 : 38.9%)

- 눈의 피로나 통증 : 89.6%(자주 : 38.0% + 가끔 : 51.7%), 10.4%(전혀 : 2.1% + 별로 : 8.3%)

▶ 생명보다 무거운 입시(성적) 중압감

- 15~24세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2위¹⁸⁾

17)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트 닷컴(www.nate.com)

18) 전체 인구의 경우 10만 명당 사망원인에서 자살(24.0명)이 암(131.8명), 뇌혈관질환(75.5명), 심장질환(35.6명), 당뇨병(25.0명)에 이어 5위.

- 초·중·고생 전체는 자살을 생각해 봤으나 실제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42.9%), “자살하고 싶다(2.1%),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다(1.4%),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1.4%)고 하였고, 중3과 고1은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다(2.4%),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2.3%)고 답변



고 하였고, 중3과 고1은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다(2.4%),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2.3%)고 답변

- 초·중·고학생의 자살 동기를 묻는 질문에 1위(19.4%)가 성적 때문¹⁹⁾이라고 답변

(3) 폭력의 일상화, 아이들의 탈출구는?

▶ 입시교육, 또 하나의 ‘폭력’

- 대학을 위해 현재의 모든 삶을 희생하도록 교육
- 자신(인간)의 몸과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need) 부정을 정당화, 나 자신에게 부터 존중이 아닌 폭력을 일상화하도록 교육
- 이는 이후 삶의 현장-기업·학교-에서 반복·재생산됨. 자신과 타인의 기본요구를 부정하고 강요와 억압 등 폭력에 대한 내성, 허용성을 높여서, 폭력적인 구조나 제도의 유지 강화에 기여하게 됨.

▶ 국영수 입시, 성적지상주의의 탈출구는 어디?

- 국영수 성적으로 한줄 세우기식 교육은 ‘서열 문화’를 유지, 강화함.
- 왜곡된 우월감과 열등감, 차별, 분노와 좌절 초래.

19) ‘05,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 실태조사, 1위 성적 때문에(19.4%), 2위 부모님께 야단을 맞아서(13.2%), 3위 가정형편이나 가족 관계 때문에(12.4%), 4위 친구 관계 때문에(11.5%), 5위 인터넷에서 자살에 대해 접하고 호기심(1.9%)때문

- 다양한 호기심과 욕구의 억압, 창의력과 탐구력, 개성의 말살
- 가족, 친구, 사회적 관계의 축소, 생활 기술 등 발달과제 성취에 장애
- 흡연(2003 고교생 흡연율 세계 최고) 음주 등 약물증가, 인터넷 혹은 성적 도피, 성폭력, 학교폭력 등 증가 : 자존감, 자신감 회복의 욕구를 약물로 회피하거나, 새로이 서열화된 권위체계(일진회, 폭력조직)의 형성을 통해 폭력적으로 충족 도모

(※ 참고)

- 뒤의 입시교육의 현황 참고
- 청소년 건강문제 중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우울 등 일부 통계

구분	실 태	출 처
학 교 폭 력 경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대도시, 중소도시 초중고 2117명 중, 학교가기가 무섭고 겁이 난 적이 있다 18.3%, · 친구·선배들이 때리거나 놀리는 게 무서워서 35.5%, · 성적 21.9%, 선생님 15.3%, 기타 20.9% - 전국 140개 초중고생(21,067명) 조사결과 · 남학생 폭력피해 경험 9.7%, 여학생 4.6% · 신체폭력 3.3%, 욕설·폭언 1.9%, 위협·협박 1.4%, 금품갈취 0.8% · 사용된 도구 : 손발 13.0%, 몽둥이 0.5%, 칼 등 흉기 0.3% · 장소 : 교실 47.9%, 건물 뒤 24.7%, 화장실 9.6%, 복도 8.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 연구회, 전교조 보건위원회 실태조사(2005.3) - 청소년보호 위원회 (2003)
인 터 넷 관 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 초중고 1500명 대상 - 나는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다 : 초등학생 7.6%, 중학생 13.1%, 고등학생 13.1% 	한국통신문화재단(2004)
우 울 증 과 자 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천시 중고생 2203명 무작위 추출 정신건강 실태조사 ▶ 중고생 3명 중 1명 우울 증상, 이 중 20%는 정신적 치료 필요 - 4명 중 1명은 최근 2주 동안 자살 충동을 느낌 - 실제 자살을 시도함(남학생 3.3%, 여학생 7.3%)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조맹제 교수팀 (1999)

3. 행복한 삶의 운동, 건강권은 모색으로 새로운 출발을!

(1) UN의 어린이 청소년 권리 조약

- UN의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UN은 지난2002년 한국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입시교육이 어린이·청소년의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우리의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중략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중략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1조, 우리에게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참고)

- 교육기본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2) 건강권, 행복한 삶의 운동이 되는 교육을!

① 건강권, 기본 생활주기 존중부터

- 모든 것에 우선하여 먹고, 자고, 쉬어야 할 기본적인 생활주기와 권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적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확보
- 아동·청소년의 수면권, 휴식권 보장을 위해 밤 10시~아침 8시 사이에 일체의 학교수업과 학원 등에서의 사교육 제한
- 아동·청소년의 식사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와 학원에서 청소

년의 저녁식사 시간의 의무화(최소 1시간 이상 확보), 학생들이 자주 찾는 각 식당에 청소년을 위한 건강 메뉴 설치

- 학교·학원에서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소(작은) 프로그램(시력 운동, 자연 돌아보기, 칫솔질, 긴장 풀고 웃기, 허리 돌리기 등) 보급, 운동(헬스기구 등) 및 보건시설(hot pack, 기본응급처치 도구, 영양 공간 등) 확충, 접근성 확보
- 휴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능한 공간부터 확대 - 교내 외 벤치, 멋스러운 차양, 화장실을 아늑한 공간으로 개선 등

② 청소년의 포괄적 건강권(정신, 정서, 사회적), 재능과 개성의 존중으로

▶ 청소년을 존중하는 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구조화

- 청소년의 요구와 견해가 억압되지 않고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나아가 대안을 위한 논의와 실천을 활성화하도록 이끌어내야 함
- 이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학생회 법제화, 다양한 학생단체 결성 지원이 요구됨
- 교사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육부(청), 지방자치단체, 국회, 국무총리와 대통령 등에 학생회, 학생단체 대표와의 협의회 법제화, 회의자료와 집행계획, 평가서의 공개 의무화
- 학교의 권위주의적 교장제도 개선 및 학교자치구조 확보와 함께 추진하여 실효성 확보

▶ 획일적 교육과정의 개정

- 재능의 탐색과 발전, 삶의 기술을 가르치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교육과정 개정
- 국영수 등 주지과목 축소, 심화 학습과 선택과목 확대로 경쟁력 확보, 보건, 역사교육 등 사회적 요구가 있는 교과는 집중 이수제 도입, 예체능은 향유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함.
- 강의와 교과위주의 타율적 교육과정운영에서 폭넓은 체험과 주도

적 탐구로 운영

▶ 대학입시와 초중고 교육의 분리

- 교육은 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29조처럼, 교육 그 자체를 위해서 존재해야 함
- 초중고 교육이 더 이상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 본고사 등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분리
- 이를 위해 줄 세우기 평가인 획일적인 백점 만점 평가 방식 폐지, 교사별 평가제 도입으로 다양화. 평가 방식은 학생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함

▶ 서열화가 아닌 21세기의 긍정적 경쟁력을!

- 국영수 위주의 획일화된 경쟁을 탈피, 적자생존이 아닌 윈-윈(Win-Win)의 전략으로 가야 함.
-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며, 재능과 적성에 맞게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초중고 교육은 발달과 재능 탐색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며, 고등교육에서 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함.
- 조기 직업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 전문대-산업체와 연계, 학벌 없이도 해당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교육부는 물론,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사회적인 분위기 혁신과 제도개선을 위한 운동을 함께 해야 할 것임

■ 연간 수업 일수(국제비교) 및 수업 시수

	12세(중1)	13세(중2)	14세(중3)
오스트리아	1105	1073	1073

벨기에	987	987	자료 없음
덴마크	840	900	930
핀란드	730	912	912
프랑스	810	1026	1026
독일	930	960	960
그리스	918	918	945
아일랜드	935	935	935
이탈리아	1020	1020	1020
네델란드	1067	1067	1067
뉴질랜드	979	875	900
노르웨이	805	833	833
포르투갈	949	949	949
스페인	900	900	900
스웨덴	828	828	828
터키	720	720	696
미국	자료없음	자료없음	980
국가평균	908	931	935
한국(국가평균과의 비율)	1254(138%)	1254(135%)	1254(134%)

출처 : 외국자료 OECD 교육지표, 1996

■ 입시 위주 교육의 실질적인 중심 내용

문	항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사회	기타
방송 수업에서 주로 하는 것은		47.8	21.2	8.3	10.2	5.5	12.5
보충 수업의 주된 교과는		39.3	44.5	11.8	2.4	1.1	2.0
특별 보충 수업의 주된 교과는		28.4	46.7	8.0	8.4	3.3	8.5
자율 학습 시간에 학생 자신이 주로 하는 것은?		23.5	58.8	4.8	4.6	5.3	8.2
대부분의 개인 공부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는 가		24.4	57.5	5.2	4.4	4.1	8.4
현재의 입시에서 성공하기 위해 학생들은 무얼 잘해야 하는 가		23.1	55.6	11.2	4.1	1.8	6.0
학생 자신이 주로 하는 학원 수강 과목은?		24.2	68.2	3.7	2.0	0.3	1.8
학생이 주로하는 과외 과목은		26.2	67.9	1.8	1.1	0.4	2.0
학생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과목은		16.8	51.6	6.4	13.3	4.2	11.9
학생이 원하는 담임의 담당 과목은		39.3	44.5	11.8	2.4	1.1	2.0

■ 입시 위주 교육의 병폐

문	항	고등 학생		중학생		학부모		교사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성적이나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급우나 다른 학생들에게 폭언이나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25.0	75.0	31.9	68.1	47.7	52.3	58.8	41.5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 또는 부모나 형제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	37.2	62.8	27.3	72.7	47.9	52.1	65.4	34.6

나의 진학이나 성적 문제로 부모님이 다룬다	35.8	64.2	28.8	71.2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로 인해 담배를 핀 적이 있다.	9.4	90.6	12.9	87.1	42.6	57.4	59.0	41.0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로 인해 음주를 한 적이 있다.	19.5	80.5	16.4	83.6	44.8	55.2	59.0	41.0
이성 교제를 통해서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도 있다	28.2	71.8	23.6	76.4	39.0	61.0	48.3	51.7
음란물을 보게 되면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15.1	84.9	14.6	85.4	32.2	67.8	44.5	55.5
나는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소위 불량 학생들과 어울리는 경우가 있다	9.7	90.3	12.5	87.5	43.6	56.4	59.6	40.4
나는 음악/영화/비디오/텔레비전/전화/통신 등을 통하여 성적이나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우가 있다	84.3	15.7	80.2	19.8	72.9	27.1	62.3	37.7
나는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로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다	55.8	44.2	73.8	26.2	41.6	58.4	67.3	32.7
성적 스트레스로 해서 가출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39.8	60.2	15.7	84.3	-	-	-	-
성적 스트레스로 해서 가출한 적이 있다	4.5	95.5	6.5	93.5	68.3	31.7	65.3	34.7
성적 스트레스로 해서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31.3	68.8	31.6	68.4	-	-	-	-
성적 스트레스로 해서 자살을 기도해 본적이 있다	7.5	92.5	14.4	85.6	55.7	44.3	79.2	20.8
나는 성적이나 진학 스트레스로 해서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다	40.9	59.1	34.9	65.1	65.4	34.6	82.0	18.0

출처 : 2000, 전교조 입시교육 실태조사

VI. 대안을 위하여 2

학생의 잃어버린 권리 찾기

전교조 [학생생활연구회]의 “학생생활과 학급운영” 중에서

● 학생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서로에 대한 존중, 권한과 책임의 민주적인 조화, 권리 보장과 의무 이행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회(교직원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 학교를 구성하는 각 단위 조직들의 자율과 자치가 허용되고, 권한과 책임이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나아가 각 단위 조직들의 자율과 자치는 학교 자치라는 큰 틀 안으로 총화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교사들은 교사회(교직원회)를 중심으로 교육활동이나 학교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여 자율과 자치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하고, 학부모들은 민주적인 학부모회를 통해서 학교 운영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각 단위 조직들의 자율과 자치활동의 과정과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화롭게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학교는 명실상부한 공동체와 민주주의의 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를 구성하는 한 주체로서 학생회는 학급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학교 운영에 반영하는 자치조직이 되어야 한다. 학생회는 학습 환경이나 생활환경 개선, 학교 생활을 하면서 겪는 고충 해결 등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정당한 요구들을 공론화시키고, 교사회

나 학부모회와 함께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하며,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직원회 등이 학생회에 위임한 사항을 책임 있게 의결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회는 위와 같은 자치조직일 뿐 아니라, 교사회 및 학부모회, 지역사회와 관계하며 권한과 책임을 함께 나누는 기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 자기들 수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교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업무들-각종 행사 준비, 분리수거, 각종 성금 모금, 어려운 친구 돕기, 봉사활동 등-을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역량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만큼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주체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학교 자치'의 한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학생회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이자 기구로 존중되어야 한다.

(1) 학교자치를 위해 점검해봐야 할 것들

- 대의원회, 학생회, 학생회칙, 학생회장선거, 학급-학생회의 관계
- 학교자치의 필요충분조건 학급자치

(2) 학교자치를 이루기 위한 학생회의 활성화

1) 대의원회의와 학급회의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 학급학생회↔학년학생회↔학생회건설을 통한 학생회활성화
(학년학생회제기의 배경과 이유, 학년학생회의 역할과
학년학생회건설이 가지는 힘)

① 학생회 운영위원회·대의원회·학급회의를 정례화하고 연계시킨다.

- 학생회 운영 전반을 논의할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고, 대의원회는 격주에 1회나 한 달에 1회 정도 개최하도록 정례화 한다.

- 대의원회의 안건은 4-5일 전에 공고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관심사나 고민, 제안, 학교 행사 준비, 캠페인 준비 등이 안건이 될 수 있다.

- 대의원회의 결의사항들은 학급회의 시간에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며, 학급의 건의사항은 대의원회에 정확히 보고되어

야 한다.(회의록을 통해)

- ② 학급회의 시간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특별히 노력한다.
 - 학급활동 시간을 다른 용도나 자습시간으로 절대 전용하지 않는다.
 - 학급운영위원들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안건이 미리 공고되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학급활동 시간이 되도록 한다.
 - 학생들이 학급활동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생활 속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도움을 요청한다.
 - 대의원회에서 결의했거나 학급회에 회부한 사항들은 학급회의 시간에 꼭 보고되거나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학년학생회를 건설하여 학생주도의 학생회활동을 활발히 한다.

2) 학생회가 힘 있는 기구가 되도록 한다

- 학생회가 힘 있는 자치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의 의결권, 예산 집행과 예·결산운영권, 회의개최권, 회칙개정권, 조직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학생회가 창의적이고 매력 있는 일(사업)을 주관 할 수 있도록 하자.

- 학생 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회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참신하고도 매력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만하면서 학생회가 감당할만한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가 없이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렵다. 다음은 학생회가 주도하여 해 볼만한 사업들의 예시이다.

- ① 수시로 학생들의 의견이나 요구, 건의사항을 수렴한다.
 - 학생회 주최로 「설문조사」를 하여 학생들의 의견이나 요구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교에 건의하거나 학생회 활동에 반영한다.
- ②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선배들이 한다.
- ③ 학생회 홈페이지를 만들어 「사이버 학생회」를 운영한다.

4) 학생회 활동과 학급 자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

하자.

① 학교장과 교직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할 예산을 특별히 편성하여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② 학생회의 예산은 앞에 언급했던 바 학생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사업을 비롯, 자치 활동을 활발히 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5) 학교운영위원회, 선도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자.

6) 학생 전용 게시판을 설치해야 한다.

자치활동이 활성화되려면 학생회의 각종 활동 상황을 순발력 있게 홍보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홍보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전용 게시판을 통해 다양한 주장이나 의견을 펼칠 수 있도록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특별히 권장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눈에 잘 떨어 수 있는 장소에 학생회 전용 게시판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학생회 회칙 규정 통한 권리 찾기 - 장승중학교의 학생회 활동 사례

- 학생과 교사, 학부모, 운영위가 함께 하는 학교 규정 만들기

- 학생회가 중심이 된 ‘용의·복장 자율화’ 프로그램

1. 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 교사들의 가장 큰 고민

오늘날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큰 바람이 무엇인냐고 묻는다면 ‘용의 복장을 자율화’가 단연 최우선 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를 할 때 내놓는 공약 1순위는 용의 복장의 자율화이다. 언제부터 내려온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머리 길이에 대한 제한은 물론 머리핀과 스타킹·신발 색깔마저 제한하고 있는 지금의 학생 생활 규정이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의 즐거움을 빼앗는 가장 큰 규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한 편으로 교사들에게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적지 않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용의복장 및 민주적인 생활태도 지도)가 어렵다고들 이야기 한다. 매스컴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서 틈만 나면 학교의 규정을 위반하려 하는 학생들, 학교 규정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게다가 용의복장을 규제하는 기준이 교사들 저마다의 가치관에 따라 각양각색이고, 그 점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약화시킬 따름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교문지도 등을 통해 학생들을 ‘막무가내로’ 통제하는 교사들을 ‘시대에 뒤떨어진 기준’을 신봉하면서 자신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며 심각한 불신을 갖게 되기 쉽고, 그러한 불신은 전체 교사들에 대한 비난과 불신으로 발전하는 경향조차 있었다.

2. 상호존중과 민주주의, 자율적인 실천을 가르쳐 준 프로그램

장승중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학생들의 가장 큰 소망을 해결해 주고,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의복장 자율화’를 일련의 프로그램으로 계획하여 학생회 주도로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용의 복장에 관련된 규정을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지키도록 하되, 부모님과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공감과 합의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민주적인 상호 존중의 자세와 신뢰를 회복하고, 자율과 자치를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일련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의 배경에는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규정(생활지도 규정)이 교사들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부추기고 심화시켜 왔다는 문제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불신과 통제와 처벌을 기본 원리로 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통용되어왔던 생활지도 규정들, 권위주의 시대의 그것들과 거의 달라진 점이 없는 두발·복장 관련 규정들이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 관계를 소원하게 하

며, 자율과 민주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3. 『학생회가 중심이 된 용의·복장 자율화 프로그램』의 실제

(1) 목적

- ①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들의 절실한 요구인 용의 복장 자율화를 부분적으로 실현시킴으로써 보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②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며, 대화와 토론, 공동체적인 합의의 문화를 활성화시킨다.
- ③학급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토론하고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시킨다.
- ④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의사 결정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몸에 익히도록 한다.

(2) 방침

- ①선거 공약의 실천이라는 명분으로 학생회장이 프로그램을 주도하게 한다.
- ②지도교사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지원한다.
- ③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학생들의 요구를 풀어내도록 한다.
- ④학생대의원회와 학급회, 교직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조화롭게 참여한다.
- ⑤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프로그램 진행 절차

- ①학생회장 입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요구 제기
 - 두발 및 복장 자율화에 대한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로 모든 후보가 공약함
- ②전교 대의원회에서 논의
 - 제 1회 대의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선거 공약에 대해 논의하도록 함
 - 학생들은 무조건 전면 자율화를 선호하였고, 당장 자율화해야 한다는 학생들이 다수였음.
 -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르자고 제안
 - (논거 : 용의·복장 문제는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모님의 동의와 선생님들의 교육적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학생회장 명의로) 설문지 만들고 통계를 내어 그 결과에 따르기로 결정함.
- ③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사할 설문지 작성
 - 학생회장이 초안 작성, 특활부장과 생활지도부장이 조언하여 설문지 완성
 - 설문을 하는 학생회장의 입장을 간략히 정리하여 취지와 목적을 밝힘
 - 핵심적인 요구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찬반을 묻는 형식의 설문으로 함
- ④설문조사 실시
 - 학생과 학부모는 연기명, 교사는 개별 설문 실시.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하도록 함.
 - ※설문 응답시에 학생과 학부모가 토론하여 합의할 것을 요구함 : 설문지를 집에 가져가서 학생과 학부모가 토론을 하고 합의된 사항을 하나의 설문지에 표시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연기명으로 확인 서명 날인하게 함. 학생과 학부모가 나란히 도장을 찍게 함.
- ⑤설문지 수합 및 응답 내용 분석
 - 회송된 설문지를 학급별로 수합하여 학생회 임원들이 책임지고 통계를 냄.

※분석 결과 : 두발 복장을 자율화(근소한 차이로)하나 무쓰나 스프레이 및 장신구, 원색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설문 결과가 나옴.

⑥설문 분석 결과 공개

-분석 결과 근소한 차이로 자율화가 다수임을 학생과 교사들에게 공개함

⑦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

-설문 결과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조건부로 승인함.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경과 및 설문결과 보고

-운영위원회에서는 근소한 표차에 의한 자율화 결정임을 들어서 다음의 조건을 달아 승인함.

※조건(학교운영위원회의 권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도 잘 지킬 수 있다는 강한 결의를 보여야 한다.학급회와 대의원회)

-5~6개월 뒤에 다시 설문조사를 하여 자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검토 한다.

-학교 생활에서 공중도덕과 민주적인 생활태도를 잘 지키도록 노력한다.

⑧학급회의 시간에 학교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학급회 시간에 운영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내용을 고지하고, 결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침(‘시범 운영 기간 동안 잘 지키자’)

-금지사항을 위반하는 위반자가 나올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급별 토의

⑨전교 대의원회에서의 결의 모으기

-학급회의에서 논의해 온 사항들을 모아 전체 학생회 차원에서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함

-위반자에게는 일정한 벌칙 부과, 매월 용의복장 모범생을 뽑아 칭찬하기 등

⑩대의원회 결과 공고 및 학교장의 선포

-대의원회 결과를 널리 알리고, 학교장은 조회시간에 용의 복

장을 조건부로 자율화할 것임을 알림.

⑪ 전교생의 실천(4월부터 10월 말까지 시범 운영)

-교사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마련함 규정임을 강조하여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지도하고 조언함.

-학생회와 학급회에서는 학생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홍보, 계도(방송 등)

※도덕과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용의·복장 자율화의 의의와 중요성을 일깨우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논술 문제를 출제함.(3학년)

⑫ 학급회의를 통한 실천 결과 평가 : 11월

-학급회의에서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잘 실천되었는지에 대해 묻는 회의 자료를 배부하고, 학급별로 잘 지킨 학생과 못지킨 학생을 뽑아보게 함.

⑬ 2차 설문조사 실시

-부분적으로 자율화 한 규정들이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묻는 설문 내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설문 방법과 결과 분석은 1차 설문조사 때와 동일함.

⑭ 학교운영위원회에 결과 보고 및 심의

-학생회장은 분석 결과를 보고하고, 운영위원들은 심의한 후에 자율화를 잠정 확정하되 학생들에게 특별한 권고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의함.

※심의 결과 : 용의·복장 부분 자율화를 확정함. 학생들은 부분 자율화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학생회와 학급회에서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키도록 권고함.

⑮ 대의원회와 학급회를 통한 실행 결의 모으기 : 안건 자료 제시

-대의원회 : 2차 설문조사 결과와 학운위 심의 결과를 함께 담은 논의 안건을 모든 대의원에게 제시함, 잘 지켜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하고 가능한 몇 가지 제재 방안을 제시함.

-학급회 : 2차 설문조사 결과와 학운위 심의 결과, 대의원회 결과를 함께 담은 논의 안건을 모든 학급원들에게 제시함. 학급별로 자율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결의를 모음.

⑩ 학교장과 학생회장의 선포

-용의복장이 자율화를 계속 시행할 것임을 선포하고 잘 지켜
것을 당부

4. 프로그램 진행의 결과

①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머리 길이는 체형에 맞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교복 상의 남방 색깔도 핑크색이나 하늘색도 가
능하게, 스타킹이나 신발도 다소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게 되었
음. 다만 무쓰나 스프레이, 매니큐어, 액세서리 등은 금지하는 쪽
으로 결정되어 크게 줄어들고 있음.

②소수 위반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함께 만든 규칙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훈계할 수 있게 되었고, 몇몇 사람
의 위반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우리의’ 규칙이 다시 과거의 통
제하는 규칙으로 되돌아가버릴 수도 있음을 강조하면 수긍하고
있어 위반자가 크게 줄고 있음.

③구성원들이 함께 만든 규칙, 합리적인 근거와 정통성을 가진
규칙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학교 규칙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인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④학생회칙을 비롯하여 학생들이 지켜야 할 교칙들에 대해서도
여론을 수렴하고 주의를 환기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경우 더
욱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서 꼭 지켜져야 할 원칙(유의점)

- ①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 ②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서, 구성원들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
율과 자치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의식을 견지해야 한다.
- ③프로그램 진행의 모든 과정은 구성원 일부의 주장이나 편견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철저히 민주적인 원리와 원칙, 투명한 절차
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자율화라고 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
다는 것은 아니다.

-자율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를 거친 의사결정과 결정된 사항의 실행이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가운데 어느 일방의 주장과 요구만이 절대적일 수 없다.

⑤교사, 학생, 학부모는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견과 주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⑥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에 전개되는 토론과 의사 결정, 결과 보고는 철저히 공식성을 띤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프로그램 성공을 위해 각 단위의 자세와 책임

①학생회장은 전교생과 다른 주체들 간의 공식 통로의 역할을 하며,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에서 중심에 서 있어야 한다. - 지도교사의 지도와 자문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할 책임을 져야 한다.

②학급회장들은 학급회와 대의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과정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한다.

③지도교사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민주적으로, 조화롭게,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야 한다.

④교사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자율 역량 배양에 도움이 될 조언과 격려를 지속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⑤학부모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 하며, 자녀들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와의 대화와 설문 응답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⑥학교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최대한 지원해주어야 한다.

- 학생회의 건의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권고나 제안의 형태로 학생회(대의원회)에 공식적인 의견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7. ‘용의·복장 자율화’ 프로그램으로 거둘 수 있는 교육적 효과

- ①학생들의 가장 절실한 생활상의 요구를 민주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결함으로써 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
- ②학생들의 주인의식과 자율역량이 커지고, 학교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된다.
- ③두발·복장을 둘러싼 교사들의 과잉 단속 등 불필요한 마찰이 없어짐으로써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신뢰가 두터워진다.
- ④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의 신뢰가 두터워질 수 있다.
- ⑤구성원(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여 민주적인 토론과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과 과정을 배울 수 있다.
 - 민주적 절차 학습
- ⑥학급회와 대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내 조직들이 참여하는 회의체계의 중요성을 체험으로 배우며, 민주적인 토론과 합의의 가치를 배운다.
- ⑦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의 의견을 두루 모아 내고, 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권위를 확립할 수 있다.
- ⑧민주주의 원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몸으로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 될 수 있다.

부 록

1. 학생인권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순영 의원 2006. 9)
2. 청소년 헌장
3. 유엔어린이 권리협약
4. 세계인권선언

학생인권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경과

○ 05년 11월 초초초안 작성(당 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최순영 의원실)

○ 초초초안 검토

- 1차 워크샵: 05년 12월 2일(금). 범국민교육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관동학운협. 문화연대는 문서로.

- 2차 워크샵: 05년 12월 9일(금). 전교조 학청위, 학생회법제화운동본부.

⇒ 워크샵 결과들에 바탕하여 초초안 작성(05년 12월 중순).

○ 초초안 검토

- 06년 1월 5일(목) 학생 워크샵

- 06년 1월 광주광역시 학생권리조례(초안) 받음.

- 06년 1월 인권운동사랑방의 검토 문서 받음.

- 06년 1월 국회 법제실 검토의견 받음.

⇒ 그 내용들에 바탕하여 초안 작성(06년 2월 10일).

○ 초안 검토

- 06년 2월 11일(토) 인권운동사랑방의 의견 받음.

- 06년 2월 14일(화) 청소년 토론회 개최.

- 06년 2월 16일 전교조 정책실 의견 받음

- 06년 2월 16일 당 청소년위원회 워크샵

⇒ 그 내용들에 바탕하여 법안 확정(06년 2월 20일)

■ 이후 과정

○ 당내 의결절차 진행(정책위 실국장회의 ⇒ 최고위원회 또는 의총).

○ 06년 3월 신학기에 발의.

■ 법안의 의미

- 05년 무상교육 1단계 법안 발의 이후 일련의 <학교바꾸기 법안> 중 하나임. 학교바꾸기 법안은 무상교육, 학교자치, 학생인권 법안 등으로, “학교구성원이 실질적인 교육주체가 되어 민주적인 학사운영이 되도록 하며, 학생을 최우선으로 두어 학생인권이 신장되도록 하고, 세금 이외에 별도로 징수하는 경비는 없도록 하자”임. 곧 살맛나는 학교,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기임.
- 3월 신학기 발의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학생인권이 보장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이를 위해 당(최순영 의원실과 청소년위원회) 뿐만 아니라 제 교육단체 및 인권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 법안의 주요 내용

- 학생회 법제화: 총학생회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법제화함. 학생회 임원 구성 시 성적, 성별, 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
- 학칙 중 학생과 관련된 부분을 제·개정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
- 학생 징계시 소명 및 재심청구 등의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체벌 금지: ‘신체적 가해를 가하는 행위’로 체벌을 규정하였음.
- 0교시 금지
- 학생의 동의없는 야간보충수업 및 야간자율학습 금지.
- 두발 및 복장 검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금지.
- 가방, 일기 등 개인적인 물품을 검사하는 행위 금지.
-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금지. 다만, 역차별은 예외적으로 허용함.
- 교육공무원과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그리고 3년에 1회씩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하여 보고하도록 함.
- 교육부, 교육청, 학교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첨부: 법안 1부.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최순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06. . . .
발 의 자 : 최 순 영 의원

1. 제안이유

<학생인권의 현재를 되돌아보면서 학생인권 신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를 구성할 예정임>

2. 주요내용

- 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함. 그리고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2항 신설).
- 나. 학교에 학생들의 직접선거로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두고,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17조 개정).
- 다. 학생 징계시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개정).
- 라. 체벌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 마. 학생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

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바.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정규 수업시간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추가학습이나 자율학습을 강요하는 행위, 학생 두발·복장·개인소지품·일기를 검사하는 행위, 가정환경·성적·외모·성별·국적·종교·장애·신념·성정체성에 따른 차별 행위 등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 사. 교육공무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 아.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개정).

법률 제 호

初·中等教育法 일부개정법률안

初·中等教育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初·中等教育法”을 “초·중등교육법”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①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 발의
2.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4. 총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 ⑤총학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⑥그 밖에 총학생회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 ③ 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않고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학생인권 보장)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8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4(인권교육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학생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初・中等教育法</p> <p>第8條(學校規則) ①(생 략) <u><신 설></u></p> <p>② (생 략)</p> <p>第17條(學生自治活動) 學生의 自治活動은 勸獎·보호되며, 그 組織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學則으로 정한다.</p>	<p>초・중등교육법</p> <p>제8조(학교규칙) ①(현행과 같음) ②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17조(학생회 및 학생자치활동) ① 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 발의 2.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p>

<p>第18條 (學生의 懲戒)</p> <p>① (생 략)</p> <p>②學校의 長은 學生을 懲戒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學生 또는 學父母에게 意見陳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節次를 거쳐야 한다.</p> <p>③ <신 설></p>	<p>의견</p> <p>3.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의견</p> <p>4. 총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p> <p>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p> <p>6. 총학생회 행사에 대한 제반 사항</p> <p>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p> <p>⑤총학생회의 심의·의결사항은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p> <p>⑥그 밖에 총학생회 및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외의 학생자치활동도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p> <p>제18조 (학생의 징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소명 및 재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p> <p>③학교의 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p>
---	--

<p><신 설></p>	<p>2항에 의하지 않고 학생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p> <p>제 18조의2(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 18조의3(학생인권의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에 대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과수업 또는 자율학습 등의 명목으로 학생을 정규 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는 행위 2. 학생의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요청 또는 동의없이 학교의 장이나 교사가 주도하여 야간에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추가수업을 받게 하거나 자습을 하게 하는 행위. 3. 학생의 두발, 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학생의 소지품, 가방, 일기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행위. 5.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

<p><신 설></p>	<p>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적체성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다만,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학습부진학생을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p> <p>6. 기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p>
<p>제18조의4(인권교육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③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의4(인권교육 등)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이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이라 한다)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을 상대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은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상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p> <p>③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및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각각 국회와 시·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교육 실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第31條(學校運營委員會의 設置)</p> <p>① (생 략)</p> <p>②國·公立學校에 두는 學校運營委員會는 당해 學校의 敎員代表·學父母代表 및 地域社會 人士로 構成한다.</p>	<p>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학생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p>

● 청소년 헌장 ●

-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 가정 · 학교 ·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 주거 · 의료 ·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 성별 · 종교 · 학력 · 연령 ·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

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 · 학교 · 사회 · 국가 · 인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 ·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 유엔 어린이 권리협약 ●

* 전체 54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 가운데 주요 조항만을 뽑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제1조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조약에 적혀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이다.

제2조

우리가 누구이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이든지, 그리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간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이 조약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제3조

어른이 우리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주어야 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우리들 청소년 모두가 생명을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7조

우리는 이름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태어난 날이 기록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국민이 될 권리가 있다. 날 낳아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권리와 부모님에게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부모님과 헤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 자신을 위한 경우란 예를 들어 부모님이 우리를 해치거나 보살피 주지 않을 때이다. 또한 부모님이 서로 따로

살기로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 분과 함께 살아야 하지만 두 분 모두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우리가 부모님과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우리는 부모님에게 돌아가 같은 나라에서 살 권리가 있다.

제11조

우리는 유괴당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유괴당한다면 정부는 우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제12조

어른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릴 때 우리에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우리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제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지 잘 생각해서 해야만 한다.

제14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할 권리가 있고, 우리 자신의 종교를 정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제15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사귀고 모임을 만들 권리가 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한 모임은 안된다.

제16조

우리는 사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17조

우리는 라디오, 신문, 텔레비전, 책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정보를 모을 권리가 있다. 어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제18조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기르는 노력을 두 분이 함께 해야 하고,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해 주어야 한다.

제19조

아무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해쳐서는 안된다. 어른들은 우리가 때맞거나 무관심 속에 내버려지게끔 놔두지 말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한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들을 해칠 권리가 없다.

제20조

부모님이 안 계실 경우, 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1조

우리가 입양되어야 할 경우, 어른들은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제22조

우리가 망명자인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3조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한 보살핌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4조

우리는 건강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아플 때 전문적인 치료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우선적으로 우리가 아프지 않도록 먹이고 보살피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7조

우리는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 등을 주어야 하고 만일 부모님이 어렵고 힘든 경우에는 나라에서 부모님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28조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제29조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됨,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맘껏 개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고, 깨끗한 환경을 생

각하며, 책임질 줄 알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30조

소수집단의 청소년에게도 자신만의 문화를 즐기고, 자신들의 종교를 믿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31조

우리에게 쉼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2조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 때는 건강에 안 좋거나 학교에 가지 못할 상황에서 일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해서 누군가 돈을 번다면 우리는 우리가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우리는 법을 어기는 마약을 만들고 파는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제34조

우리는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아무도 우리 몸에 우리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 없다. 곧 누군가가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게 할 수는 없다.

제35조

아무도 우리를 유괴하거나 팔 수 없다.

제37조

우리도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심한 창피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최후의 방법인 경우를 빼고는 우리를 감옥에 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감옥에 들어갔을 경우 우리는 감옥에서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정기적으로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살까지는 절대 군대에 들어가거나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제39조

전쟁이나 홍수, 지진 때문에 우리가 다치거나 보살핌을 받지 못할 경우, 우리는 특별한 보호와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40조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을 경우, 우리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경찰과 변호사와 법관은 우리를 존중하여야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제42조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

● 세계 인권선언 ●

* 세계인권선언 원문과 국제앰네스티, 유니세프의 축약본을 참조하여 인권운동사랑방이 쉬운 말로 고쳐 쓴 것입니다.

제 1 조 : 우리는 모두 형제 자매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

제 2 조 : 차별은 안돼!

피부색, 성별, 종교, 언어, 국적, 갖고 있는 의견이나 신념 등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제 3 조 : 안심하고 살아간다

우리는 누구나 생명을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제 4 조 : 노예는 없다!

어느 누구도 사람을 노예처럼 다루거나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없다.

제 5 조 : 고문이나 모욕은 싫다!

사람은 누구나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제 6 조 : 법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는 모두 어디서나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인간답게 살아간다.

제 7 조 :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차별적이어서는 안된다.

제 8 조 : 억울할 때는 법의 도움을 청하라

우리는 누구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그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제 9 조 : 제멋대로 잡아 가둘 수 없다

사람은 정당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멋대로 잡히거나 갇히거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제 10 조 : 재판은 공정하게

우리는 어느 누구를 편들지 않는 독립되고 편견없는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11 조 : 잡혀도 반드시 유죄라고 볼 수 없다

공정한 재판으로 유죄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니다. 또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람은 죄를 범했을 때에 존재하는 법률에 따라서만 벌을 받는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는 처벌받지 않는다.

제 12 조 : 나만의 세상을 가질 수 있다

나의 사생활, 가족, 집, 편지나 전화 등 통신에 대하여 아무도 함부로 간섭할 수 없다. 나의 명예와 신용에 상처 입지 않는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 13 조 : 떠나고 돌아올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디든 오고 갈 수 있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다. 어떤 나라에서도 떠날 수 있고 또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 14 조 : 도망치는 것도 권리다

누구나 괴롭힘을 당하면 다른 나라로 도망쳐 피난처를 찾아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가 보아도 나쁜 짓을 저지른 경우는 제외된다.

제 15 조 : 어느 나라 사람이든 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이 될 권리를 가지며, 국적을 바꿀 권리도 가진다. 누구도 함부로 나의 국적을 빼앗거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방해할 수 없다.

제 16 조 : 사랑하는 사람끼리

어른이 되면 누구나 결혼하여 가정을 가질 수 있다. 인종, 국적, 종교를 이유로 한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결혼할 사람 둘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서만 결혼할 수 있다. 결혼에 있어서나 가정생활에 있어서나 설령 이혼할 때에도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가정은 나라의 보호를 받는다.

제 17 조 : 재산을 갖는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재산은 함부로 빼앗기지 않는다.

제 18 조 : 생각하는 것은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며, 생각을 바꾸는 것도 자유이고,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함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자유도 있다.

제 19 조 : 표현하는 것도 자유다

우리는 누구나 의견을 가질 수 있고 또 표현할 수 있다. 누구도 그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나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과 상관없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 20 조 : 모일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롭게 집회를 열고 단체를 만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에게 소속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제 21 조 : 선거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선거로 자기 나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누구나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선거는 올바르게 평등하게 해야 하며, 누구에게 표를 찍는지는 비밀로 할 수 있다.

제 22 조 :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각 나라의 구조와 자원에 따라서 또한 국제협력을 통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제 23 조 : 마음놓고 일하기 위하여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골라서 일할 권리를 갖는다. 노동조건은 일하는 사람에게 공정하고 유리한 것이어야 하며, 일터를 잃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차별 없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일에 대한 대가는 일한 사람과 그 가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일하는 사람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 24 조 : 쉬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에게는 쉴 권리가 있다. 무한정 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은 합리적으로 제한 되어 하며,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포함한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5 조 :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누구에게나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위하여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나라가 제공하는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6 조 : 배울 수 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초등기초단계의 교육은 무료여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원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은 실력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돼야 한다. 교육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인격을 발전시키고 사람의 권리와 자유가 소중하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전세계 모든 나라와 모든 인종과 모든 종교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 27 조 : 즐거운 생활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생활에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할 권리를 갖는다.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나눠 가질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낸 과학·문학·예술의 산물에서 나오는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 28 조 : 이 선언이 바라는 세상

우리 모두는 이 선언에 선포된 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

제 29 조 : 우리의 의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우리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따라 제한된다.

제 30 조 : 권리를 짓밟는 권리는 없다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누구에게도 어떤 나라에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국내 인권 관련 단체

인권일반

- 천주교 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at.or.kr>
- 민주주의·사회운동·NGO자료관 <http://www.demos.or.kr>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http://www.khis.or.kr>
- 다산인권센터 <http://www.rights.or.kr>
- (사)좋은 벗들 <http://www.jungto.org/gf>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http://www.unicef.or.kr>

자유권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
- 인권실천시민연대 <http://hrights.or.kr>
- 지문날인 거부 운동 <http://fprint.jinbo.net>
-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http://www.amnesty.or.kr>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http://www.ugh.or.kr>

사회권

- 녹색연합 <http://www.greenkorea.org>
- 환경운동연합 <http://kfem.or.kr>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http://antiwto.jinbo.net>
-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http://www.615.or.kr>
- 노동인권회관 <http://www.inkwon.or.kr>
- 문화연대 <http://www.cncr.or.kr>
- 민족민주열사 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http://www.yolsa.org>
- 민주론운동시민연합 <http://www.ccdm.or.kr>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http://www.nadrk.org>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http://www.professorner.org>
-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http://www.pssp.org/index.php>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http://www.jcmk.org>
- 전국농민회총연맹 <http://www.junnong.org>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nodong.org>
- 전국빈민연합 <http://www.nojum.org>
- 전대일기념사업회 <http://www.juntaeil.com>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http://catholicngo.net>
- 한국비정규직노동자센터 <http://www.workingvoice.net>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http://myr.jinbo.net>
- 서울여성노동조합(여성노동가상법정)
<http://www.womencourt.or.kr>

소수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http://www.hotline.or.kr>
- 일하는여성들의네트워크(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 동성애자인권연대(동성애자친목&인권모임)
<http://outpridekorea.com>
- 동성애자웹진(버디) <http://www.buddy79.com>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기타

-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CNPK) <http://www.peacekorea.org>
- 제주4.3진상규명, 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4.3도민연대)
<http://www.cheju43.org>
-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http://sofa.jinbo.net>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http://www.kcbl.or.kr>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http://witness.peacenet.or.kr>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

그 외 단체

- 진보네트워크(참세상) <http://www.jinbo.net>
- 정보통신연대 <http://inp.or.kr>
- 시민운동정보센터-민간단체 DB 검색 제공 <http://www.kngo.net>
- 참여연대 <http://peoplepower21.org>

대안학교 학교 밖 교육관련 기관

- 간디중학교(제천) <http://user.chollian.net/~gandhis>
- 변산공동체(전북 변산) 전화:063-584-0584(홈페이지 없음)
- 실상사 작은학교(전북 남원) <http://www.jakeun.org>
- 간디고등학교(경남 산청) <http://user.chollian.net/~gandhis>
- 꽃우물 대안학교(경기 안산) <http://withlive.or.kr>
- 하자 작업장 학교(서울 영등포) <http://school.haja.net>
- 난나공연예술아카데미(서울 강북) <http://www.nanna.seoul.kr>
- 마루(서울 YMCA 문화공간) <http://www.maroo.or.kr>
- 미지(서울 청소년 문화센터) <http://www.mizy.net>
- 민들레 사랑방 <http://sarangbang.activelearning.or.kr>
- (사)부스러기 사랑나눔회 <http://busrusy.or.kr>
-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http://activelearning.or.kr>

청소년·학생 관련 단체

- 스스로넷미디어학교 <http://mediaschool.co.kr>
-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http://www.heemang21.net>
- 전국중고등학생연합 <http://culb.sayculb.com/@union10>
- 중고등학생복지회 <http://member.hitel.net/~k2sws>
- 청소년독립신문 바이러스 <http://www.1318virus.net>
-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http://www.pumdongi.org>
- 청소년인권동아리 타래 <http://home.freechal.com/tarae>
- 청소년 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main/default.asp>
- 학교폭력상담전문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http://www.wangtta.com>
- 청소년상담센터 <http://www.ttax.net>

- 서울특별시 청소년 센터 <http://www.youthzone.or.kr>
-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http://211.111.176.39/aha>
- 10대 독립 아이두 <http://www.idoo.net>
- 전교조 서울지부 참실위원회 학생자치활동지원국
<http://dongmaru.ktu.or.kr>

교육운동 단체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http://www.edungo.or.kr>
- 대안교육연대 <http://psae.or.kr>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http://eduhope.net>
(경북지부 <http://chamkb.eduhope.net>)
- 학벌없는사회 <http://antihakbul.org>
- 학벌없는사회 만들기 <http://goodbyehakbul.org>
- 인터넷시민도서관 <http://www.1000books.com>
- 월간 우리교육 <http://www.uriedu.co.kr>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http://hakbumo.or.kr>



2006경북학생인권백서

부제 : 교사와 학생을 위한 인권자료

발행일 : 2006년 9월 20일

발행인 : 이 상 훈

발행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주 소 : 우) 730-080

구미시 광평동 456-8번지 창평빌딩 7층

전 화 : (054)462-7367 / Fax : (054)464-7363

인쇄인 : 그루와터(054-972-833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